

全國民年金 擴大適用에 對備한

國民年金制度 改善

全國民年金時代를 열기 위한 準備

1997. 12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머 리 말

國民年金制度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도입되었다. 도입당시 10인 이상 事業場 勤勞者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년에는 農漁村地域 自營者에게 각각 확대·적용되었으며 이제 都市地域 自營者에게 까지 확대되면 명실공히 全國民年金時代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당시의 여건과 다른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는 低成長時代로 진입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高齡化에 따라 노인부양비율도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낮은 보험료부담·높은 연금급여체계」로 설계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中·長期的으로 財政不安定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所得把握이 어려운 현실하에서 所得再分配 構造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자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年金基金에 대한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政策課題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社會保障審議委員會(위원장: 국무총리)에서는 1997년 5월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을 설치·운영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지난 6월에 발족하게 되었다. 이 기획단은 가입자대표, 학계·연구기관·언론계 인사,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4명의 전문위원을 두어 실무작업을 담당토록 하였고,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

원받기 위해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 실무지원반을 두었다.

본 기획단에서는 위원회의 13회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9회 포함) 및 전문위원회의 9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장기 연금재정의 안정화 방안, 근로자와 자영자간 보험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효율화 방안, 타 공적연금제도와의 가입기간 연계방안, 제도적용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토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무총리께 요약 보고한 제도개선안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의 도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과정에서의 쟁점 및 개선대안의 모색, 제도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보고서의 편집은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尹炳植 사회보험연구실장의 총괄하에, 동 연구원의 崔秉浩 연구위원, 元鍾旭 연구위원, 李正雨 책임연구원의 상호 토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각종 자료의 정리와 교정 등 힘겨운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 연구원의 石才恩 주임 연구원, 崔鍾晔 주임연구원에게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무엇보다도 기획단의 「실무지원반」 운영을 위해 장소와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해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상임위원의 중책까지 맡아서 수고한 延河淸 원장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본 기획단 최종 제도개선방안 도출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각종 전문가보고서 및 토의내용은 資料集으로 별도로 발간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본 보고서가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基本指針書가 되기를 기대한다.

1997年 12月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團長 朴宗洪

目次

國務總理 報告

(全國民年金 擴大適用에 對備한 國民年金制度의 改善方案) 13

第1章 國民年金制度 改善의 背景 29

第2章 國民年金制度의 現況과 政策課題 35

第1節 國民年金制度의 一般現況 35

1. 概 觀 35

2. 適用對象 36

3. 給 與 37

4. 財 源 39

5. 基金運用 39

第2節 給與·負擔 構造分析과 政策課題 40

1. 給與·負擔構造의 問題點 40

2. 給與·負擔構造의 適正化를 위한 政策課題 45

3. 年金財政方式에 대한 檢討 49

第3節 國民年金基金 運用實態 分析과 政策課題 51

1. 基金運用 現況 51

2. 國民年金基金 運用의 問題點 57

3. 國民年金 基金運用의 政策課題 60

第4節 都市地域 自營者 適用擴大에 따른 政策課題	65
1. 都市自營者 保險料賦課方法의 開發	65
2. 未適用對象者의 所得保障方案	75
3. 他公의 年金과의 加入期間 連繫方案	88
第3章 國民年金制度 改善을 위한 代案摸索	94
第1節 制度改善의 主要爭點	94
第2節 制度改善을 위한 代案別 基本模型	98
1. 現行制度의 維持·改善(第1案)	98
2. 基礎年金과 所得比例年金 二元化(第2案)	120
3. 積立方式 所得比例年金(第3案)	140
第4章 國民年金制度의 改善方案	160
第1節 制度改善의 基本方向	160
1. 向後 與件展望	160
2. 制度改善의 目的	163
3. 構造改善을 위한 基本模型의 設定	164
第2節 年金給與體系改善 및 保險料의 適正水準 設定	165
1. 年金給與體系의 改善	165
2. 保險料의 適正水準 設定	169
3. 經過措置	170
第3節 年金基金 運用體系의 改善	171
1. 國民年金基金의 透明性 및 專門性 提高	171

2. 國民年金基金 運用 收益率의 提高	173
第4節 全國民 年金擴大에 따른 制度改善	175
1. 自營者에 대한 所得把握과 保險料賦課方法	175
2. 未適用階層의 所得保障	176
3. 他公的年金制度와의 加入期間 連繫	178
第5節 制度改善에 따른 財政展望	179
附 錄	205
1.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運營規程	206
2.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運營細則	209
3.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構成	212
4.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活動日誌	214

表 目 次

〈表 1〉 所得分位別 年金給與率(1998년 이후 가입자)	17
〈表 2〉 年金受給年齡 調整計劃	17
〈表 3〉 保險料 調整計劃	18
〈表 4〉 加入期間에 따른 所得分位別 年金給與率의 比較	20
〈表 5〉 制度改善案에 따른 財政展望	21
〈表 2- 1〉 우리나라의 公의年金制度(1996)	35
〈表 2- 2〉 現行制度의 所得水準 및 加入期間에 따른 年金給與率	37
〈表 2- 3〉 現行制度의 給與種類別 受給要件과 給與水準	38
〈表 2- 4〉 加入種別 保險料率	39
〈表 2- 5〉 國民年金 基金造成額 및 投資配分	40
〈表 2- 6〉 現行制度의 所得水準別 給與率 및 收益比	41
〈表 2- 7〉 現行制度下 最高·最低所得階層間 加入年數에 따른 年金額 比較	42
〈表 2- 8〉 現行制度下에서 財政安定을 위한 保險料率 展望	43
〈表 2- 9〉 主要國의 平均壽命 推移	44
〈表 2-10〉 國民負擔率 國際比較	47
〈表 2-11〉 우리나라 勤勞者 所得 對比 社會保障負擔(1996)	47
〈表 2-12〉 受給年齡 調整時 收益比 變化效果	49
〈表 2-13〉 1997年度 年金基金運用 現況	52
〈表 2-14〉 年金基金의 投資部門別 收益率 現況	53
〈表 2-15〉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와 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 의 人的構成	54

〈表 2-16〉	國民年金基金의 運用計劃樹立 및 執行	56
〈表 2-17〉	國民年金基金의 運用結果報告	57
〈表 2-18〉	國民年金基金의 公共部門 預託比率 推移	57
〈表 2-19〉	國民年金基金의 公共部門과 金融部門의 收益率 比較 ..	58
〈表 2-20〉	5人 未滿 事業場의 從事上 地位別 人口分布	66
〈表 2-21〉	納稅者類型의 區分 및 納稅者別 納付稅額	67
〈表 2-22〉	事業所得稅 및 附加價値稅 申告人員(1995년 귀속)	68
〈表 2-23〉	自營者에 대한 醫療保險料 賦課基準	70
〈表 2-24〉	5人未滿 事業場의 産業別 從事者 地位別 分布	74
〈表 2-25〉	性別·年齡別 國民年金 加入者 推移(1995)	76
〈表 2-26〉	65歲 以上 老人家口의 月收入 規模(1994)	77
〈表 2-27〉	現世代 老人 및 障礙人에 대한 所得保障方案 比較	82
〈表 3- 1〉	代案別 給與構造算式 및 給與水準	103
〈表 3- 2〉	老齡年金 受給開始年齡 調整代案(1)	104
〈表 3- 3〉	老齡年金 受給開始年齡 調整代案(2)	104
〈表 3- 4〉	都市地域 年金保險料率 適用代案	110
〈表 3- 5〉	均等部分 比重別 均等部分年金의 給與率	113
〈表 3- 6〉	均等部分 比重別 收益比 比較 (A型 算式 基準)	114
〈表 3- 7〉	給與算式別 財政展望 比較(65歲 受給基準)	114
〈表 3- 8〉	給與算式別 適正保險料率 比較(65歲 受給基準)	115
〈表 3- 9〉	年金受給年齡 調整計劃	129
〈表 3-10〉	年金保險料 調整計劃	130
〈表 3-11〉	所得階層別 年金給與率	137
〈表 3-12〉	世代別 收益比 比較	137
〈表 3-13〉	맞벌이 夫婦와 홀벌이 夫婦間의 所得代替率 比較	138
〈表 3-14〉	現行制度와 基礎年金과 所得比例年金의 二元化(案) ...	139

〈表 3-15〉	積立方式 所得比例年金 改編(案)	157
〈表 3-16〉	國民年金制度 改善模型의 比較	158
〈表 3-16〉	繼續	159
〈表 4- 1〉	人口構造의 高齡化 比率	160
〈表 4- 2〉	65歲以上 人口 增加速度 國際比較(7%→14%)	161
〈表 4- 3〉	經濟成長率 展望	162
〈表 4- 4〉	年金改善案에 따른 所得階層別 年金給與率	167
〈表 4- 5〉	年金給與水準別 保險料 負擔 比較	168
〈表 4- 6〉	年金受給年齡 調整計劃	168
〈表 4- 7〉	保險料 調整計劃	170
〈表 4- 8〉	加入期間에 따른 所得階層別 年金給與率의 比較	171
〈表 4- 9〉	基礎年金의 財政收支(보험료율 9% 제한)	180
〈表 4-10〉	所得比例年金의 財政收支(보험료율 9% 제한)	181
〈表 4-11〉	保險料率 調整計劃	182
〈表 4-12〉	基礎年金의 財政收支(보험료율 단계적 조정)	183
〈表 4-13〉	所得比例年金의 財政收支(보험료율 단계적 조정)	183

圖目次

[圖 1]	基礎年金 財政展望	21
[圖 2]	所得比例年金 財政展望	22
[圖 2-1]	現行制度의 所得水準別 保險料 및 給與額 比較	42
[圖 2-2]	國民年金基金 造成 및 基金配分の 흐름과 經濟的 機能	55
[圖 2-3]	性別·年齡別 加入者 對比 返還一時金 受給者 現況	79
[圖 3-1]	新 老齡所得保障 體系	128
[圖 3-2]	所得保障의 政府-企業-個人(家族)間 役割 分擔	143
[圖 4-1]	所得保障의 政府-企業-個人間 役割 分擔	164
[圖 4-2]	基礎年金 財政展望(보험료를 9% 제한)	181
[圖 4-3]	所得比例年金 財政展望(보험료를 9% 제한)	182
[圖 4-4]	基礎年金 財政展望(보험료를 단계적 조정)	184
[圖 4-5]	所得比例年金 財政展望(보험료를 단계적 조정)	184

國務總理 報告(1997년 12월 27일)

全國民年金 擴大適用에 對備한 國民年金制度의 改善方案

1.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推進經過

□ 1997년 5월 16일 第1次 社會保障審議委員會(위원장: 國務總理)에 서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이하 '기획단')을 설치하기로 의 결하였음.

— 동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기획단에 다음 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를 부여하였음.

〈年金制度改善 政策課題〉

첫째, 中長期 年金財政의 安定化方案 강구

둘째, 都市自營者 擴大適用에 따른 勤勞者와 自營者間 保險料 및 給與의 衡平性 提高方案 강구

셋째, 國民年金基金의 效率的 運營方案 강구

넷째, 未適用階層의 所得保障方案 및 公的年金制度間 連繫方案 강구

□ 기획단은 단장 및 상임위원 각 1명, 노총·경총·농협·여성계 등

가입자 대표와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 24명의 전문위원이 기획단의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획단 업무지원을 위하여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 실무지원반을 두고 있음.

□ 기획단은 지난 6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위원회의 13회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9회 포함) 및 전문위원회의 9회를 개최하였음.

□ 기획단은 부여받은 연금제도 개선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의·검토하여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첫째, 國民年金制度 發展의 基本方向 定立
 -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바람직한 역할과 발전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음.
- 둘째, 政策課題別 細部 改善方案 檢討
 - 적정급여수준·보험료·수급연령에 대한 검토
 - 연금재정운영방식(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선택을 위한 논의
 - 연금기금 운용수익을 제고와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
 -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법에 대한 논의
 - 국민연금 미적용자의 소득보장방안에 대한 검토
 - 공적연금제도간 가입기간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

- 셋째, 國民年金制度 改善 基本模型 樹立
 - 국민연금제도의 역할 정립과 정책과제별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안별 개선모형에 대한 심층 토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였음.

2. 國民年金制度 改善方案

가. 國民年金構造의 改善

〈基本構造〉

-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均等部分과 所得比例部分을 분리하여 균등부분은 基礎年金으로, 소득비례부분은 所得比例年金으로 함.
 - 사업장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당연적용하고, 급여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確定給與方式으로 함.
 - 기초연금은 세대내 및 세대간 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에 기여함.
 - 소득비례연금은 기여에 상응하는 급여수준을 보장함.
 - 국민연금기금도 기초연금기금과 소득비례연금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용함.
 - 연금재정운영은 국민저축의 증대와 후세대 부담과중의 방지를 위하여 積立方式을 계속 유지함.
 - 소득비례연금기금은 수익성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용하고, 기초연금은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도록 운용함.

※ 소수의견

-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현행의 일원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소득비례연금에 도시자영자를 임의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연금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소득비례연금을 확정각출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給與水準의 調整〉

- 노령연금급여수준은 40년 가입시 연금가입기간중 평균소득 대비, 최하위 20% 계층의 경우 78%, 최상위 20% 계층의 경우 31%(평균 소득자의 경우 40%)로 함.
- 사업장 가입자와 도시지역 자영자간의 소득재분배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의 비율을 현행 4 : 3에서 2 : 3으로 조정함.

〈제도개선에 따른 노령연금급여산식〉

$$\text{기초연금} = 0.16 \times A \times n/40$$

$$\text{소득비례연금} = 0.24 \times B \times n/40$$

A: 수급전년도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수급자의 전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n : 연금보험료 납입연수

〈表 1〉 所得分位別 年金給與率(1998년 이후 가입자)

(단위: 40년 가입기준, %)

소득분위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합계
I	53.0	24.0	76.9
II	24.7	24.0	48.7
III	17.0	24.0	41.0
IV	11.7	24.0	35.7
V	7.1	24.0	31.1

註: 1) 소득분위는 1997년 9월말 현재 표준소득등급별(45등급) 가입자 누적분포에 기초하였음.

2) 급여율은 전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최초노령연금급여액의 비율이며, 분위별 급여율은 표준소득등급별 급여율을 가입자분포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음.

3) I분위: 1~15등급(22~57만원), II분위: 15~20등급(57~85만원), III분위: 20~25등급(85~121만원), IV분위: 25~31등급(121~176만원), V분위: 31~45등급(176~360만원)

※ 소수의견

- 평균급여율을 50%(기초연금 20%, 소득비례연금 30%)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평균급여율을 60%(균등부분 30%, 소득비례부분 30%)로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일원체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기준연령은 장기적으로 평균수명 및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추이에 맞추어 연장하도록 함.

〈表 2〉 年金受給年齡 調整計劃

조정연도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
연금수급개시 기준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수급개시자 생년	1952년생	1956년생	1960년생	1964년생	1968년생

- 연금수급을 위한 最小加入年數는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하향조정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전국민 연금시대에 맞추어 현행 반환일시금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연금의 계속가입을 제도화함.

〈保險料 水準의 調整〉

- 연금보험료는 현행법에 명시된 9% 수준을 가능한 한 유지하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함.

〈表 3〉 保險料 調整計劃

事業場 加入者			
1998~2009년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계
근로자	1.8%	1.2%	3.0%
사용자	1.8%	1.2%	3.0%
퇴직금	-	3.0%	3.0%
계	3.6%	5.4%	9.0%
地域加入者			
1998~2000년	1.2%	1.8%	3.0%
2000~2005년	2.4%	3.6%	6.0%
2005~2009년	3.6%	5.4%	9.0%
※ 2010년 이후 보험료를 조정 ¹			
2010~2014년	4.00%	5.95%	9.95%
2015~2019년	4.40%	6.50%	10.90%
2020~2024년	4.75%	7.05%	11.80%
2025년 이후	5.10%	7.55%	12.65%

註: 1) 사업장근로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소수의견

- 평균급여율을 50%로 조정할 경우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은 15.9%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평균급여율 60%인 경우 19.1%).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로써 5년마다 한 번씩 財政再計算(actuarial estimates)을 통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함.

〈經過措置 (既存加入者の 既得權 保護)의 마련〉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종전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의 기득권은 완전히 보장토록 함.

- 제도개선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행급여산식에 의한 연금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제도개선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급여산식에 의하여 연금급여를 산정함.

1988년 제도 도입당시 가입자의 가입기간 경과에 따른 급여율 변화추이는 <표 4>와 같음.

기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현행 연금급여체계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간의 급여비율에 따라 기초연금기금과 소득비례연금기금에 4:3 비율(백분율로 57% : 43%)로 분리 운영함.

〈表 4〉 加入期間에 따른 所得分位別 年金給與率의 比較
(1988년 가입자 기준)

(단위: %)

소득분위	가입연수							
	15년		20년		30년		40년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I	61.0	50.3	79.1	59.9	96.1	78.3	100.0	88.8
II	34.4	29.0	45.8	35.1	68.8	47.3	91.7	59.4
III	27.2	23.2	36.2	28.3	54.3	38.6	72.4	48.8
IV	22.0	19.3	29.6	23.7	44.4	32.6	59.2	41.6
V	17.9	15.8	23.9	19.7	35.8	27.5	47.8	35.3

註: <표 1>의註 참조.

〈財政展望〉

□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2050년경 적립기금규모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각각 당해연도 총지출의 8.3배 및 10.7배가 되며, 이 적립율수준은 2080년까지 유지되어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이 확보됨.

※ 소수의견에서 제시된 평균급여율 50%와 60%에 대한 재정전망은 <부록 3>을 참조.

〈表 5〉 制度改善案에 따른 財政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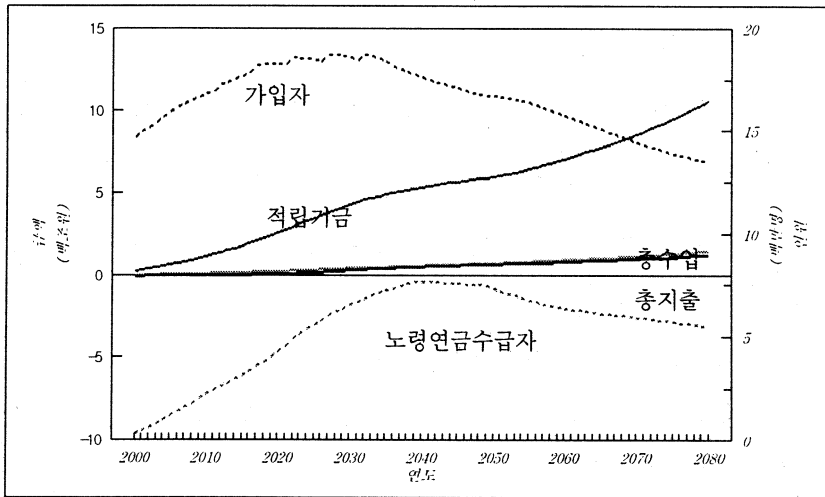
(단위: 조원, 1995년 불변가격)

연도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부양율 (%)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적립율(배)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적립율(배)	
1998	19.2	5.0	0.3	50.5	19.5	7.0	0.2	70.8	1.7
2000	30.7	6.9	0.7	39.7	36.9	9.8	0.5	63.6	3.0
2010	119.3	16.6	4.5	26.2	182.6	24.9	4.5	40.1	13.4
2020	264.5	31.6	14.2	18.6	433.2	47.9	17.4	24.9	23.8
2030	432.0	49.2	34.0	12.7	741.3	75.4	45.9	16.1	35.4
2040	539.4	64.6	57.1	9.4	977.1	100.3	81.4	12.0	43.6
2050	604.4	79.3	73.0	8.3	1,148.7	124.1	107.3	10.7	44.1
2060	711.2	98.0	84.9	8.4	1,381.1	153.8	127.1	10.9	40.8
2070	863.5	121.1	103.8	8.3	1,681.5	190.0	156.5	10.7	41.3
2080	1,067.1	151.8	128.0	8.3	2,068.9	237.7	193.0	10.7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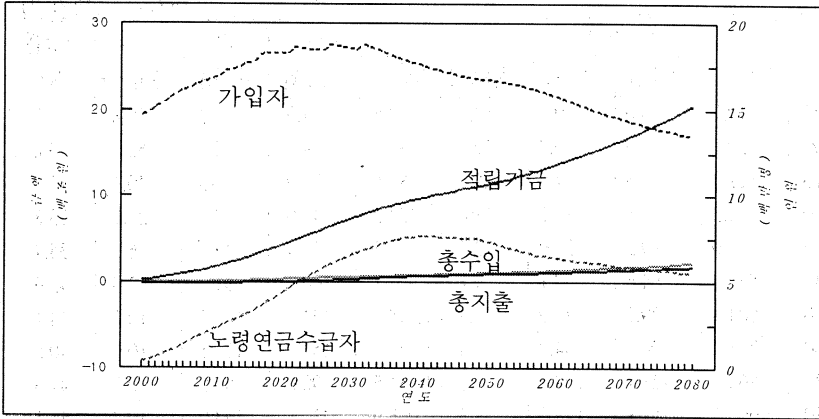
註: 적립율은 적립기금/총지출, 부양율은 연금수급자수/연금가입자수 임.

資料: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圖 1〕 基礎年金 財政展望



[圖 2] 所得比例年金 財政展望



나. 基金運用의 改善

-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예탁이자율을 금융부문 투자 수익을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에 따른 기금의 손실을 방지함.
 - 공공부문보다 수익율이 낮은 복지부문 기금투자는 점차 축소하도록 함.
-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에서 공공자금 예탁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재정융자특별회계 내에 '國民年金計定'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매년도 공공부문 기금운용내역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에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 당사자

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함.

※ 소수의견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하여 가입자대표 2/3, 정부대표 1/3 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委員會'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함.

다. 全國民年金 擴大에 따른 制度改善

□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적용에 따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시지역 가입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부과방법 개발
- 둘째, 공적연금제도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확보방안 강구
- 셋째, 공적연금제도간 연계방안 개발

〈自營者에 대한 保險料 賦課方法〉

- 자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은 당사자의 소득신고금액을 근거로 하되, 추정소득·과세표준소득·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등을 보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소득신고금액이 제반 근거자료에 비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함.

〈未適用階層에 대한 年金受給權 確保方案〉

- 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확대과정에서 미적용된 기존 노인계층 중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에 의한 공공부조적 성격의 「敬老年金」을 지급함.
- 여성연금권 확보를 위하여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중 부부공동으로 획득한 연금 또는 수급권을 균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
 - 전업주부 및 부부협업 여성배우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활성화함.
 - 육아휴직여성의 연금보험료는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연금가입기간의 단절을 예방함.

〈他公的年金制度와의 加入期間 連繫〉

- 타 공적연금제도와의 가입기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직역의 전환시에도 연금수급권이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개별 연금제도별로 가입기간에 따라 별도로 연금급여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附錄 1〉 現行 國民年金制度와 改善案의 比較

	현행제도	제도개선안	
기본구조	○ 일원형: 균등부분 + 소득비례부분	○ 이원형: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적용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	○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 적용	
보험료	○ 5년간격으로 3%에서 9%까지 단계적 조정.	○ 2009년까지 좌동 ○ 2010~2014년: 10.90% 2015~2020년: 11.80% 2020년 이후: 12.65%	
연금 급여율 ¹⁾ 급여	○ 최하위 20% 계층 100% 최상위 20% 계층 48% 평균소득 계층 70%	○ 1988년~개선이전: 현행 급여산식 적용 ○ 제도개선 이후: 최하위 20% 계층 77% 최상위 20% 계층 31% 평균소득 계층 40%	
	수급연령	○ 60세	○ 2013년부터 5년간격으로 1세씩 상향 조정(65세까지)
	최소가입연수	○ 15년	○ 10년 (반환일시금제도 원칙적으로 폐지)
재정운영방식	○ 수정적립방식	○ 기초연금: 적립방식 ○ 소득비례부분: 적립방식	
재정안정	○ 적립기금고갈 2031년 발생	○ 기초연금: 2050년이후 적립배율 8.3배 계속 유지 ○ 소득비례연금: 2050년이후 적립배율 10.7배 계속 유지	

註: 1) 연금급여율은 40년 가입기준임.

〈附錄 2〉 基礎年金 및 所得比例年金의 分離運營 必要性

-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구분함으로써 추후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속적으로 제도운영이 가능함.
 - 향후 국민연금의 구조조정 및 확대적용시 조정이 용이
예)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제」로, 소득비례연금은 「1소득자 1연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 기업연금 등이 활성화 될 경우 국민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제도적 연계가 용이
예) 영국 등과 같이 국민연금중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가입 예외적용 또는 부분가입제도 실시 가능
 - 통일이 될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연금적용에 있어 신속적 대응이 가능
예) 기초연금은 즉시 적용실시, 소득비례연금은 기여형 적립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용이 가능
- 연금기금계정을 분리함으로써 제도운영상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급여·보험료 수준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조정이 가능
 - 기초연금(기초보장, 소득재분배) 및 소득비례연금(강제저축)의 본연적 기능에 맞추어 소득비례연금은 완전적립식으로, 기초연금은 수정적립식(세대간 소득이전 도모) 또는 추후 부분 조세형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가능
 - 소득비례연금은 수익성 위주로 기금운영을 하고, 공공부문 예탁등은 기초연금기금으로 국한시키는 등 기금운영상의 신속성을 제고

〈附錄 3〉 國民年金 財政展望: 平均給與率 50% 및 60%

□ 平均給與率 50%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分離運營)

	급여율	보험료 조정(%)				
		기준 보험료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기초연금	20%	3.6	4.30	5.00	5.70	6.40
소득비례	30%	5.4	6.50	7.50	8.50	9.50
합계	50%	9.0	10.80	12.50	14.20	15.90

註: 보험료 조정은 전가입자 동일하게 적용함.

— 平均給與率 50%에 따른 財政展望

(단위: 조원, 1995년 불변가격)

연도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부양율 (%)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적립율(배)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적립율(배)	
1998	19.2	5.0	0.4	47.2	19.4	7.0	0.2	69.2	1.7
2000	30.6	6.9	0.8	36.8	36.8	9.8	0.5	61.5	3.0
2010	117.3	17.6	5.0	23.0	181.8	26.6	5.1	35.2	13.4
2020	272.9	36.8	16.4	16.6	455.0	56.0	20.7	22.0	23.8
2030	479.2	60.1	40.4	11.8	823.5	92.0	55.7	14.8	35.4
2040	622.7	79.6	69.2	9.0	1,112.6	123.1	100.1	11.1	43.6
2050	711.0	98.2	89.8	7.9	1,317.2	152.7	133.1	9.9	44.1
2060	846.2	121.8	105.4	8.0	1,590.1	189.7	158.3	10.0	40.8
2070	1,033.0	150.6	129.5	8.0	1,939.9	234.4	195.5	9.9	41.3
2080	1,281.8	188.9	159.8	8.0	2,392.1	293.4	241.1	9.9	41.1

註: 적립율은 적립기금/총지출, 부양율은 연금수급자수/연금가입자수 임.

資料: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 平均給與率 60% (統合運營)

	급여율	보험료 조정(%)				
		기 준 보험료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균등부분	30%	9.0	11.55	14.10	16.60	19.10
소득비례부분	30%					
합 계	60%					

註: 보험료 조정은 전가입자 동일하게 적용함.

— 平均給與率 60%에 따른 財政展望

(단위: 조원, 1995년 불변가격)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적립율(배)	부양율(%)
1998	38.5	11.9	0.7	54.0	1.7
2000	66.8	16.7	1.4	44.8	3.0
2010	295.6	46.6	11.3	26.1	13.4
2020	758.5	106.2	42.2	17.9	23.8
2030	1,439.9	179.4	111.3	12.9	35.4
2040	1,974.2	240.6	199.0	9.9	43.6
2050	2,332.9	298.8	265.2	8.8	44.1
2060	2,810.4	371.1	316.0	8.9	40.8
2070	3,419.2	458.5	391.1	8.7	41.3
2080	4,204.0	574.0	483.1	8.7	41.1

註: 적립율은 적립기금/총지출, 부양율은 연금수급자수/연금가입자수임.

資料: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第 1 章 國民年金制度 改善의 背景

- 일반 국민을 위한 普遍的인 公的年金制度인 國民年金制度는 1988년에 도입되어, 1997년 11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 등 785만여명이 가입하고 있음.
-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는 長期的 財政安定化와 全國民 年金化를 위한 적용확대로 요약될 수 있음.
 - 國民年金制度가 현행체계를 유지한다면, 본격적인 노령연금급여가 시작되는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경에는 당해년도 財政收支 적자가 발생하고, 2031년경에는 積立基金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1998년 7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都市地域 自營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나,
 -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도시자영자에게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은 근본적으로는 「高給與-低負擔」 연금설계에 따른 受給-負擔構造의 不均衡에 그 원인이 있으며, 積立基金의 不實運用에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음.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收支相等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입자의 각출에 연계하여 급여가 이루어지는 社會保險制度임.

-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의 경우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70%를 급여수준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현재가치로 비교할 때 가입기간 保險料總額 보다 수급기간 給與總額이 2~3배 정도 높게 설계되어 있음.

• 이는 본인이 각출한 보험료총액을 상회하는 급여액이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현행 국민연금은 소득계층간 높은 所得再分配 效果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소득계층의 경우에도 보험료 총액 대비 급여총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현세대의 각출을 상회하는 급여액의 부담이 세대내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에 의해서 부담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世代間 所得再分配, 즉 未來世代의 負擔으로 전가되는 것임.

- 이와같이 未來世代로부터의 소득이전을 담보로 하는 修正積立 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高給與-低負擔」 연금제도는 결국 연금기금을 고갈시키게 되고, 기금이 고갈되면 전적으로 현근로 세대가 현노령세대를 부양하는 完全賦課方式으로 전환되게 됨.

• 그러나 인구구조의 急速한 高齡化가 예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賦課方式으로의 전환은 未來世代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임.

□ 이와 같은 현행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에 비하여 國民年金 基金運用의 부실문제는 일반국민에게 널

리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國民의 不信은 매우 높은 실정임.

-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의 개선과 함께 국민연금 基金 運用의 透明性和 效率性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全國民 年金化를 위하여는 自營者의 精確한 所得把握 方法의 개발과 當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존노인계층과 주부 및 협업여성 등 未適用階層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所得再分配 機能이 강하게 내재된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精確한 소득과익이 용이한 사업장근로자와 소득과익이 용이하지 않은 자영자 가입자간 所得再分配의 歪曲으로 가입자간 衡平性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국민연금 도입 및 확대적용시점에서 이미 노령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기존노인계층은 공적연금에서 소외된 過渡期的 階層으로, 이들에 대한 공적 노후소득보장대책이 필요함.

- 또한 專業主婦 및 協業女性의 경우 국민연금의 當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적 노후소득보장대책이 부재하므로 이들 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최근 先進國에서는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사회보장비 지출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여 國家介入의 축소와 社會保障支出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적부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보장부문의 부분적인 민영화 등을 통하여 民間部門과의 役割分擔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수지 상등을 도모하는 등 制度內的 健實化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先進國들은 社會保險制度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民營化를 단행하고, 이에 따른 稅制 誘引을 부여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있음.

- 특히 老後所得 보장에 있어 기존에는 저소득층과 중·고소득층에 대하여 각각 노령수당과 공적연금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재정적자가 증대하자 公的年金은 기초보장을 담당하고 私的年金으로 보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선진국은 연금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의 「高給與·高負擔」 체제를 더 이상 유지·존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연금급여수준의 인하, 연금수급연령의 연장, 연금보험료의 인상 등의 연금재정의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公的年金制度가 도입된지 불과 10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아직 본격적인 연금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은 制度導入 初期에 있어 先進國의 前轍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適合한 老後所得保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

금 부문의 발전도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에의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公·私 均衡的인 役割 分擔이 초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先進國의 經驗과 세계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國民年金의 健實化와 함께 사적연금제도도 포함한 전체적 公·私 年金制度의 역할분담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先進國의 「고급여·고부담」 연금제도의 施行錯誤를 감안할 때 연금제도의 개편에 있어서 노령수당적 성격의 사회부조적 요소 보다는 가급적 사회보험제도로서의 收支相等의 개념에 입각한 연금제도를 설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본 보고서는 國民年金制度의 건실한 발전과 전국민 연금확대를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바람직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國民年金제도의 現況과 政策課題를 살펴보고,

- － 제3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논의된 制度改善의 主要爭點과 개선대안별 基本模型을 비교·검토하였으며,
- －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改善方案과 財政展望을 제시하였음.

第 2 章 國民年金制度의 現況과 政策課題

第 1 節 國民年金制度의 一般現況

1. 概 觀

□ 우리나라의 公的年金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國民年金制度和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公務員·軍人·私立學校教職員 年金制度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되어 초기단계에 있는 반면, 3개 직역연금은 도입후 20~35년이 경과하여 정착단계에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92) 및 농어촌지역('95)까지 확대되었으며, 1998년부터 도시자영자 확대를 앞두고 있음.

〈表 2-1〉 우리나라의 公的年金制度(1996)

(단위: 천명, 십억원)

	도입 연도	가입자 (A)	수급자 (B)	B/A	적립기금	기여 및 급여구조	
국민연금	1988	7,829	109	1.4%	21,671	기여: 소득의 9%('98이후) 급여: 균등부분 + 소득비례부분	
직역연금	공무원	1960	971	64	6.6%	5,680	기여: 소득의 13% (1995년 이전 11%) 급여: 소득비례
	군인	1963	152	49	32.2%	651 (1995년 연간 재정적자)	
	사립교원	1975	191	5	2.6%	2,759	

註: 군인연금은 1995년도 수치이고 여타 연금은 1996년도 수치임.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내부자료.

2. 適用對象

국내에 거주하는 18歲 以上 60歲 未滿의 國民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됨.

-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생활보호대상자, 3년 이상의 교도소수감자 및 행불자, 장애연금수급권자 등은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됨.

국민연금의 적용은 當然加入者와 任意加入者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當然加入者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 事業場加入者: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 地域加入者: 사업장 가입자외의 자로서 1994년 12월 31일 현재 郡에 거주하는 자 및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의 배우자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와 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됨.
-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은 임의계속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음.
 - 任意繼續加入者: 국민연금가입 2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경우 신청에 의해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음.
 - 任意加入者: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서 임의로 가입을 신청한 자임.

3. 給 與

가. 基礎年金額의 算定

연금급여는 基本年金額에 加給給與를 加산하여 지급함.

- 기본연금월액 = $0.2 \times (A + 0.75B) \times (1 + 0.05n)$

A : 연금수급전년도의 전체가입자 소득평균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소득의 평균월액

n :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는 년수

- 가급급여액: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2인이내), 60세 이상 부모에게 지급 (배우자 연 60,000원, 기타 연 36,000원)

가입자의 所得水準別로 가입연수에 따른 年金給與水準은 <表 2-2> 와 같음.

<表 2-2> 現行制度的 所得水準 및 加入期間에 따른 年金給與率

(단위: %)

가입연수 \ 소득수준	20년	30년	40년
0.25*A	95	100(142.5)	100(190)
0.5*A	55	82.5	100
1.0*A	35	52.5	70
2.0*A	25	37.5	50
3.0*A	21.7	32.5	43.3

註: 연금급여율(%) = $\frac{\text{연금액}}{\text{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 \times 100$

A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안은 연금산식에 의해 산정된 소득대체율임. 그러나 법적으로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100%를 초과할 수는 없음

나. 給與種類 및 受給要件

□ 연금급여 종류 및 受給要件과 給與水準은 <表 2-3> 과 같음.

<表 2-3> 現行制度의 給與種類別 受給要件과 給與水準

급여유형		수급요건	가입기간 및 수급연령	급여수준
노령연금	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단 광부, 선원은 55세)	20년 이상, 60세 이상	기본연금액의 100% + 가급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단, 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연령 60-64세	기본연금액의 50-90% (가급연금 해당없음)
	감액 노령연금	· 가입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자로 60세에 달한 때	가입기간 15-19년	기본연금액의 72.5-92.5% + 가급연금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수급연령 55-59세	기본연금액의 75 - 95% + 가급연금
장해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서 환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남은 때	장해등급 1-4급	1-3급: 기본연금액의 100, 80, 60% + 가급연금 4급: 기본연금액의 1.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 가입기간 1년 이상자,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이었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해2급 이상의 장해연금수급권자 등이 사망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	가입기간 1년이상	가입기간에 따라 40%(10년 미만), 50%(1년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 지급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5년 미만인 자로 자격상실후 1년 이상 경과 · 가입기간 1년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 15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된 유족이 없는경우	-	반환일시금 상당액, 단,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내에서 지급

4. 財 源

가. 年金保險料

- 保險料는 당사자 표준소득월액의 9%이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3→6→9%로 인상조정함. 가입종별 보험료율은 <表 2-4> 와 같음.

<表 2-4> 加入種別 保險料率

가입자	부담자	1988~92	1993~97	1998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계	3%	6%	9%
	근로자	1.5%	2%	3%
	사용자	1.5%	2%	3%
	퇴직금전환금	-	2%	3%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본인	3%	6%	9%
		1995.7~2000.6	2000.7~2005.6	2005. 7월 이후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본인	3%	6%	9%

나. 國庫負擔

- 지역가입자중 農漁民에 한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最低等級 年金保險料의 3분의 1(월 2,200원)을 국고에서 지원
- 管理運營費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

5. 基金運用

-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은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보험료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됨.

基金運用의 原則 : 수익성, 공공성, 안정성

기금운용 현황

〈表 2-5〉 國民年金 基金造成額 및 投資配分

(단위: 억원, %, 1997년 9월말 현재)

총 계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260,692	177,896	74,767	8,029
(100.0)	(68.2)	(28.7)	(3.0)

第 2 節 給與·負擔 構造分析과 政策課題

1. 給與·負擔構造의 問題點

가. 年金給與

年金給與水準과 관련하여 問題點을 살펴보면

- 첫째,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現世代 모든 가입계층의 보험료 부담 대비 연금급여의 수익비가 1.0을 초과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전적으로 未來世代로의 負擔轉嫁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所得階層別 收益比를 살펴보면, 최저소득등급인

1등급의 수익비는 6.54배, 10등급은 4.28배, 20등급은 2.41배, 30등급은 1.71배, 40등급은 1.41배, 최고등급인 360만원 소득자의 경우도 1.31배로 1.0을 상회하고 있음.

- 또한 최고소득계층의 보험료 부담액은 최저소득계층의 16.4배인 반면 연금급여액의 차이는 3.3배로 강력한 所得再分配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액으로는 最高所得階層이 국민 연금제도에 의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表 2-6〉 現行制度的 所得水準別 給與率 및 收益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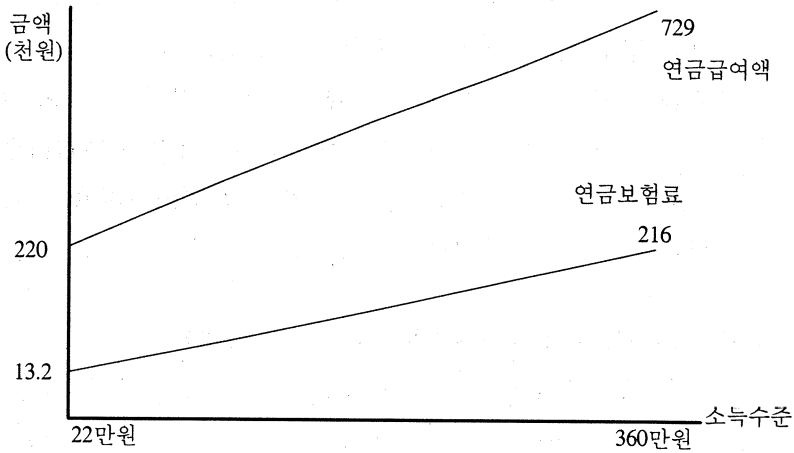
등급	표준소득월액(A)	연금월액(B)	급여율(B/A)	수익비
1	220,000	220,000	100.0	6.54
5	260,000	227,700	87.6	5.68
10	370,000	244,200	66.0	4.28
15	570,000	274,200	48.1	3.12
20	850,000	316,200	37.2	2.41
25	1,210,000	370,200	30.6	1.98
30	1,660,000	437,700	26.4	1.71
35	2,190,000	517,200	23.6	1.53
40	2,800,000	608,700	21.7	1.41
45	3,600,000	728,700	20.2	1.31

註: 1995년말 평균소득월액(A) 943,502원 기준.

수익비 = 총급여현가액/총보험료부담현가액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圖 2-1] 現行制度의 所得水準別 保險料 및 給與額 比較



- 넷째, 最低所得階層의 경우 20년이상 가입하여도 소득대체율이 증가되지 않아 해당계층의 지속적인 제도가입에 대한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表 2-7> 現行制度下 最高·最低所得階層間 加入年數에 따른 年金額 比較

(단위: 천원)

소득계층	20년	30년	40년
22만원	220	220	220
100만원	350	525	700
360만원	740	1,110	1,480

註: 평균소득 100만원 가정.

나. 年金保險料

- 현행의 國民年金體系를 維持할 경우 積立기금의 高갈로 賦課方式으로 전환되어 2050년경에는 國民연금보험료율이 25.1%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

〈表 2-8〉 現行制度下에서 財政安定을 위한 保險料率 展望

(단위: %)

연 도	1988	1993	1998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보험료율	3.0	6.0	9.0	9.0	9.0	9.0	14.7	21.8	25.1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나라의 年金보험제도는 外形上으로는 각 개인이 미리 貯蓄하여 둔다는 積立方式에 기초하고 있지만, 實제적으로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많은 費用을 차세대로부터 補助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음.
- 한편 國民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都市自營者의 所得을 現행 농어촌지역가입자와 유사한 형태로 下向申告할 경우 전가입자 平均소득월액(급여산식의 A부분)의 하락으로 1999년 이후 수급자의 급여수준 하락이 예상됨.
 - 1996년말 기준으로 사업장근로자의 平均소득월액은 121만 5천원, 농어촌지역가입자의 동액은 56만 7천원으로 전가입자 平均소득월액은 107만 5천원임.
 - 도시자영자의 平均소득월액이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소득보

다 10% 정도 높은 62만 4천원이라 하여도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83만 2천원으로 하락함.

다. 年金受給年齡

□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平均停年은 55세로 完全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0세보다 낮음.

—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老齡年金水準을 減額하여 5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현행의 연금수급연령은 先進國의 水準(65세 내외)에 비하여 낮아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외국에 비하여 2~5년 정도 짧은 점을 감안하여야 함.

〈表 2-9〉 主要國의 平均壽命 推移

	1990	1995	2000	2005	2010
미 국	75.5	76.4	77.1	77.7	78.4
일 본	78.9	79.7	80.1	80.5	80.9
프랑스	76.5	77.3	77.9	78.5	79.1
한 국	71.6	73.5	74.9	76.1	77.0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 給與·負擔構造의 適正化를 위한 政策課題

가. 基本原則

- 첫째, 적정화의 제1원칙은 年金財政의 收支相等의 원칙임. 수지상등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급여·저부담」 구조에서 「고급여·고부담」 구조로 이행할 것인지, 「저급여·저부담」 구조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둘째, 수지상등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適正한 世代間 所得移轉의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세대내에서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나. 適正年金給與

- 年金給與水準은 여러 요소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급여수준 결정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 需要側面으로 첫째, 수급자 본인의 종전소득, 둘째 현역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 및 급여수준, 셋째 고령자의 평균적 실제 생활수준, 넷째 노후생활 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다섯째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있음.
 - 供給側面으로 비용부담과의 귀착과 장기적인 연금재정에의 영향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의 國民年金은 收支相等의 原則에 따라 受給負擔構造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차세대로부터 부족액만큼을 보조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ILO 102호 협약(社會保障의 最低基準에 관한 협약)에서는 30년 가입시 평균소득자의 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4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음.

다. 適正年金保險料

- 年金保險料 負擔能力은 타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 일반조세부담 등 각종의 國民負擔率과 각 나라마다 특성을 가지는 私的인 費用(교육비, 주거비)의 폭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됨.
 - 노인세대의 부양에 필요한 급여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은 초기에는 私的扶養에 의존하나 점차 연금보험료를 통한 公的扶養負擔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先進國의 경우 조세부담율이 평균적으로 34~53%, 사회보험료 부담율이 10~28% 수준으로 공적부담율은 37~70%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현재 조세부담율이 20.1%, 사회보험료 부담율(퇴직금 비포함)이 2.9%로 總國民負擔率은 23%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부양비용 등에서의 큰 폭의 증가로 國民負擔率(조세부담율+사회보장부담율)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2-10〉 國民負擔率 國際比較

(단위: %)

	한 국 (1994)	일 본 (1994)	미 국 (1990)	영 국 (1991)	독 일 (1991)	스위스 (1989)	스웨덴 (1991)
조세부담율	20.1	24.1	25.6	39.4	29.2	33.7	52.8
사회보장부담율	2.9	13.4	10.7	10.6	21.8	28.1	21.5
국민부담율	23.0	37.5	36.3	50.0	51.0	61.8	74.3

註: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퇴직금을 포함하면 사회보장부담율이 높아질 것임.
조세부담율=총세입/GNP, 사회보장부담율=사회보험료부담액/GNP

資料: 일본 총리부, 「사회보장통계연보」, 1995.

〈表 2-11〉 우리나라 勤勞者 所得 對比 社會保障負擔(1996)

(단위: %)

총계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18.13	6.00	3.05	1.68	1.10	6.30

□ 年金財政의 安定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漸進的으로 上向調整하도록 함.

- 연금보험료율의 인상은 세대간 소득재분배 비율을 고려하여 적정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장기적 계획하에 시행되어져야 할 것임.

라. 適正年金受給年齡

- 연금수급연령(현행 60세)은 平均壽命의 변화, 退職年齡의 변화, 高齡者 就業率, 연금재정수지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임.
- 현실적으로 平均壽命이 연장되는 만큼 수급시점을 연동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그러나 年金受給年齡의 조정은 장기적 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조정하여야 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음.
 - 특히 장기적인 고령자 취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연금수급연령을 55세부터 65세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연령에 따라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年金受給年齡의 變動時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연금수급자 個人 收益率의 변화를 보면, 연금수급연령이 60세인 경우 수익비는 2.28이었으나 61세로 상향조정하면 2.13, 62세로 조정시에는 1.98, 63세로 조정시에는 1.84, 64세로 조정시에는 1.70, 65세로 조정시에는 1.56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表 2-12〉 受給年齡 調整時 收益比 變化效果

수급연령	수익비	60세=100 기준 수익비 지수
55	3.02637	132.98
56	2.87367	126.27
57	2.72214	119.61
58	2.57195	113.01
59	2.42313	106.47
60	2.27572	100.00
61	2.12879	93.54
62	1.98377	87.17
63	1.84110	80.90
64	1.70117	74.75
65	1.56425	68.73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年金財政方式에 대한 檢討

□ 年金財政方式의 種類

- 연금재정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음.
- 積立方式(funded system)은 퇴직후에 수급할 연금액의 합계가 근로기간 동안에 적립한 연금보험료의 원리합계와 같도록 보험료를 산출하는 연금재정방식이며,
- 賦課方式(pay-as-you-go system)은 어느 한 시점에서 노령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재원을 그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액에서 구하는 방식을 의미함.

□ 이와같은 연금재정방식의 차이는 積立率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 積立方式(완전적립방식)은 연금가입자에게 지불해야할 연금지금액(연금채무액)을 100% 적립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반면, 賦課

方式은 적립기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당년도에 지불할 연금 채무액 중 일부분만 보유하게 됨.

□ 재정방식별 世代間 所得移轉效果를 보면, 적립방식은 인구증가율의 변화와 관계없이 세대간 소득이전효과가 전혀 없으나, 부과방식은 인구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세대간 소득이전효과가 발생함.

- 즉 人口增加率이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자수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낮아져 보험료율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未來世代가 유리하게 되고,

- 반대로 人口增加率이 낮아지면 보험료 부담자수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높아져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未來世代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재정방식이 貯蓄率에 미치는 영향은 적립방식은 저축율에 중립적이며, 부과방식은 저축율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積立方式下에서는 보험료 각출만큼 民間貯蓄의 驅逐(crowding-out)이 발생하여 저축율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며,

- 賦課方式下에서는 연금제도 도입초기세대가 연금급여에 상응한 보험료율 부담 없이 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초기연금수급자의 소비지출의 증가로 저축율이 감소한다는 것임.

□ 年金財政의 健全性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有·不利는 賃金上昇率, 人口增加率, 利子率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임금상승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과방식이 유리하고
- 임금상승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이 이자율보다 낮으면 적립방식이 유리함.
- 따라서 임금상승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이 이자율과 동일하면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有·不利가 중립적임.

第 3 節 國民年金基金 運用實態 分析과 政策課題

1. 基金運用 現況

가. 基金運用 內譯

- 1997년 9월말 현재 연금기금은 총 30조 6천억원이 구성되어 이중 26조 1천억원이 공공부문(68.2%), 금융부문(28.7%), 그리고 복지부문(3.1%)에 운용되고 있음.
- 1997년 1월부터 9월까지 6조 5천 548억원이 조성되어 연금급여등으로 1조 298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조 4천250억원이 공공부문(61.8%), 금융부문(34.7%), 그리고 복지부문(3.5%)에 운용되었음.

〈表 2-13〉 1997年度 年金基金運用 現況

(단위: 억원, %)

구 분	1996년말 현 재	1997년 1~9월			1997.9월말 현 재
		계 획	실 적	%	
가. 조성	250,284	103,208	65,548	63.5	305,565
○ 연금보험료	190,520	[289]	(10,267)		
○ 운용수익	59,764	58,121	41,839	72.0	232,359
○ 회수자금	-	24,210	13,442	55.5	73,206
		[289]	10,267	49.2	-
나. 지출	33,575	23,103	11,298	48.9	44,873
○ 연금급여	31,014	[230]			
○ 자산취득비 등	1,798	22,365	10,877	48.6	41,891
		[230]	251	47.6	2,049
○ 공단운영비 등	763	211	170	80.6	933
다. 운용	216,709	80,105	54,250	67.7	260,692
○ 공공부문	146,752	[59]	(10,267)		
- 재정자금예탁	47,520	-	(2,400)	-	45,120
- 공공자금예탁	99,232	50,000	33,544	67.1	132,776
○ 복지부문	6,945	3,709	1,907	51.4	8,029
		[59]	(823)		
- 주택기금채권	2,700	-	(600)	-	2,100
- 보육시설용자	3,778	2,000	1,433	71.7	5,059
			(152)		
- 노인시설용자	337	1,000	222	22.2	559
- 생활안정자금		500	227(71)	45.4	156
- 복지타운건설	130	209[59]	25	12.0	155
○ 금융부문	63,012	26,396	18,799	71.2	74,767
			(7,044)		
- 국공채	22,744	6,000	8,534	142.2	26,401
			(4,877)		
- 주식	10,617	1,500	△51	△3.4	10,566
- 회사채 등	28,782	18,896	8,702	46.1	35,317
			(2,167)		
- 단기상품	869	-	1,614	-	2,483

註: 계획란의 [] 는 이월금액이며, 실적란의 () 는 회수자금임.

- 1997년 9월말 현재 基金運用 收益率은 공공부문 및 복지부문 적용금리의 하향조정과 시중금리 하락 및 주식시장의 약세 심화로 1996년(10.75%)대비 평균 0.06% 포인트 하락으로 10.69%시현
- 공공부문은 예탁금리의 인상으로 '96년 10.30%에 비해 10.33%로 0.03% 포인트 증가하였음.
 - 금융부문의 경우 수익율은 '96년 11.86%에 비해 11.78%로 0.08% 포인트 하락하였음.
 - 복지부문의 경우 96년 9.69%에 비해 8.74%로 0.95% 포인트 하락하였음.

〈表 2-14〉 年金基金의 投資部門別 收益率 現況

(단위: %)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9
평 균	11.98	12.79	12.55	12.76	12.68	11.99	12.10	12.11	10.75	10.69
공공부문	11.00	11.00	11.00	11.00	11.00	9.67	10.25	11.64	10.30	10.33
금융부문	12.95	14.35	13.83	14.04	14.07	13.87	13.91	13.11	11.86	11.78
복지부문	-	-	-	11.00	11.00	11.00	10.94	10.68	9.69	8.74

나. 國民年金基金의 運用節次

-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國民年金法과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해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의 의결 및 財政經濟院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연금법상의 위원회로서 현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1993년에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의 상당부분이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 義務預託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이 축소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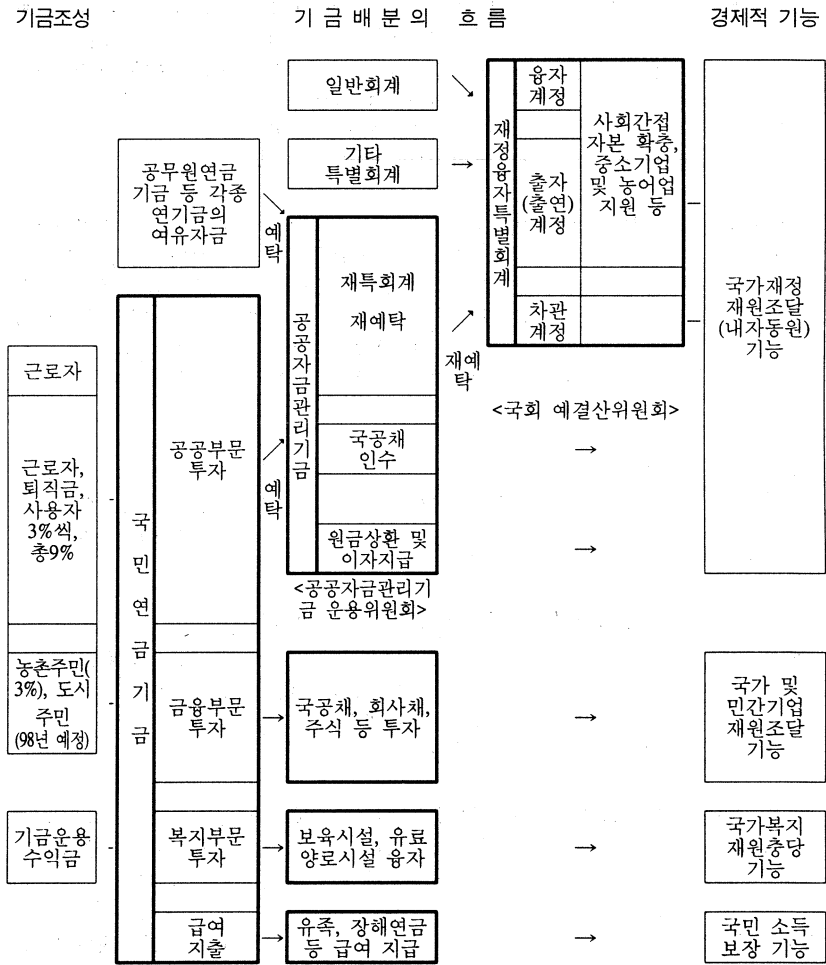
-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부총리(재정경제원장관)를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정부의 각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등 10인으로 이루어져 있음.

〈表 2-15〉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와 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의 人的構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총15인)	위원장: 재정경제원 장관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정무): 농림수산부 장관, 통상산업부 장관, 노동부 장관(3인) 위원(노동계): 한국노총위원장, 금융노조연맹위원장 (2인) 위원(사용자): 경총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인) 위원(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인) 위원(수급권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1인) 위원(농어민 및 지역가입자): 농협중앙회 회장, 수협중앙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3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총10인)	위원장: 부총리 (재정경제원 장관) 위원: 통상산업부 장관, 총무처 장관,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 國民年金基金의 組成과 基金配分의 흐름은 [圖 2-2] 와 같으며, 연금기금운용의 계획수립과 집행 및 기금운용 결과보고는 <表 2-16> 및 <表 2-17> 로 요약·정리할 수 있음.

[圖 2-2] 國民年金基金 造成 및 基金配分의 흐름과 經濟的 機能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¹⁾>

註: 1) 국민연금기금배분 단계에서 법적 통제권이 부여된 위원회임.

〈表 2-16〉 國民年金基金的 運用計劃樹立 및 執行

업무흐름	주관	업무수행	업무내용
1.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원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월말까지 통보	○ 기금운용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
2. 기금운용지침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 4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 ○ 운용위원회에서 5월말까지 심의·의결	○ 공공사업, 복지사업부문 투자비율 결정 ○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 순위
3. 기금운용계획 협의	재정경제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6월말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 ○ 재정경제원장관은 8월말까지 동계획에 대한 협의 완료	○ 정부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확정 ○ 기금운용계획의 실질적인 결정단계
4. 기금운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 기금조성 및 지출규모 부문별(공공, 복지, 금융) 운용규모 결정
5. 연간자금운용 지침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공단시달-동 지침에 의거 연간 자금운용계획작성, 복지부 보고	○ 연간 투자기준 및 금융권별, 상품별, 투자규모 결정
6. 월자금운용계획	공단	○ 공단이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승인	○ 월중조성 및 지출규모, 금융권별, 상품별, 투자규모 결정
7. 일(日)자금운용	공단		○ 매일의 조성자금을 월 자금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

〈表 2-17〉 國民年金基金의 運用結果報告

업무흐름	업무내용
1. 일·월자금집행결과	○ 월간 기금운용실적보고: 공단 ⇒ 보건복지부
2. 분기 기금운용결과	○ 분기별 성과분석: 공단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기금운용위원회
3. 결산보고	○ 공단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재정원, 감사원, 국회, 공고(경제일간지 게재)

2. 國民年金基金 運用의 問題點

가.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強制預託과 過度한 公共部門 借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은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으로 강제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연금급여, 자산취득비, 그리고 공단운영비를 제외한 여유자금 중 약 60%-70%에 해당되는 자금이 강제 예탁되고 있고, 그 규모는 1997년도에는 5조원에 이르며 누적비율은 69%에 달하고 있음

〈表 2-18〉 國民年金基金의 公共部門 預託比率 推移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연도별예탁금액(억원)	6,100	12,400	38,966	45,000	48,000	50,000
예탁비율 (%)	40.6	37.5	87.1	88.5	63.6	62.5
누적비율 (%)	44.8	40.5	57.7	65.4	67.7	69.0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현재와 같이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의 약 60%~70% 정도를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차입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안에 예탁금의 규모가 수십조원으로 늘어나게 됨.

- 더욱이 1998년 국민연금제도가 890만으로 추정되는 도시자영자로 확대될 경우에는 예탁금의 규모가 수년 안에 정부의 일 반회계 규모를 상회하게 될 전망이다.

□ 이럴 경우, 원금의 상환은 물론이고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지급마저 정부의 커다란 부담이 되어 향후 더 많은 예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더욱이 公共部門과 金融部門間의 收益率의 격차로 인한 기회손실액이 1996년 현재 약 7,0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수익률 1% 상승시 기금고갈을 2-3년 정도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의 과도한 공공부문 차용은 기금고갈 시기를 앞당기며, 결국 이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됨

〈表 2-19〉 國民年金基金의 公共部門과 金融部門의 收益率 比較
(단위: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9
공공부문	11.00	11.00	11.00	9.67	10.25	11.64	10.30	10.33
금융부문	13.38	14.04	14.07	13.87	13.91	13.11	11.86	11.78
수익율차	2.38	3.04	3.07	4.20	3.66	1.47	1.56	1.45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預收金證書 交付問題

- 과도한 공공부문 차용에 따른 정부의 상환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金融市場에서 換金性이 보장되지 않는 預收金證書를 교부함으로써 더욱 고조되고 있음.

다. 基金運用 透明性 問題

- 정부의 기채행위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國會의 事前議決權이 연금 기금의 예탁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年金基金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예비자산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금의 사용처가 투명하여야 함.
 - 公共資金管理基金의 정부에 대한 財政融資는 제반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統合計定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과 지출항목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음.

라. 加入者의 參與問題

-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信賴性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효율적, 일관적, 지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상자인 국민들을 운용구조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
-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정권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있으며, 人的構成에 있어서 정부측 위원의 구성비율이 가입자측 구성비율보다 높음.

마. 基金運用의 專門性 問題

- 1997년 9월 현재 적립기금 중 금융부문에 투자된 액수는 전체 적립금의 29.9%에 해당되는 7조 4,767억원인데,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금융부문 적립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專門性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한 事後評價가 전문기관 혹은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부실한 실정이고, 기금운용결산을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정도로 기금운용에 대한 대국민 情報公開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3. 國民年金 基金運用의 政策課題

가. 基金收益率의 提高

〈公共部門에 대한 投資 改善〉

- 연금기금의 과도한 공공부문활용은 운용수입의 손실로 인한 재정 안정의 저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財特活用을 점진적으로 縮小하거나 이자율을 市場利率 水準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 연금기금을 재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웨덴, 캐나다, 미국 등의 국가와 같이 換金性이 확실히 보장되는 國公債등 유가증권의 형식으로 상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株式投資의 擴大 檢討〉

- 장기적으로 利子率이 下向 安定化 추세가 進行될 전망이므로 채권 중심의 투자는 연금기금의 安定적 성장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株式투자 비율의 확대를 검토함.
 - 株式투자는 株式형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 보다는 우량 대 기업주식에 대해서는 直接投資를 검토함.
- 株價先物을 활용할 경우에 株式투자에 따른 위험을 축소하면서 목표수익율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株式투자의 확대가 반드시 투자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님.
- 年金기금을 투자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債券投資의 活性化〉

- 國民연금의 채권투자는 대부분 채권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거나 國公채를 매입하여 장기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채의 경우에도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하는 극히 消極的인 投資管理를 하고 있음.
 - 유통시장에 참여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채권가격의 변화를 資本所得으로 실현시키는 積極的 投資戰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채권의 적극적인 투자관리를 위해서는 이자율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며 長·短期 利子率 豫測模型을 개발하고 이를 자산운용에 활용 체제를 갖추어야 함.

〈金融部門 收益性 提高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構成〉

- 국내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을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收益-危險 特性에 비추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융자산의 선택이나 투자배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구할수 있음.
- 최근 국내금리의 불안정과 短高長低 金利構造로 인해 일반적 금융자산의 수익-위험관계를 벗어나 주어진 위험수준 하에 단기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초과수익의 기회가 존재하는 시점임.
 -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금리의 하향추세 지속이 기대되어 단기 금융상품 투자시 재투자위험이 높으므로 투자위험 감소에 주력하는 투자자산 배분이 필요함.
-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하락국면에 놓일 것이므로 고수익 편향적 투자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높은 期待收益機會를 長期的으로 現實化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가 극대화되는 2020년 까지는 현금유출 수요보다는 현금유입이 더 크기 때문에 流動性 需要가 극히 낮음. 따라서 연금기금의 長期的인 投資가 가능하며, 특히 주식투자는 장기적인 수익율이 다른 자산보다 높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투자비중의 확대를 신중히 검토함.

나. 基金運用의 專門性和 透明性 確保

〈強制預託規程의 廢止 檢討〉

- 국민연금기금은 연차적으로 막대한 기금이 조성되는 바, 기금운용 방식에 따라서 전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은 물론, 국민 경제의 자본축적, 생산성, 경제성장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금임.
- 국민연금기금의 財政資金 預託을 義務化함으로써 연금기금의 무제한적인 정부차입을 유도하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제5조 제1항을 폐지할 것을 검토함.

〈國公債의 優先買入과 ‘國民年金計定’의 新設〉

- 연금기금으로 國公債를 매입할 경우에는 원금상환의 확실성, 기금 사용처의 투명성, 자원배분의 적절성 그리고 국회의 기금운용통제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 또는 매입하는 국공채를 연금기금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한편,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의 규모상 전액 국공채 매입은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자금은 財政融資特別會計에서 國民年金計定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검토함.
 - 또한 공공부문과 금융부문간 수익률 격차를 보전하는 개선방안

을 강구하여야 함.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의 加入者 參與擴大〉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人的構成을 행정부, 이해관계자(노동자, 사용자, 농어촌 지역주민, 도시자영자) 그리고 공익대표(전문가 포함)가 균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위원의 임명 시에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추천권과 동의권을 국민연금법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基金運用의 專門性 確保를 위한 行政管理體系 및 事後評價〉

-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후평가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서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함.
 -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융부문 투자는 전문투자기관을 위촉하여 이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임.

第 4 節 都市地域 自營者 適用擴大에 따른 政策課題

- 199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본격적인 전국민연금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도시자영자의 소득과약과 보험료부과방법의 개발
 - 미적용대상자의 소득보장방안
 - 타공적연금제도와의 가입기간 연계방안

1. 都市自營者 保險料賦課方法의 開發

가. 都市 自營者의 特性

- 199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적용확대시 新規加入 對象者는 다음과 같음.
 - 協議의 自營者: 자신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5人 未滿 事業場 常時勤勞者 및 雇用主
 - 無給家族 從事者
 - 全事業場 臨時勤勞者 및 日傭勤勞者

- 협의의 자영자 뿐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및 전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취업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
-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중 70~80%가 고용주,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이며, 20~30%가 상시 및 임시·일용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表 2-20〉 5人 未滿 事業場의 從事上 地位別 人口分布

(단위: %)

종사상 지위	총사업체조사	고용구조조사
고용주	71.8	5.3
자영자		46.0
무급가족종사자		28.3
상시근로자	25.6	9.5
임시근로자	1.4	3.1
일용근로자		7.8
무급종사자	1.2	-
계	100	100

資料: 통계청, 「총사업체조사보고서」,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2

나. 所得把握의 問題點

- 신규가입대상자의 소득파악의 문제점은 事業所得者(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와 賃金勤勞者(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事業所得者の 所得把握〉

-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根據課稅의 未定着, 추계과세제도상의 문제

점, 세무조사상의 여러 문제점 등 稅務行政上의 問題點과 부가가치세제 등 稅制上의 問題點으로 인해 그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음.
- 사업소득자의 소득과액의 문제는 국민연금 추가가입대상자인 도시자영자 및 고용자의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現행의 附加價値稅制下에서는 납세자유형의 구분과 납세자별 납부세액, 그리고 제출의무서류 등이 年間賣出額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 납세자 유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그리고 소액부징수자로 구분되며 각각 매출액 1억5천만원 이상, 4,800~1억5천만원, 2,400~4,800만원 그리고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됨.

〈表 2-21〉 納稅者類型의 區分 및 納稅者別 納付稅額

납세자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소액부징수자
대 상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이상	4800~ 1억5천만원	2400~ 4800만원	2400만원 미만
납부세액	(매출액×10%) -(매입액×10%)	매출액×업종 별부가가치율 ×10%	매출액×2%	없음

- 납세자유형별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세자와 과세특례자의 경우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부가가치가 납부세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그 기준이 됨으로써 매출액 과소신고에 의한 소득의 탈루가 용이함.

〈表 2-22〉 事業所得稅 및 附加價値稅 申告人員(1995년 귀속)

(단위: 천명)

사업소득세	계	3,507
	납세인원	1,388 (39.6%)
부가가치세	계	2,527
	법인	150
	개인일반	1,104
	과세특례	405
	소액부징수자	868

□ 국민연금 추가가입대상인 자영자와 고용주의 경우 많은 부분 과세 특례자와 소액부징수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賣出額 및 所得額의 過小申告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됨.

— 자영자 및 고용주의 경우 상당부분이 도·소매업 및 숙박업 등 現金去來業種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無資料 去來에 의한 외형탈루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또한 과세특례자와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소득액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많아 課稅未達者로 분류되어 이들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지 못함.

〈賃金勤勞者の 所得把握〉

□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의 어려움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外形의 過小申告를 위하여 해당사업자의 근로자수와 소득의 규모를 과소신고하게 됨.
- 특히, 현행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고용주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부터 1/3씩 각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영세사업주의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질 유인이 없음.
 - 설사 이러한 고용주의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 누락되었던 고용근로자와 매출이 파악되어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과 소득세부담이 증대될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소득을 과소신고할 유인이 큼.
- 국내의 勞動關聯 各種統計는 주로 10인 이상 사업장 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통계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조사가 부족하여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특성과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다. 保險料 賦課方法

- 위에서 지적한 所得把握의 實態를 감안할 때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식상 所得再分配 機能에 따른 問題點을 最小化하는 방향으로 보험료부과와 급여산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보험료부과는 크게 국세청의 각종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부과하는 방법과 현재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기존조직을 이용하여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社會保險 組織을 이용한 賦課〉

□ 사회보험에서의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부과는 醫療保險組合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부과기준이 소득 이외에 財産, 自動車 및 世帶·世帶員數 등 다양하므로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원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지역조합별로 부과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국적인 기준이 없음.
- 소득기준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과세표준을 이용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소득을 추정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추정 모형이 없어 신뢰도에 한계가 있음.

〈表 2-23〉 自營者에 대한 醫療保險料 賦課基準

정액(수익자부담)	- 세대당 정액 - 세대원당 정액
능력비례	- 소득등급별 정액 (종합소득과표, 농지소득과표, 추정소득) - 재산과표 등급별 정액 - 자동차세 등급별 정액

□ 사업주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직을 확대하더라도 소득과약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보험료 부과에 따르는 행정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代案으로써, 금융조직 및 금융전산망, 국세전산망 및 주민전산망을 국민연금전산망과 연결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가입대상자의 接近性과 便宜性이 가장 높은 金融機關(은행, 보험사, 농수축협, 우체국 등)과 상호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일부 위탁함.
- 이 경우 금융기관의 역할은 국민연금 정보제공 및 가입안내, 보험료 수납과 연금급여 지급 대행으로 함.
-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위하여 收納保險料를 일정기간 預置하도록 함.
- 가입대상자의 가입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대행하는 ‘國民年金通帳’을 개설함.
- 이러한 대안은 자영자 등 가입대상자에 대한 所得把握이 前提되어야 함. 소득과약의 문제는 국세청 및 의료보험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國稅廳 組織을 이용한 賦課〉

- 각종 租稅와 社會保險 賦出金의 基準이 一貫性 있게 정의되어야 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장기적으로 세무행정의 담당 부서인 국세청을 통한 보험료 각출이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의 추가가입대상자의 정확한 소득과약은 단시간에 이루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定額 賦出을 시행하고 이들 가입자들에게 대한 소득과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된 이후에 정율각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함.

- 정올각출시 자영업자와 고용주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기준은 申告所得으로 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勤勞所得稅 年末精算資料上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
 - 보험료부과의 기준을 신고소득으로 할 경우 문제점은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정확한 소득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의 過小申告에 의한 保險料負擔의 回避가 염려된다는 것임.
 - 따라서 자영업자와 고용주에 대한 공평한 보험료부과는 사업소득자들의 소득과약을 위한 稅務行政強化와 그 맥락을 같이 하여야 함.

-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정확한 소득과약을 위해서는 根據課稅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기장의무의 강화,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조세지원,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강화, 부가가치세제 개선 등)과 함께 국세청의 각종 實查資料를 이용한 소득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세청의 제반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사업장의 외형을 파악하기 위한 추계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소득과약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함.

- 소득추계모형은 사업자의 외형을 추계하는 것 이외 納稅誠實度 評價의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고소득이 추계모형에 의한 추정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일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성실신고률 유도하고 또한 이 과정에 축적된 자료를 추계모형개량에 이용

할 수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과약도 이러한 과정에서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들에 의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료 신고자료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임.

- 임금근로자소득의 과소신고는 고용주의 외형(매출) 혹은 소득의 과소신고와 맥락을 같이 하므로 철저한 세적관리와 소득추계에 의한 세무조사강화과정에서 임금근로자의 근로실태와 소득과약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임.

□ 所得推計模型과 資料蒐集에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소득추계모형은 객관적인 타당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갖추어져야 함. 즉,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소득추계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해당업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수 있어야 함.

- 초기단계에서 세적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등록증이 자동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초기단계에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실사를 통하여 자세한 사업장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현재 지방청별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조사는 全國的으로 標準化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 면에 제약이 있음. 따라서 업종별로 표준화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조사는 납세자들의 보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

원이 직접 조사하여 항목을 기입하게 함으로써 자료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美國의 納稅者誠實度 標本調査(TCMP)와 誠實申告判別(DIF)과 같은 과학적인 조사·분석방법이 도입되어야 함.

〈表 2-24〉 5人未滿 事業場의 産業別 従事者 地位別 分布

(단위: 명, %)

산업 \ 규모	총 계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소 계	자영자	무급 종사자	소 계	상용 종사자	임시 및 일용
전 산업	3,265,825 (100)	2,381,795 (72.9)	2,343,640 (71.8)	38,155 (1.1)	884,030 (27.1)	836,738 (25.6)	47,292 (1.5)
1. 농림어업	773 (100)	76 (9.8)	-	76 (9.8)	697 (90.2)	678 (87.7)	19 (2.5)
2. 광업	2,502 (100)	1,383 (55.8)	1,372 (54.8)	11 (0.4)	1,119 (44.8)	1,075 (43.0)	44 (1.8)
3. 제조업	381,613 (100)	243,528 (63.8)	241,889 (63.4)	1,639 (0.4)	138,085 (36.2)	131,103 (34.4)	6,982 (1.8)
4. 전기가스 수도업	771 (100)	42 (5.3)	38 (4.9)	4 (0.4)	730 (94.7)	726 (94.3)	4 (0.4)
5. 건설업	66,086 (100)	36,122 (54.7)	35,724 (54.1)	398 (0.6)	29,964 (45.3)	25,988 (39.3)	3,976 (6.0)
6.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2,008,695 (100)	1,560,944 (77.7)	1,550,346 (77.2)	10,598 (0.5)	447,751 (22.3)	421,546 (21.0)	26,205 (1.3)
7. 운수창고 통신업	27,479 (100)	12,889 (46.9)	12,491 (45.6)	398 (1.3)	14,590 (53.1)	14,015 (51.0)	575 (2.1)
8.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127,654 (100)	84,538 (67.7)	81,710 (64.0)	2,828 (3.7)	43,116 (33.8)	41,211 (32.3)	1,905 (1.5)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50,252 (100)	442,274 (68.0)	420,070 (64.6)	22,204 (3.4)	380,800 (32.0)	200,396 (30.8)	7,582 (1.2)

資料: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2.

2. 未適用對象者의 所得保障方案

가. 現況 및 問題點

□ 공적연금제도로써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지속적인 제도가입을 통하여 老後生計의 維持에 필요한 年金受給權을 자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保障의 缺陷問題를 最小化 하여야 하며, 保障의 결함은 다시 인적 保障의 결함과 물질적 保障의 결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人的 保障의 缺陷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도의 미적용문제와 중도탈락문제가 있음.
- 物質的 保障의 缺陷은 급여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연금 수급권의 미확보 또는 저연금급여의 문제가 있음.

〈人的保障의 缺陷〉

□ 制度 未適用者 現況

- 1995년 현재 15세~59세의 전체인구 대비 연금가입자 비율은 23.4%(남성 34%, 여성 12.3%)로 해당 연령계층 인구의 3/4 이상이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가입자 비율 또한 37.3%에 불과하며, 성별로 구분해 볼 때 그 비율은 남성의 경우 46% 그리고 여성의 경우 24.2%로 기록되고 있음.

□ 制度의 中途脫落 現況

- 여성의 제도가입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중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연령계층별 총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A)을 살펴보면 20~24세의 경우 여성 28.9%로 남성보다 두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 이후 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55~59세 여성의 경우 동 비율은 15.7%로 남성의 1/3 수준에 불과함.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비율(B)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5세 이전까지 남성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그 이후 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5~59세 여성의 경우 28.6%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러한 제도의 미적용 그리고 중도탈락 문제는 국민연금의 도시 자영자 확대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表 2-25〉 性別·年齡別 國民年金 加入者 推移(1995)

(단위: %)

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구분	계	23.0	27.5	26.7	25.1	24.7	25.1	27.8	28.7
	A								
	남성	15.7	42.8	39.8	42.2	39.2	38.8	42.6	42.7
	여성	28.9	12.0	6.1	7.3	9.4	10.6	13.0	15.7
B	계	43.8	44.7	36.9	33.2	31.3	31.4	34.8	41.3
	남성	45.8	53.0	47.8	44.9	42.0	40.1	43.3	49.9
	여성	42.7	28.6	13.2	12.8	14.7	16.9	21.3	28.6

註: A = 연령별 가입자수/연령별 총인구수

B = 연령별 가입자수/연령별 경제활동인구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物質的 保障의 缺陷〉

□ 現世代 老人階層의 老後所得保障 缺陷

-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60세를 초과한 노인계층의 경우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월수입이 10만원 미만인 가구는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배우자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은 55.2%에 이르고 있음.

〈表 2-26〉 65歲 以上 老人家口의 月收入 規模(1994)

(단위: %)

	가구 구분		
	전체	유배우자 가구	무배우자 가구
10만원 미만	35.5	13.9	55.2
10~20만원 미만	19.9	15.6	23.7
20~40만원 미만	22.6	32.9	13.2
40만원 이상	22.0	37.6	7.9
계	100.0	100.0	100.0

資料: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障礙人 所得保障缺陷의 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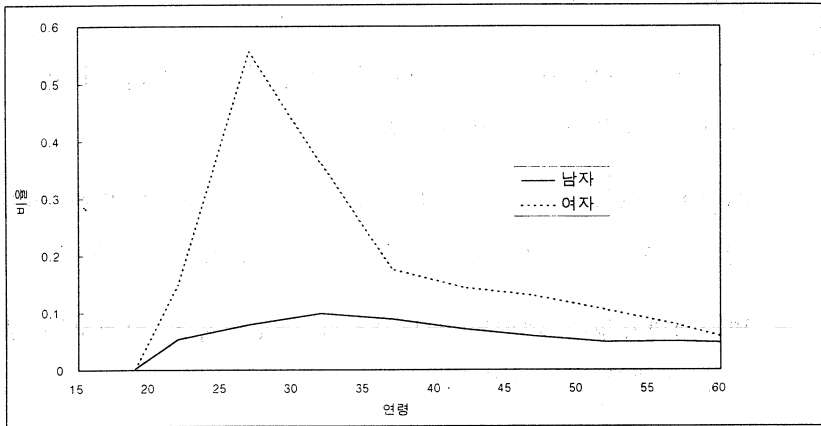
- 1995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인 1,053천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공공기관에 장애인으로 실제 등록된 인원은 362천명으로 34% 정도에 불과함.
-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91만원으로,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월 50만원 미만 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의 1/3가량에 달하고 있음.

- 장애인의 취업환경 또한 열악하여 전체 장애자의 55.6%가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생계보호비와 생계보조수당(월 4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금액면에서나 수급대상(42천명)의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

□ 返還一時金 受給에 따른 年金受給權 拋棄의 問題

- 제도가입자가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1년이 경과하게 될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적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환해 주도록 하고 있음.
- 반환일시금의 수령은 연금수급권의 포기를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는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995년 현재 전체 남성 가입자의 7.4%가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반면, 女性의 경우 그 비율은 19.9%에 달하고 있음.
- 특히 결혼적령기인 25세~29세 여성의 경우 전체 가입자 대비 반환일시금 수급자 비율은 55.6%에 이르고 있음.

[圖 2-3] 性別·年齡別 加入者 對比 返還一時金 受給者 現況, 1995年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5.

□ 離婚한 獨身女性의 老後所得保障의 缺陷

- 최근 이혼사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조이혼율은 1980년 0.6에서 1995년 1.2로 증가하였음.
- 비소득활동의 전업주부로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연금수급권의 미확보로 인하여 노후빈곤문제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높음.

□ 配偶者가 死亡한 老齡獨身女性의 老後貧困問題

- 現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과 미망인 자신의 노령연금간 병급을 제한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제도가입기간이 짧을

-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중 소득수준이 낮아 향후 연금수급액이 낮게 결정될 확률이 높음.
- 유족연금 또한 사망한 남편의 제도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의 수준에 불과함.
- 연금의 병급제한규정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한 독신 여성의 경우 노후생계유지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병급제한규정은 여성의 제도가입과 근로의욕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나아가 보험료는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병급제한규정은 違憲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음.

나. 未適用對象者의 所得保障을 위한 基本原則

基本目標

- 豫防的 次元에서 제도적용을 확대하고 제도의 중도탈락문제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자구력을 제고함.
- 事後的 次元에서 해당 위험의 발생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細部 政策目標

- 制度適用의 普遍性 제고
 - 경제활동계층으로서 제도 미가입자의 제도적용방안 강구
 - 비경제활동계층의 제도가입방안 강구

- 육아휴직, 군복무, 실업 등으로 인한 제도의 중도탈락문제 해결방안 모색
- 安定的인 老後生活 보장
 - 종전 생활수준의 보장
 - 최저생계수준의 보편적 보장
- 年金財政의 長期的 安定性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방안 모색
- 家族 連帶的 機能의 補完 및 維持
 - 가족 연대성의 증대에 기여
 - 가족내 부부간 일 역할에 대한 동등한 경제적 가치부여
- 安定的인 世代間 契約의 維持
 - 출산과 육아는 미래세대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재생산 행위로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세대간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사안임.
 - 세대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개별 가정의 사회적 기여도를 감안하여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함.

다. 未適用階層의 所得保障을 위한 政策代案

〈現世代 老人 및 障礙者의 老後所得保障 方案〉

□ 代案 I(현행방식으로 유지하는 경우)

- 저소득 노령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부조적 성격의 생

계보조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소요재원은 전액 일반재정에서 충당함.

- 생활보호수당 및 생계보조수당제도를 통합하여 해당계층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Last Safety Net)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급대상 및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 代案 II(기초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소득활동능력이 없는 현세대 노인과 장애인에게 사회최저수준의 기초연금을 보장함.
- 소요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보조를 통하여 조달하도록 함.

〈表 2-27〉 現世代 老人 및 障礙人에 대한 所得保障方案 比較

	대안 I	대안 II
수행주체	공공부조	기초연금
내용	소득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 보충적 급여지급	근로소득이 없는 전체 해당계층에게 기초생계를 보장
소요재원	전액 국가부담	보험료 및 국가보조
장점	-보험의 원칙 준수 -미적용계층의 소득지원에 따른 제도가입자의 반발 억제 -선별적·보충적 급여지급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	-기초생계의 보편적 보장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 -수혜자의 낙인효과 방지
단점	-공공부조를 통한 기초소득보장으로 수혜자의 낙인효과	-보편적 기초보장으로 재정의 낭비요인 발생 -공적연금과 공공부조간 역할분담의 모호성

〈非正規職勤勞者 및 配偶者의 制度加入率 提高 方案〉

□ 代案 I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는 경우)

-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의 제도적용 방안
 - 임시·일용직의 경우 제도의 당연가입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 계속근로에서 1개월 이상으로 하향조정 함.
 - 시간제 근로여성의 경우 최소 근로시간(일레로 주당 10~15시간)을 정하여 그 이상 근로시 당연가입 하도록 조치함.
 - 다만 최저소득등급 이하의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함.
 - 보험료는 대상자 근로소득에 정률로 부과하도록 하고 노사 반반의 부담원칙을 적용함.

- 부부협업 자영자의 배우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 활성화 방안
 -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전체 가입자 중위수 소득기준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함.
 - 일원화된 소득등급을 4~5등급으로 다원화 하여 본인의 희망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임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현재 농어촌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험요율(3%)을 적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함.

- 비소득활동계층으로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유도 방안
 - 취업중인 배우자에 의한 당사자 연금 보험료 대리납부 유도
 - 제도가입에 따른 개별 가계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험료 부과 소득등급은 4~5등급으로 다원화 하여 임의선택

기회제공

- 보험요율은 농어촌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3% 적용

□ 代案 II(기초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에 당연적용함.
-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납부하도록 하되, 필요로 할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국가가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育兒休職 女性の 制度適用 方案〉

□ 代案 I(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는 경우)

- 육아의 사회적 효용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분담 방안 강구
- 육아휴직 1년동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0% 수준에서 제도가입으로 인정
- 소요재원은 취업여성의 경우 직장 또는 공교의료보험조합과 고용보험에서 여성 가입자의 비율에 따라 공동부담하도록 하고 미취업 여성의 경우 일반재정에서 조달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매 아동당 최고 3년씩 보험료의 추후납부를 허용함.

□ 代案 II(기초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육아휴직이 끝난 뒤 소득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추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장차 모성비용의 사회화가 이루어져 출산휴가(산전·산후 휴가)에 따른 기업의 비용이 경감되면, 그 여유자본으로 기업이 육아휴직 여성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사회보험(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에서 납부하도록 함.

〈學生, 軍人, 失業者의 制度適用 方案〉

□ 代案 I(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는 경우)

- 학업기간 동안의 제도가입 공백기간은 졸업후 일정기간 내 미납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군복무기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0% 수준에서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소요재원은 행위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국가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함.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사자와 고용보험에서 절반씩 부담하도록 함.

□ 代案 II(기초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해당기간 동안 기초연금제도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허용함.

〈遺族年金과 當事者 老齡年金의 併給 許容〉

□ 代案 I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는 경우)

- 미망인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합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일정비율(일례로 50%)로 감액함.
- 완전병급이 허용되는 소득상한선은 미망인의 가족구성(피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함.

□ 代案 II (기초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유족연금과 당사자 노령연금간 병급을 현행의 규정에서와 같이 제한함.

〈離婚女性을 위한 年金分割 方案〉

□ 代案 I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는 경우)

- 基本方向

- 부부 공동으로 획득한 연금 또는 수급권을 이혼시 균분함으로써 결혼기간 중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함.
- 연금분할은 이혼 즉시 실시하여 노령, 질병, 사망 등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독자적인 대처능력을 제공함.
- 연금분할은 연금재정에 중립적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함.
- 연금분할로 인한 연금수급권의 상실분을 기여금 납부로 보충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資格: 혼인상태가 최소한의 기간(일례로 3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분할자격을 부여함.
- 分割 對象: 결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획득한 연금 또는 수급권
- 分割方法
 -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결혼기간 중 부부가 각각 가입한 경력에 따라 잠정적인 연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동등하게 분할함.
 - 분할된 잠정적인 연금액은 각각의 연금구좌에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도 재평가율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연금수급 시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조치함.
 - 결혼기간 이외의 제도가입경력은 남자 또는 여자 단독의 급여청구권을 인정함.
- 수급권 발생시점: 개별 당사자에게 수급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즉시 급여지급

□ 代案 II(기초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소득비례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의 분할권 인정.
- 수급권 발생일
 - 연금지급사유 발생 이전에 이혼한 경우 부양의무자를 가진 배우자의 연금지급사유 발생일

- 연금지급사유 발생 후 이혼한 경우 이혼일을 기준으로 분할 권을 인정함.
- 연금조정 대상자는 연금조정으로 적어진 연금수급권을 기여금 납부로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배우자연금 분할권이 사망 또는 재혼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를 가진 배우자의 연금액에 환원되도록 재조정함.

3. 他公的年金과의 加入期間 連繫方案

가. 通算制度 導入의 必要性

- 통산연금제도의 취지는 직장을 옮겨 다녔다하더라도 취업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단일 연금에 계속 가입한 경우에 상응하는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公的年金制度間 通算連繫體系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잦은 직종전환은 당사자 年金受給權의 喪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산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통산가입기간은 나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함. 주요국들이 20년 내지 25년 등으로 비교적 길게 잡고 있으나 독일은 5년으로 짧음.

나. 通算制度 導入을 위한 方案摸索

- 통산제도 도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고려될 수 있음. 세 방

식 모두 통산 대상이 되는 기간의 합계가 소정의 가입기간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은 동일함.

〈現行方式으로 維持할 境遇〉

- 첫째 방식: 수급자격을 충족시킨 가입자에게 각 연금이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함.
 - 이 때 연금지급 창구를 최종가입연금으로 일괄하는 방안과 각 연금에서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둘째 방식: 수급자격을 충족시킨 가입자에게 최종가입연금에서 연금을 지급. 물론 이전 가입한 연금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연금자산을 이관받음.
 - 이 때 지급산식에 최종연금 하나만으로 소정기간을 충족시키는 가입자와 가입기간 통산으로 소정기간을 충족시키는 가입자를 차별화하는 장치를 도입함.

〈基本들을 基礎年金方式으로 轉換할 境遇〉

- 셋째 방식: 이는 기초연금 도입시의 방안임. 수급자격을 충족시킨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은 신설되는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급. 그리고 소득비례연금은 각 연금에서 따로따로 지급하는 방안과 연금자산을 이관시켜 최종 연금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다. 代案別 評價

- 첫째 방식의 장점은 각 연금의 財政狀態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이 中立的이라는 점임.
 - 단점은 현재에 비해 절대적인 재정부담이 커지고 관리해야 할 수급자수가 늘어 사무처리비용이 늘어나는 점임.
- 둘째 방식의 장점은 관리해야 할 수급자수가 크게 늘지 않으므로 사무처리비용의 증가가 크지 않다는 점임.
 - 단점은 각 연금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이 차등화된다는 점과 현재에 비해 절대적인 재정부담이 커지는 점임.
 -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차등화된다는 것은 가입자의 이동으로 연금간 자산 이관시 많이 받는 대신 이후 연금지급시 적게 지급하는 연금은 재정적으로 이득을 보지만 반대인 경우는 손해를 본다는 것임. 또 이관해 주어야 할 轉職者의 연금 자산을 평가하는 문제가 쉽지 않음.
- 셋째 방식의 장점은 轉職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상당 부분이 통산 연금으로 확보된다는 점과 기초연금의 재원 조달을 부과방식에 의존할 경우 연금재정간의 자산 이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재정부실을 우려하는 가입자측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음.
 - 단점은 소득비례부분을 각 연금에서 지급토록 하는 경우 사무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연금 자산의 이관을 통해 최종 연금에서 지급토록 하는 경우 연금 재정간 부담 변화가 불평등해 가입자

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임.

라. 通算年金 導入 現況: 主要國의 實態

〈日本〉

□ 1961년 4월, 국민연금을 시행하면서 通算年金通則法을 제정하여 노령연금에 통산연금을 도입함. 1976년에는 법개정을 통해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에 통산연금을 도입함.

□ 법 제정의 취지는 轉職者의 年金受給權 보호가 주이고 過多 給付, 重複給付의 防止가 부라고 할 수 있음.

□ 特徵

- 통산제도 적용 대상의 각 연금 최소 가입기간 : 1년
- 가입기간 통산방식으로 연금 재정간 자산 이전을 수반하지 않음
- 각 연금에서 부분 연금을 지급
- 지불기일은 매년 6월과 12월의 2회에 걸쳐 지급
- 국민연금의 통산연금은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계산, 국민연금이외의 통산연금은 후생연금 기본연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獨逸〉

□ 통산연금 제도는 전직 패턴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즉

노무직·사무직, 광산직, 공무원·특수직 종사자, 농민 등과 같이 직군별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직군으로 옮길 경우 비대칭적인 조치가 적용됨.

□ 鑛山職 勤勞者는 전직 등에 관계없이 급여수준이 높은 광산직 연금에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음.

- 또한 농민의 경우도 전직시 농민노령부조제도에 가입을 허용하고 희망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며, 노무직·사무직으로 전직시에 가입 경력의 재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70%를 연방정부 재성에서 별도로 부담해주는 등의 우대조치가 있었음. 가입 경력 재평가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은 1995년 이후 폐지됨.

□ 特徴

- 각 연금에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通算制度를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
- 통산을 위해 기존 가입 연금에 각출한 保險料를 現在價値로 再評價하여 신규 가입 연금으로 資産을 移管하고 최종 연금에서 연금을 지급함.
- 단, 근로기간중 광산직이 포함될 경우 최종 연금과 관계없이 광산직 연금에서 연금을 지급. 이는 高所得인 鑛山職의 既得權을 인정하는 것임.
- 우리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노무직·사무직에서 다른 직종으로 옮겨간 경우, 새로 옮긴 연금에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노무직·사무직 연금에서 경력에 입

각하여 연금을 지급

〈美 國〉

-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노령·유족·장애연금인 OASDI 외에 직역연금으로 연방공무원퇴직제도, 주·지방정부 연금, 철도퇴직제도, 군인연금 등이 있으며 이들 직역연금과 OASDI 간에 통산연금 제도 (transfer circuits)가 확립되어 있음.
- 통산방식은 일본같은 가입기간 통산방식에 의한 부분연금 지급 방식이 아니고, 독일같은 年金資産 移管을 수반한 통산방식에 유사한 방식임.
- 나아가 단순 통산이 아니라 OASDI를 중심으로 部分的인 統合을 시도 하고 있음. 또 통합은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기존 가입자는 기존방식과 통합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第 3 章 國民年金制度 改善을 위한 代案摸索

第 1 節 制度改善의 主要爭點

- 국민연금제도 개선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토의되었음.
 - 國民年金의 基本構造*
 - 年金給與 및 保險料 水準
 - 1所得者1年金制度와 1人1年金制度間 選擇
 - 基礎年金과 所得比例年金間 相對的 比重
 - 所得比例年金의 確定給與方式 운영과 確定釀出方式 운영
 - 所得比例年金의 自營者 當然適用과 任意適用

* 均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통합운영하는 一元化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의 분리운영하는 二元化

〈國民年金의 基本構造〉

-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均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現行 制度 維持案(一元化)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分離·運營하는 방안(二元化)이 논의되었음.

- 급여구조의 통합 혹은 분리운영에 따라 기금운용도 통합 혹은 분리 운영됨.
- 二元化의 논거는 基礎年金(기초소득보장, 소득재분배)과 所得比例年金(강제저축)의 役割分擔으로 향후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운영의 伸縮性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음.
 - 또한 소득비례연금에 대하여는 민간의 자율적 운영방식(예, 기업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적용제외(contract out)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年金給與 및 保險料 水準〉

- 年金給與水準을 40년 가입자기준으로 평균 70%를 보장하는 현행 제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급여수준을 40~60%선으로 하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保險料率을 조정하는 대안별 選擇이 논의되었음.
- 보험료율을 최고 9%로 제한함으로써 급여수준을 조정하자는 의견과 보험료율을 9%이상 상향조정하더라도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이상은 확보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1所得者1年金制度와 1人1年金制度間 選擇〉

- 年金當然加入을 所得活動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하는 방안(1소득자1연금)과 소득활동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18~60세 전국민이 당연가입하는 방안(1인1연금)을 논의하였음.
- '1인1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구조를 二元化함으로써 基礎年金

에 대하여 적용하려는 안과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賦課方式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함축하고 있음.
- '소득자 1연금'은 所得活動에 종사하는 자의 기여에 의한 급여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기본적으로 積立方式에 가까운 재정운영 원칙을 지키려 함.

〈基礎年金과 所得比例年金間의 相對的 比重〉

□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현행 급여산식상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간 비중은 所得再分配와 자영자에 대한 所得把握 문제 양자간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검토되었음.

- 所得再分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基礎年金(균등부분)의 비중이 커야 함.
- 반면 자영자 所得把握이 부실할수록 基礎年金(균등부분)의 비중은 작아져야 함.
 - 왜냐하면 고소득 자영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져 근로자(혹은 성실신고 자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양자간 비중을 현행 4 : 3 에서 所得比例年金(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을 上向調整하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1 : 1 안과 2 : 3 안이 주로 논의되었음.

〈所得比例年金の 確定給與方式 運營과 確定釀出方式 運營〉

소득비례 연금급여를 確定給與型 혹은 確定釀出型으로 산정할 것 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確定給與方式은 보험료 불입액과 관계없이 급여액이 사전에 결정되는 방식으로써 급여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반면 장래 재정적 위험을 정부가 떠안게 됨.
- 確定釀出方式은 보험료 불입액과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재정건실성을 확보하는 반면 금리수준 변동에 따른 급여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을 가입자가 떠안게 됨.
- 동일한 보험료 불입하에 양 방식중 어느 쪽의 연금수준이 높은 지는 금리 및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임.
- 확정급여 및 확정각출방식간 선택은 年金基金運用을 공공부문에서 하느냐, 민간부문에서 하느냐의 논의와도 관련되어 있음.
 - 확정각출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민간부문에서 운용할 가능성이 높음.

〈所得比例年金の 自營者 當然適用 與否〉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시, 소득비례연금을 當然適用하는 방안과 任意適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국민연금을 이원화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은 당연적용하고, 소득비례연금에 대하여 임의적용하는 문제가 논의의 핵심임.

- 任意適用의 논거는 자영자에 대해 강제저축의 속성을 가진 소득 비례연금 가입을 정부가 의무화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의 자율적 선택(개인연금 등)에 맡겨두자는 것임.
- 當然適用의 논거는 영세자영자의 경우 가입을 강제적용시키지 않는 한 노후대비에 소홀한 자영자는 결국 정부의 부담(공공부조)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자영자의 임의적용에 있어서, 자영자 모두를 임의적용하자는 안과 농어민은 노후대비에 취약하므로 당연적용하자는 안이 제기되었음.

第 2 節 制度改善을 위한 代案別 基本模型

1. 現行制度의 維持·改善(第1案)

가. 基本方向

- 향후 국민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改善原則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福祉行政의 一貫性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확대 및 시행과정을 고려하여 복지행정 의 일관성이 가능한 유지되어야 함.

- 둘째,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대안은 國民의 受容性 및 施行可能性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함.
- 셋째, 국민연금제도는 全國民에게 普遍的으로 적용되는 연금제도가 되어야 함.
 - 직업 및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연령에 해당하면 누구나 당연적용 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편적 적용을 통해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능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연금급여의 수준은 國民의 최저생활비 및 보험료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適正水準으로 책정하되 財政安定化를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수준의 연계를 도모하되 급여수준 및 수급요건을 사회경제적인 변화추세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함.
- 다섯째, 재정운영방식은 가능한 修正積立方式을 유지하되 이에 따르는 세대간의 불균형 부담은 불가피하므로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수정적립방식의 채택은 세대간의 불균형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완전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세대간의 완전한 형평부담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세대내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영자

의 연금보험료 부과 및 조정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함.

여섯째, 公的年金과 私的年金간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연금제도 전체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해야 함.

— 국민연금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에 우선하여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함.

일곱째,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간의 연계는 加入期間의 通算(합산)에 의하여 각 연금제도에서 가입기간에 비례한 부분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제도간의 재정이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나. 改善代案

1) 適用對象

當然適用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1소득자 1연금제).

—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학생, 군인 등 무소득자는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함.

任意適用은 당연적용가입자의 배우자,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중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함.

適用除外는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3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함.

□ 協業配偶者는 임의가입대상으로 하되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율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함.

- 협업배우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들의 소득과약 문제, 전업주부와와의 관계, 유족연금과의 병금조정에 따른 가입기피 등을 고려할 때 당연적용이 곤란함.

□ 5人 未滿 事業場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적용하되, 단기적으로는 임의적용사업장제도를 존속시켜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함.

- 장기적으로 비교적 행정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함.

□ 60세 이상 노령계층에 대한 특례가입은 농어촌지역 확대적용시에 UR협정 타결 등 농어촌의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농어민에 한하여 특례가입을 허용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60세 이상 노령계층의 特例加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연령 상한을 65세까지 점차 상향조정 하여야 할 것임.

□ 전업주부, 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 등 女性の 年金受給權 확보를

위해서 이들의 가입을 當然適用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피용자의 배우자를 우선 당연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와 보험료를 피용자의 30%~50% 수준으로 하고 그 보험료 부담은 피용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함.

2) 給與構造 및 給與水準

□ 현행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에서 균등부분(A)과 소득비례부분(B)을 통합운영되 양자간 比重을 조정하고, 현행 給與水準을 하향조정하는 대안을 모색함.

- 균등부분이 소득비례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급여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과대하며 「低負擔·高給與」의 문제가 제기됨.

-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 균등부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대체로 소득비례연금의 수준보다 낮으며 일본의 경우에 기초연금이 후생연금의 약 22% 수준임.

- 따라서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동일하게 하거나 균등부분을 소득비례부분보다 적게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함.

□ 균등부분(A)과 소득비례부분(B)의 대안들을 배합하여 給與率을 기준으로 基本年金額 算定方式의 대안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음.

〈表 3-1〉 代案別 給與構造算式 및 給與水準

대안	균등부분 비율	급여산식	가입1년당 급여율 ¹⁾
A ²⁾ (30년가입, 급여율40%)	25% 37.5% 50%	$(0.1A + 0.3B) \times n/30$ $(0.15A + 0.25B) \times n/30$ $(0.2A + 0.2B) \times n/30$	1.33%
B (40년가입, 급여율45%)	27.8% 33.3% 50%	$(0.125A + 0.325B) \times n/40$ $(0.15A + 0.3B) \times n/40$ $(0.225A + 0.225B) \times n/40$	1.125%
C (40년가입, 급여율 40%)	25% 37.5% 50%	$(0.1A + 0.3B) \times n/40$ $(0.15A + 0.25B) \times n/40$ $(0.2A + 0.2B) \times n/40$	1.0%

註: 1) 급여율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생애평균소득대비 연금액 비율임.

2) 40년가입시 급여율 53.3%.

〈老齡年金 受給開始年齡의 調整〉

- 인구노령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현행 老齡年金 受給開始年齡(60세)를 유지하는 경우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을 초래하고 기대 급여 총액을 증가시키므로 재정악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노령수당, 경로연금등의 지급대상연령이 6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老齡年金의 受給開始年齡을 65세로 점차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할 경우 기존가입자중 연금수급개시 연령에 가까운 가입자는 불리하게 되므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段階的으로 上向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의 경우에 2003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거나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개월씩 연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表 3-2〉 老齡年金 受給開始年齡 調整代案(1)

(단위: 세)

연 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2023년
수급연령	61	62	63	64	65
평균수명	74.9	74.9	77.0	77.0	78.1

〈表 3-3〉 老齡年金 受給開始年齡 調整代案(2)

(단위: 세)

연 도	2000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4년
수급연령	60세4개월	61세4개월	63세	64세8개월	65세

〈返還一時金 制度의 改善〉

□ 현행 返還一時金 수급요건중 퇴직후 1년 경과자에 대한 지급규정을 폐지하고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환일시금 지급액중 퇴직후 1년 경과자에 대한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의 약 95%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후 1년 경과자에 대한 지급규정 폐지는 사실상 返還一時金制度 廢止의 효과를 갖게 됨.

□ 그러나 대부분의 반환일시금 수급예정자인 1년 경과자들이 60세 도달시까지 기다린 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므로 지급

1) 최종적으로는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는 데에 의견이 접근되었음.

사유발생일(60세도달 등)까지 장기간 대기하는 專業主婦와 他公的年金加入者 등이 문제임.

- 결혼을 이유로 자격상실후 재취업을 하지 않는 專業主婦에 대하여는 部分老齡年金을 지급하는 방안, 또는 남편의 가입기간과 전업주부의 가입기간을 合算하는 방안(이혼시는 독자적인 본인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함.
- 타공적연금제도 가입자들에 대하여는 他公的年金制度和 連繫하여 부분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함.

□ 返還一時金を 지급할 경우에도 그 지급수준을 下向調整하여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퇴직금전환금 부분을 지급하되,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과 국고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안, 또한 본인기여금 및 퇴직금전환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함.

- 연금보험료중 使用者 負擔金이나 國庫負擔分은 본인의 기여와는 관계없이 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사회공동체가 공동으로 부담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전체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준비금으로 보전함이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함.
- 반환일시금은 예외적 청산급여이므로 그 금액이 최소한이어야 할 것이며 연금수급을 위해 재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환일시금의 지급수준은 하향조정함이 바람직함.

〈特例老齡年金制度 改善〉

□ 현행 제도에서 기존의 장년층(1988년 46세 이상)에 대하여 노령연금수급을 위한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5년 이상 가입하면 特例老齡年金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함.

－ 代案 1: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특례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중 가입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 代案 2: 도시지역 확대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현행15년)을 충족할 수 없는 모든사람(예; 45세 이상)을 특례노령연금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함.

□ 都市地域 擴大適用時 기존의 특례노령연금 적용과 동일하게 도시지역 자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례적용은 가입종별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의미가 없고 노령연금 가입기간의 완화는 재정안정 저해, 보험료 납부해태, 근로동기 약화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代案 2를 채택함이 바람직함.

〈給與構造 調整시 既得權 保護〉

□ 새로운 연금급여 산정방식이 적용되기 이전에 가입한 既存의 加入期間에 대하여는 현행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의 급여액을 지급하고, 給與構造 調整 이후에 가입한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의한 급여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既存의 年金受給者(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수급자)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수준의 연금액을 종전과 같이 지급함이 바람직함.
-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한 任意繼續加入者는 이미 60세를 초과한 노령가입자로서 향후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함이 바람직하므로 현행법에 의한 연금액을 지급해야 함.

3) 財源調達

<保險料 負擔水準>

- 현행제도는 財政安定化를 위하여 단계적으로(예: 2003년 이후) 保險料率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함을 전제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행 국민연금법이 일정기간(예: 5년~10년)후 財政再計算을 하여 보험료율을 조정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후세대의 보험료부담 증가가 부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이 적정한가의 문제가 제기됨.
 - 또한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後世代는 경제 사회적인 여건의 향상과 생활관습의 변화가 생활비 부담구조의 변화(예: 부모부양 비용, 자녀학비 및 결혼비용 부담등의 감소)를 가져와 총수

입 대비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므로 현세대와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단순하게 數值的으로 比較하여 후세대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年金保險料率의 인상은 조세 및 여타 사회보험 부담율의 증가 급여 구조의 조정, 퇴직금의 연금 보험료 전환가능성, 기금의 수익률 증대방안, 국고부담(한시적 특별조세 징수)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및 장기적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함.

- 조세 및 여타 사회보험 부담율, 경제규모등을 고려한 우리의 國民負擔率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年金保險料率을 향후 장기적으로 20%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給與構造가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하향 조정될 경우에도 현행제도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취업년수, 정년, 최저생계비등을 고려할 때 가입 1년당 1%의 賃金代替率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保險料率의 조기인상이 필요하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인상하도록 되어있어 9%이상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現 時點에서 불가능하다고 봄.

-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의 조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退職金을 추가적(예1~2%)으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고 추후

企業年金 도입시 추가적인 전환비율만큼 기업연금의 노·사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검토함이 바람직함.

- 현재 國庫는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일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것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극히 미약함.
 - 재정안정화를 위한 현세대의 부담증대가 불가피하다면 한시적인 國庫負擔 增大方案(특별조세 징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既存의 老齡層(65세 이상)과 加入前 障礙人(18세 이전 장애발생)에 대하여 무각출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원을 國庫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부담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限時的 特別租稅 賦課方案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함.

〈都市地域 自營者의 保險料率 策定〉

- 도시지역 확대적용시 都市와 農漁村간에 동일한 연금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가입자의 위장전출입을 예방하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年金保險料率 인상 단계를 一元化하여 지역가입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이 바람직함.
- 또한 도시지역 보험료율의 조기 인상으로 20년 가입시 年平均 保險料率이 7.65%로 되도록 하여 농어민의 경우(6.75%)보다 0.9%포인트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함.

〈表 3-4〉 都市地域 年金保險料率 適用代案

연 도	1998~2000.6	2000.7~2005.6	2005.7
연금보험료율	3%	6%	9%

〈年金保險料의 長期的 調整裝置 導入〉

- 국민연금제도가 재정운영에서 修正積立方式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5년, 10년)마다 財政安定診斷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
- 따라서 국민연금에서도 定期的인 財政再計算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장기적으로 인상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함.

4) 公的年金과 私的年金의 關係

- 공직연금,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간의 체계적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소득의 3層 保障原理에 입각한 3자간의 연계발전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고용보험의 실시, 인구의 노령화 등을 고려할 때 退職金の 企業年金化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보장 기능이

미약하므로 인구노령화에 대비하여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 公的年金과 私的年金間의 相互補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공적연금은 기초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고 사적연금은 소득비례연금(또는 부가연금)으로 육성함이 바람직함.

- 가입자의 장애 및 사망시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장애 및 유족 연금은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도와의 연계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연금은 근로동기 고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기업의 부담능력, 가입자의 재정기여도 등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소득보장에서 양자가 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이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원에게 불입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연금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5) 國民年金과 特殊職域年金間의 關係

□ 國民年金과 特殊職域年金(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그 성격과 연금 수급요건이 매우 상이함.

- 국민연금은 순수한 연금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고 특수직역연금은 연금보험, 산재보험, 퇴직금의 성격이 혼재된 특수보험이라

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連繫는 양자간의 재정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加入期間만을 通算하는 간접연계 방식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연계에 따른 노령연금(퇴직연금) 지급은 通算加入期間이 20년 이상이고 완전노령연금 受給開始 年齡에 도달한 경우에 양자의 노령연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部分老齡年金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노령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지급을 연계할 경우에는 양자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老齡年金의 受給要件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통산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양 제도에 加入한 期間의 합이 20년 이상으로 함.
-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에서 가입한 기간이 最小限 2년 이상으로 함.
-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에서 노령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을 充足한 경우에는 통산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통산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60세이상)으로 함.

다. 改善代案別 效果分析과 改善方案 摸索

1) 所得再分配 效果

□ 均等部分(기초연금)이 전체 급여액(기초+소득비례)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表 3-5〉 均等部分 比重別 均等部分年金的 給與率¹⁾

급여산식	균등부분 점유율	급여율
현행산식	57.1%	20%
A형산식	25.0%	10%
	37.5%	15%
	50.0%	20%
B형산식	27.8%	12.5%
	33.3%	15%
	50.0%	22.5%
C형산식	25.0%	10%
	37.5%	15%
	50.0%	20%

註: 1) 평균소득자기준의 생애소득대비 연금대체율.

□ 均等部分(기초연금)의 점유율이 낮은 급여산식은 연금제도의 所得再分配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 점유율이 높은 급여산식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均等部分의 占有率을 현행보다 하향조정함이 바람직하나 과도하게 하향조정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어 저소득자의 지속적 보험료 납부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음.²⁾

2)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균등부분 대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을 3 : 5, 즉 33.5% :

〈表 3-6〉 均等部分 比重別 收益比 比較 (A型 算式 基準)

가입연수 균등부분 비중	10년 가입		20년 가입		30년 가입	
	25%	50%	25%	50%	25%	50%
소득수준						
0.5A	3.3	3.9	2.2	2.6	2.0	2.4
1.0A	2.6	2.6	1.8	1.8	1.6	1.6
2.0A	2.3	2.0	1.5	1.3	1.4	1.2
3.5A	2.1	1.7	1.4	1.1	1.3	1.1

2) 財政安定效果

- 평균소득자의 가입1년당 賃金代替率(연금급여율)을 기준으로 급여 산식별 財政展望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表 3-7〉 給與算式別 財政展望 比較(65歲 受給基準)

급여산식	가입 1년당 임금대체율	수지적자년도	2050년적립기금
현행산식	1.75%	2030년	-
A형산식	1.33%	-	600~700조원
B형산식	1.125%	-	800~900조원
C형산식	1.00%	-	1,000~1,200조원

- 또한 소득비례부분과 균등부분이 동일한 수준인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급여산식별 適正保險料率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62.5%로 조정하는 방안을 선호하였음.

〈表 3-8〉 給與算式別 適正保險料率 比較(65歲 受給基準)

급여산식	20년 가입	30년 가입	40년 가입
A형산식	12.14%	12.47%	12.36%
B형산식	10.93%	11.22%	11.13%
C형산식	9.11%	9.35%	9.27%

따라서 平均所得者의 가입 1년당 賃金代替率이 1.33% 포인트 이하인 급여산식을 선택할 경우에 2050년에 상당한 적립기금이 보존되고, 보험료율이 13%미만이므로 급여수준을 현행보다 과도하게 하향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3) 都市地域 擴大 容易性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所得把握이 농어촌지역 자영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소득 하향신고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 모두가 궁극적으로 자영자의 소득과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든 개선안이 시행초기에 어려움에 당면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다수의 所得下向申告에 대비하여 균등부분(A)의 점유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自營者와 被傭者의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A)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均等部分 점유율의 下向調整은 소득재분배효과, 개인연금과의 비교우위성, 국민의 수용성, 관리체계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등부분 점유율은 전체급여액의 30~40%수준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함.

□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所得把握이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개선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段階的인 對應方案(보험료 부과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음

- 제1단계 :

(분리산정)	{	소득자료 입수 가능자 - 소득기준 부과
		소득자료 입수 불가능자 - 지역의보 보험료의 일정률 부과(상한선 및 하한선 책정)
- 제2단계 : 소득자료 및 추정소득(개별조사)에 의한 보험료 부과(통합산정)

4) 國民의 受容性 및 施行可能性

□ 給與水準(임금대체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가입기간등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기존가입자 보호에 충실하여 개선안에 대한 國民의 受容性을 높일 수 있음.

□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개선안은 國民의 반발을 초래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특히 가입자의 각종신고율 제고, 지속적인 보험료납부를 제고, 개인연금과의 비교우위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시행초기의 소득과약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長期的인 觀點에서 개선대안을 채택함이 바람직함.

5) 個人年金과의 比較優位性 확보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이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低所得者는 부담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됨.

- 따라서 개선대안이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극도로 약화시킬 경우에 個人年金과의 차별성이 적게 되고 가입을 및 보험료 납부율을 저하시켜 제도의 조기 정착이 어려울 것임.
- 또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과의 비교우위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율 저하는 積立方式의 경우에 재정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賦課方式의 경우에 재정악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

6) 既存 老齡階層의 所得保障

- 국민연금은 1988년 및 1995년에 既存 老齡階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당시 45세이상 장년층 및 노령계층이 5년이상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였음.
 - 따라서 도시지역 확대적용시에도 45세이상의 기존 노령계층에 대하여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함이 바람직함.
- 또한 최근에 경로연금관련법률이 제정되어 65세이상의 저소득 노령자는 1998년부터 敬老年金을 지급받게 될 것임.
-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기존 노령계층에 대하여 향후 무각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존의 노령가입자 및 향후 노령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봄.

- 한편 저소득 노령자에 대한 敬老年金의 財源이 국고에서 조달되고 국민연금에 도입되는 무각출 노령연금의 재원중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경우, 國庫負擔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기존의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복지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이나 경로연금 지급대상의 체계적 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無釀出 老齡年金의 지급수준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고려한 경로연금의 지급수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경로연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함.
 -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노령계층은 본인의 부담능력에 맞게 국민연금의 特例老齡年金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에서 無釀出 老齡年金을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기존의 중고령층은 보험료 납부기피, 가입기피, 납부예외신청등을 할 우려가 있으며 무각출 노령연금과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간의 병급조정, 지급대상선정을 위한 소득조사등의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음.

7) 配偶者(女性)의 年金受給權 擴大

- 女性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로 많은 여성이 생애중 일정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결혼 등으로 인한 중도 탈퇴로 연금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返還一時金을 수령하고 있음(반환일시금 수령자의 약 30~40%가 20세~30세의 여성임).
 - 전업주부, 협업배우자등의 장해 및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나 보험료 부담방법, 배우자연금과의 병

급조정, 이혼시 연금수급권 분할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그 대책수립이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중에서 가입이 가장 용이한 대상부터 段階的으로 當然加入對象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피용자의 배우자를 우선 당연가입(의무적 가입)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급여액 및 보험료는 피용자의 37.5% 수준으로 책정하며 보험료는 피용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自營者의 配偶者, 協業配偶者 등은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확대적용이 시행된 후(2~3년후)에 추가적으로 당연적용을 하되 이들에 대한 보험료부과 기준 및 부담방법은 확대적용 이전에 검토되어야 함.

당연적용이 되지않는 여성의 경우에 기존의 본인가입 경력이 있으면 본인의 기존가입기간과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遺族年金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함.

현재 맞벌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노령연금수급 후 또는 수급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本人의 老齡年金과 配偶者의 遺族年金중 하나만을 選擇하게 됨.

- 따라서 자영자의 경우에 부부가 동일한 급여수준 및 보험료 부담 수준으로 국민연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기피할 가능성이 큼.

□ 결혼전에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결혼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離婚時 年金을 分割하는 방안도 신중이 검토되어야 함.

- 이 경우 결혼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각자의 독자적인 연금액으로 계산하고 結婚 後 加入期間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각자의 몫을 합한 후에 2등분하는 방안이 바람직 함.

2. 基礎年金과 所得比例年金 二元化(第2案)

가. 基本方向

□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低負擔·高給與」의 불균형 구조에서 급여 및 연금보험료율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 年金受給年齡은 인구의 고령화, 정년연령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상향조정

- 公的年金 積立基金 운영의 透明性 및 專門性을 제고함.

□ 도시자영자의 所得把握 문제로 인한 所得再分配의 歪曲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확대대상 도시지역 자영자수는 890만명으로 현행 국민연금 총 가입자수 730만명 보다 많아서 소득과악이 힘든 자영자의 비중이 사업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아짐.

- 199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될 경우 全國民年金이 실현될 것이나, 이에도 불구하고 既存의 老齡層 및 專業主婦 등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연금적용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基礎年金制度를 도입하여 「1人 1年金 體制」를 실현할 경우,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現老齡階層에 대하여 賦課方式의 기초연금을 통해 연금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전업주부 및 자영협업 여성을 연금에 가입시킴으로써 女性的年金受給權을 확보함.

- 직장이동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간 가입기간 통산 등 制度間 連繫方案이 필요함.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所得代替率을 비교하여 보면, 30년 가입 평균소득계층 기준으로 직역연금은 70%, 국민연금은 52.5% 수준임.
 - 또한 職域年金의 평균 급여개시연령은 軍人年金의 경우 43~45세, 公務員·私立敎員의 경우에는 52~54세로 國民年金制度(60세)보다 훨씬 빠름.
 - ※ 직역연금의 경우 1996. 1. 1일 이후 채용된 자는 60세부터 지급개시 (1996. 1 개정)

- 기초연금은 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所得比例年金은 부담이 後世代에 轉嫁되지 않도록 積立方式으로 운영하여 세대간·세대내 형평성을 제고함.

□ 統一에 對備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이 수급받고 있던 연금수급권과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의 인정 및 남한 가입자와의 형평성 유지 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한에서는 전주민에게 국가주도하의 단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북한 통합시 북한주민의 연금수급권 보호문제가 대두될 것임

나. 改善方案

1) 基本構造

□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均等部門과 所得比例部門을 分離하여 均等部門을 基礎年金化함.

- 基礎年金에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1인 1연금체제) 所得比例年金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함.

※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피용자는 강제적용하고 자영자는 부분적용 또는 임의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基礎年金은 賦課方式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所得比例年金은 完全積立方式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저축기능을 유지하도록 함.

- 基礎年金 급여를 위하여 현행 연금보험료와 별도로 基礎年金 保險料를 부과하며, 現行의 年金保險料는 所得比例年金의 保險料로 함.

- 따라서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 별도로 基礎年金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既存의 國民年金基金은 所得比例年金을 위한 기금으로 함.
- 特殊職域年金制度의 가입자에게도 현행 보험료와 별도로 基礎年金保險料를 부과하며,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재정에서 지급하고 각 職域年金給與에서는 基礎年金 支給額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함.
- 國民年金 所得比例年金 基金은 收益率 극대화를 위해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公共部門 투자 및 福祉部門 투자규모는 1997년 연말수준으로 凍結하도록 함.

2) 給與構造 및 給與水準

- 국민연금에 의한 基礎年金 및 所得比例年金 급여의 합이 長期的으로 現行 年金給與 水準의 70% 선으로 조정하도록 하되, 企業年金制度의 활성화로 부족분을 보완하도록 함.
 -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初期에는 現行 給與水準을 유지하도록 하고,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토록 함.

〈給與構造算式〉

□ 老齡年金

－ 現 行(OP): $0.2 \times (A + 0.75B) \times 0.05n + FP$

－ 改正案:

기초부분(NBOP): $0.1 \times A \times 0.5(1 + n/m)$

소득비례부분(NIOP): $0.2 \times 0.75B \times 0.05n$

□ 障害年金

－ 現 行(DP): $\{0.6 \sim 1.0\} \times OP + FP$

改正案:

기초부분(NBDP): $\{0.6 \sim 1.0\} \times NBOP$

소득비례부분(NIDP): $\{0.6 \sim 1.0\} \times NIOP$

□ 遺族年金

－ 現 行(SP): $\{0.4 \sim 0.6\} \times OP + FP$

－ 改正案:

기초부분(NBSP): $0.6 \times NBOP + NFP$

소득비례부분(NISP): $(0.4 + 0.005 \times n) \times NIOP$

NFP: 부양자녀 1인당 기초연금의 20%씩 가급함.

□ 敬老年金(ROP)

－ 新 設: $0.1 \times A \times 0.5$

〈변수〉

A :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장기적으로는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서 국민조세부담액 및 사회보험부담액을 공제한 순액기준으로의 조정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B : 가입자의 전생애 평균소득

FP : 가급연금

m : 완전기초연금 자격연수(= 수급개시연도-1988년)

n : 가입기간연수, $n/m \leq 1$

〈基礎年金〉

□ 기초연금은 最低生計保障을 원칙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되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1人 1年金制」로 실시함.

－ 기초연금 급여로는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무각출경로연금을 둠.

- 기초연금 급여는 定額으로 지급하되, 加入期間에 비례하도록 함.
- 老齡基礎年金 給與水準은 장기적으로 전가입자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0년 가입시 10% 수준으로 함.
- 부과방식 운영 및 초기가입자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함.
- 障害基礎年金 급여는 완전기초연금을 기준으로 障害等級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
- 遺族基礎年金은 완전기초연금을 기준으로 60%를 지급하되 수급자의 扶養家族數에 따라 2인까지 5%씩 가급함.

□ 最小 加入期間要件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감안하여 5년으로 함.

－ 年金受給年齡은 초기에는 현행 수준의 60세로 하되, 평균수명의 연장추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을 65세까지 조정함.

－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 연금보험료 면제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을 일괄적으로 1/3을 인정하지 않고 연금수급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基礎年金에 대한 保險料는 부과방식으로 정율과 정액을 통합하여 부과하고(매 5년마다 조정), 所得比例年金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대로 운영함.

- 기초연금 보험료는 自營者의 所得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초기에는 定率과 定額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定率保險料로 전환시켜 나감(2008년부터 완전히 定率保險料로 부과).
-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고, 자영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납부함.
- 그리고 配偶者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그 보험료를 所得있는 配偶者가 납부하도록 함(배우자의 소득은 1/2로 함).

□ 기초연금보험료는 社會保障稅의 新設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 사회보장세는 소비세 형태로 부과하는 방법과 소득세 형태로 부과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 조세형의 장점으로는,
 -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과약이 불필요하므로 행정 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간접세 방식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配偶者의 基礎年金保險料를 일반 가입자의 기초연금보험료의 50%

만 부과하고 기초연금급여도 50%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65세 이상의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전노인에게 無醵出 敬老年金을 지급함.³⁾

- 敬老年金の 給與水準은 기초연금 급여의 50%로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노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敬老年金에 필요한 財源은 현재 정부가 老齡手當 및 交通手當 등에 지불하는 비용만큼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基礎年金 財源에 의하여 지급함.

〈所得比例年金〉

所得比例年金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 소득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強制貯蓄機能을 수행하도록 함.

- 積立方式으로 운영하여 지속경제발전을 위한 장기자본축적에 기여하도록 함.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하고, 現行의 返還一時金制度는 급여지급 범위를 이민 등 특별한 사유로 限定하여 제한함.

- 老齡年金 給與水準은 40년 가입기준으로 가입자의 전생애 평균 소득의 30% 수준으로 하되, 급여의 上限線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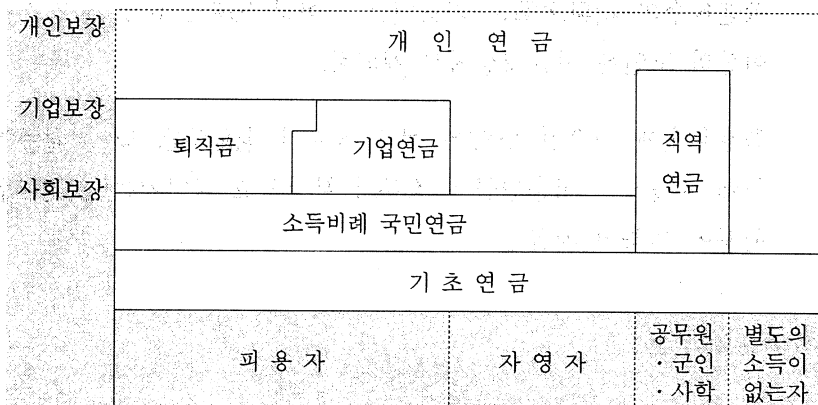
- 障害年金 給與水準은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障害等級

3) 경로연금 수준을 기초연금의 1/3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안이 제시된 바 있음.

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 遺族年金 給與水準은 노령연금 급여수준의 40%를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加入期間에 따라 가입기간당 0.5%씩 추가하여 지급함.

[圖 3-1] 新 老齡所得保障 體系



<年金受給年齡>

- 年金受給年齡(현행 60세)은 평균수명의 변화, 퇴직연령의 변화, 고령자 취업률, 연금재정수지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장기적인 高齡者 就業構造의 변화를 감안하여 연금수급연령을 55세부터 65세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연령에 따라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시점은 男女 平均壽命이 76세를 초과하는 2006년 부터 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4)

〈表 3-9〉 年金受給年齡 調整計劃

조정연도	2005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연금수급 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3) 保險料

〈保險料 調整計劃〉

$3\% + \alpha \rightarrow 6\% + \alpha \rightarrow 8\% + \alpha$ 로 5년 간격으로 변동

α = 기초연금보험료

基礎年金保險料는 9년균형 부과방식에 의하여 기준연도 전후 각각 4년간의 총급여 지출액을 산정한 후 평균한 액을 기준으로 산정함.⁵⁾

— 定額保險料 = 연평균 급여지출액 $\times \beta$ / 총가입자수

— 定率保險料 = 연평균 급여지출액 $\times (1 - \beta)$ / 가입자의소득총액

β = 정액보험료 비중

1998~2002년: $\beta = 0.5$

2003~2007년: $\beta = 0.3$

2008년 이후 : $\beta = 0.0$

- 4) 최종적으로는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음.
- 5) 대안으로써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간 보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적립보험료(2%) 징수를 통해 기금을 조성(즉 $2\% + \alpha$)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여기서 2%는 정율로 부과하고, α 는 사회보장세의 신설에 의하여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함(예: $\alpha/2$ 는 정액부과, $\alpha/2$ 는 사회보장세). 이에 따라 소득비례연금보험료는 6%로 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경우 退職金 轉換金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득비례연금 보험료율을 근로자 4%, 사용자 4%로 분담하도록 함.

〈表 3-10〉 年金保險料 調整計劃

(단위: %)

구 분		'88~'92	'93~'97	'98이후
사업장	계	3.0	6.0	8.0 + α
	근로자	1.5	2.0	3.0 + 0.5 α
	사용자	1.5	2.0	3.0 + 0.5 α
	퇴직금 전환금	-	2.0	2.0
구 분		'95~'99	2000~2004	2005이후
지역가입자		3.0 + α	6.0 + α	8.0 + α

- 현재 최고소득등급의 연금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은 최저소득등급 부과소득기준의 16.4배에 이르고 있음.

- 소득등급을 45등급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득의 상승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을 설정하고 等級基準은 廢止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최저소득: 평균소득의 1/2, 최고소득: 평균소득의 3배).

4) 關聯制度的 改善

〈公的年金制度間 連繫 強化〉

- 공무원연금 등 3개 特殊職域年金 가입자도 基礎年金에 가입하며, 현행의 보험료중 일부를 기초연금 보험료로 납입하도록 함.

- 연금수급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각 직역연금에서는 지급해야 할 급여중 기초연금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함.
- 國民年金과 기존의 職域年金과는 連繫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의 제도간 移動時 職域年金과 국민연금의 資格期間의 通算을 행하는 連結通算方式을 도입하여야 함.

〈基金運營의 改善〉

- 향후 연금기금운용에 있어 기존의 公共性 중심의 운용에서 收益性 및 安定性 측면 중심의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
 - 公的年金 改善이 국민의 고통분담을 수반하는 만큼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라도 公的年金 基金運用上의 自律性·透明性·專門性 확보는 필수적임.
 - 公的年金 基金運用 收益率이 일반시장 금리수준이 되도록 함.
- 1995년부터 雇用保險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장치로 재정비되어야 함.
 -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급여가 보장되는 企業年金 제도로 전환되어야 함.
 - 1996년말 근로기준법 퇴직금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一時金보다 年金을 선택하도록 하는 세제상의 유인장치 마련이 필요함.

〈退職金과의 關係〉

□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계획은 勞 : 使 : 退職金の 비율이 3 : 3 : 3 이나 퇴직금전환금을 현행 2%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를 소득비례 연금보험료로 흡수하여 연금보험료를 노 : 사 각각 4 : 4로 함.

— 이에 따라 현행의 퇴직금전환금(2%)에 해당하는 만큼이 노사의 연금보험료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법정퇴직금 비율을 2%만큼 하향 조정토록 함(현행 1개월치 법정 퇴직금을 급여비율로 환산한 비율인 8.3%를 6.3%로 조정).

□ 退職金の 退職年金保險化가 진행될 경우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 퇴직연금보험이 활성화되면 소득비례부분의 적용제외를 통하여 퇴직연금보험과 연결된 보다 높은 노사자율의 소득보장이 가능할 것임.

〈年金課稅體系의 再定立〉

□ 현재 공적연금제도는 각출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給與額은 전액 非課稅되고 있음. 반면 개인연금은 각출·급여단계 공히 세제혜택을 부과함.

—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 퇴직금(기업연금), 개인연금의 釀出段階의 所得控除를 통한 세제지원과 給與段階의 課稅體系로의 전환을 모색함.

- 年金所得을 과세하여 조성된 財源은 年金基金에 轉入하여 年金 재정 건전화에 기여함.

5) 經過措置

過去 債務處理 方案

- 現行 年金체계는 미래의 年金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尙當액의 負債를 이미 가지고 있음.
 - 制度의 개선으로 과거채무의 일부는 부과방식에 의하여 해결하고 일부 부채의 경우 적립방식의 소득비례부분에서 흡수하도록 함.

既 年金受給階層에 대한 受給權 保障

- 기 年金수급자의 年金급여액은 現行 급여산식에 의하여 지급토록 함.

加入者의 既得權 保護

- 2008년 年金수급자까지는 現行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그 이후는 점진적으로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급여수준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도록 함.

6) 南北韓 統合時 適用問題

- 現재 北韓에서는 全주민에게 國家 주도하의 단일年金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북한 통합시 北韓住民의 年金受給權 보호문제가 대

두될 것임.

- 남북한 통합시 북한주민이 북한정부에서 수급받고 있던 연금수급권과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의 인정 및 남한 가입자와의 衡平性 維持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釀出制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남북한 통합시 북한주민에게 노령소득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북한정부가 가지고 있던 연금지급의무를 인수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노령계층 부양, 둘째 정부예산을 기초로 한 새로운 연금제도를 통한 노령계층 부양 방안이 있으나, 모두 장기간동안 막대한 재원을 일반예산으로 조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基礎年金과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所得比例年金으로의 二元化하면, 남북한 통합초기에 북한의 전노령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취업자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다. 期待效果

1) 所得保障水準의 適正性

- 급여수준을 장기적으로 40년 가입기준 70%에서 50% 수준으로 조정(기초연금 부부 각각 10%씩, 소득비례연금 30%).⁶⁾

- 30년 가입기준으로는 기초연금 17.5%, 소득비례연금 22.5%로 40% 수준을 보장.
- 이는 첫째, ILO의 最低所得保障 기준에 부합하고,
- 둘째, 근로가구의 稅後 實質可處分所得(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공제한 소득)이 총 소득의 80%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점과 노인가구와 일반가구간의 소비지출 균등화 지수가 2 : 1 인 점을 감안할 때 노령연금 급여수준이 노인부부 기준으로 40~50% 보장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2) 財政安定化 效果

- 老齡人口 扶養費가 최고조에 달하는 2040년대 후반경에도 당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립기금이 계속 증가함.
- 年金保險料 水準을 보면 소득비례연금 8%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기초연금보험료는 1998년에 0.4%에서 2003년에는 1%, 2008년에는 1.75%, 2020년에는 3.2%, 2030년에는 4.7%로 증가하고 2040년 이후에는 6.0% 수준으로 안정되어 총보험료는 2040년대에도 14%수준을 유지함.
- 敬老年金 및 基礎年金 財政
 - 敬老年金 급여지출액은 1998년도에 6,980억원(98년 7월 실시 가정), 2000년에는 1조 6,850억원, 2010년에는 1조 7,240억원이 소요

6) 대안으로써 기초연금 부부 각각 15%씩, 소득비례연금 25%를 제안하였음. 따라서 개인기준 40%, 부부기준 55%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였음.

되나 계속 감소하여 2020년경에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전망됨.

- 基礎年金 급여지출은 1998년 4,060억원이 소요될 것이나 점차 증가하여 2030년경에는 47조원, 2050년경에는 95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政府의 役割

- 선진외국의 사례를 볼 때 경로연금급여의 경우 일반재정에 의하여 조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基礎年金의 경우에도 정부가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 政府의 財政支援은 정부의 예산, 가입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3) 世代間·世代內 所得再分配 效果

□ 基礎部分을 통하여 세대내 및 세대간 所得再分配 機能을 수행하고, 所得比例部分을 통하여 노령시 適正 老齡所得保障 수준을 달성함.

□ 所得階層別 年金給與率 變化를 보면, 2003년 수급자의 경우 급여 수준을 오히려 현행보다 높여 초기연금수급자의 소득보장도를 높이고 2008년 연금수급자의 경우 현행 급여수준과 동일하며, 2018년의 경우 현행 계획 급여수준보다 평균 10%, 2028년 수급자의 경우 평균 20% 정도로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함.

〈表 3-11〉 所得階層別 年金給與率

(단위: %)

평균 소득기준	2003 (15년 가입)		2008 (20년 가입)		2018 (30년 가입)		2028 (40년 가입)	
	현행	신제도	현행	신제도	현행	신제도	현행	신제도
	0.5배	41.3	51.3	55.0	55.0	82.5	62.5	100.0
1.0배	26.3	31.3	35.0	35.0	52.5	42.5	70.0	50.0
2.0배	18.8	21.3	25.0	25.0	37.5	32.5	50.0	40.0
3.0배	16.3	17.9	21.7	21.7	32.5	29.2	43.3	36.7

□ 현행 연금제도의 총보험료 부담 현가액 대비 총연금급여 현가액의 비율인 收益比는 2000년 연금수급자가 5.3배, 2030년 수급자가 3.0배, 2050년 수급자가 2.5배로 점차 감소하나 절대수준은 높음.

□ 制度改善案에 의한 收益比는 2000년 수급자의 경우 5.3배에서 4.5배로, 2030년 수급자의 경우 3.0배에서 1.5배로, 2050년 수급자의 경우 2.5배에서 1.0배로 조정됨.

-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2000년에는 2.4배, 2030년에는 1.5배, 2050년에는 1.2배로 유지함.

〈表 3-12〉 世代別 收益比 比較

(단위: 배)

	현행	개선안
2000	5.3	4.5 (2.4)
2010	4.0	2.6 (1.9)
2020	3.7	2.0 (1.8)
2030	3.0	1.5 (1.5)
2040	2.8	1.2 (1.4)
2050	2.5	1.0 (1.2)

註: 수익비 = 총연금급여 현가액 / 총보험료부담 현가액

()는 소득비례노령연금만의 수익비를 의미함.

□ 1人 1年金體制로의 전환으로 세대내 소득이전의 형평성 제고

〈表 3-13〉 맞벌이 夫婦와 홀벌이 夫婦間의 所得代替率 比較
(단위: %, 배, 40년 가입기준)

현행			개선안		
맞벌이(A)	홀벌이(B)	A/B	맞벌이(C)	홀벌이(D)	C/D
140	70	2.0	80	50	1.6

4) 未適用階層에 대한 擴大의 容易性

□ 현행 연금체제로 도시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現 老齡階層의 공적소득보장 문제와 專業主婦 및 協業主婦의 장애발생시 소득보장 및 노령소득보장의 空白이 발생함.

- 따라서, 제도개선안에 의하면 기존의 65세 이상 노령계층에게 敬老年金을 지급하므로써 노령계층의 소득보장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고,
- 1人 1年金體系의 전환으로 전업주부 및 협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장해기초연금 및 노령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됨.
- 도시자영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기초연금에만 가입토록 할 수 있음.

<表 3-14> 現行制度와 基礎年金과 所得比例年金의 二元化(案)

	현 행	개 정 안
○ 연금구조	단일연금구조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의 이층연금구조
○ 가입대상	사업장근로자, 자영자 (1,950만명)	기초연금: 18세이상 60세미만 모든 국민 (3,170만명) 소득비례연금: 사업장근로자, 자영자 (1,950만명)
○ 연금수급자	60세이상 인구중 50%	기초연금: 60세이상 인구 100% 소득비례연금: 60세이상 인구 50%
○ 연금보험료	3% → 6% → 9% (5년마다 조정)	기초연금: 급여지출 소요액을 기초 로 매년 보험료 산출부과 소득비례연금: 3% → 6% → 8%
○ 급여수준 (평균소득자 기준)	평균소득의 70%	기초연금: 평균소득의 10% (부부합산 20%) 소득비례연금: 전생애 평균소득의 30%
○ 급여수준 경과조치		무각출경로연금: 기초연금의 50% 2008년까지 연금수급자는 현행수준 유지 2009년이후 2028년까지 연금수급자는 점 진적으로 하향 조정
○ 노령연금 수급연령	60세	향후 65세까지 단계적 상향조정
○ 연금재정	수정적립방식	기초연금: 부과방식 소득비례연금: 적립방식
-최대적립금 (1995년가격)	2022년(542조원)	2050년(1,521조원)
-기금고갈	2036년(전국민 확대 가정)	기금고갈 없음
○ 수익비율 (2030년 연금 수급자기준)	2.72배 (최저소득계층: 7.83배)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1.32배 (최저소득계층: 3.80배)

3. 積立方式 所得比例年金(第3案)

가. 基本方向

- 급속히 진행되는 高齡化社會에 대처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설계함.
 - 財政健實性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결여되기 쉬운 社會保障的 機能을 담보하도록 함.
 - ※ 노령, 장애, 사망에 따른 소득보상방안으로써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가 최상의 정책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노령, 장애, 사망에 따른 소득보장은 政府·企業·個人(혹은 가족)間 役割을 적정하게 분담함.
 - 政府는 사업주체로서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조정 및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함.
 - 企業은 노사간 협력에 의하여 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기업 자원의 보충적 연금 계획을 설계함.
 - 個人(가족)은 스스로의 개인연금저축(혹은 보험)을 촉진하고, 삶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의 상호부양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年金制度가 소득재분배(세대내 혹은 세대간) 기능 보다는 危險再分配 기능을 갖도록 하는 대신, 公共扶助 및 서비스에 의한 所得再分配를 강화하도록 함.

- 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은 積立方式에 기초하되 確定釀出方式으로 운영함.
 - 확정각출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우리경제의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기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財政的 中立性을 견지할 수 있음.

- 자영자와 피용자간 통합/분리 운영의 선택에 있어서, 分離運營方式을 선택하여 각 직역 혹은 직종별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자영자와 피용자는 근로동기, 저축행태, 소득과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보험료 부과는 소득비례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자영자에 대해서는 정액보험료 부과를 허용함.
 - 통합운영에 의하여 급여수준을 개인별 기금적립규모에 따르되 부분적으로 소득재분배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음.

- 年金給與水準은 각 직역별로 신축성을 부여하되, 강제적인 기본급여, 기업의 보충적 급여, 개인 자율의 부가적 급여 등 3층 구조에 의하여 적정수준을 보장하도록 함.
 - 공적연금에 있어서는 現行의 釀出水準을 그대로 유지함.

- 미적용 국민, 즉 제도 도입 당시 기존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선정기준이 資產/所得調査에 기초하는

無釀出年金을 급여하는 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 賦課方式에 의하여 모든 노인에게 획일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공급행태를 왜곡시킴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자산이 많은 노인계층을 가난한 근로계층이 부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국민연금과 타공적 직역연금간 연계는 직종간 이동에 따른 가입기간 및 재정을 連繫·精算하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함.

- 공적직역연금은 단계적으로 적립방식에 기초한 확정각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統一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미리 구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

-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에 의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소득보장의 새로운 3층 보장은 國民年金-企業年金-個人(家族)의 3層 構造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함.

- 현재 제도적 상황은 국민연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 개인연금 등 3층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3층 구조의 각 제도내 및 제도간 구조적 조정이 과제가 됨.

[圖 3-2] 所得保障의 政府-企業-個人(家族)間 役割 分擔

가족	가족 상호부양		
개인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기업	기업연금/퇴직금		지역별 연금
정부	국민연금	국민연금	
	비용자	자영자	공공부문 비용자

나. 改善方案

- 國民年金制度 改編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 就業者에 대한 所得比例型 積立方式 年金제도로 개편하되, 確定釀出方式으로 운영함.
 - 기본적으로 被傭者와 自營者를 分離하고, 個人별 年金계정 (individual account)에 의하여 관리함.
 - 보험의 원칙에 충실하여 貯蓄性機能(노후대비 저축)과 保障性機能(사망, 장애에 따른 소득보장)을 동시에 갖추.

1) 適用對象

- 전취업자를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하며, 취업자 個人別 年金計定 (individual account)으로 관리함.

- 이에 따라 가입자 개인별 「國民年金通帳」을 부여함으로써 평생 관리하도록 함.
- 연금통장의 부여는 국민연금이 노후대비 저축과 장애·사망에 따른 소득보장이라는 인식을 유발할 것임.
- 被傭者와 自營者는 分離하여 운영하도록 함.
 - 지역별 혹은 직종별 운영방안도 검토함.
- 失業者에 대한 계속 가입방안을 마련함.
 - 실업급여소득을 보험료부과기준의 下限으로 정하고, 본인이 소득수준을 선택함.
 - 사용자부담 보험료(3%)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에서 우선 공제함.
 - 연금보험료의 사후 납입을 허용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 노인이나 장애인 등 未適用階層에 대해서는 租稅를 재원으로 하는 무각출연금제도에 의하여 기초적인 연금을 급여함.
- 전입주부 및 겸입주부 등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任意 加入對象으로 하되, 강력한 가입 유인을 제공하도록 함.
 - 유인방안으로는 납입기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연금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을 검토함.
 - 단, 이러한 세제혜택의 악용을 피하기 위하여 납입액의 상한을 설정함.

-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에 있어서 자영자 뿐 아니라 臨時職勤勞者에 대한 제도 적용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함.
 - 임시직근로자는 1997년 2분기 현재 전체 근로자(1,332만명)의 45.5%(606만명)이며, 근래에 증가일로에 있음.
 - 이러한 임시직근로자의 증가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절감이 진행됨에 따른 비자발적인 원인 뿐아니라,
 - 주부, 퇴직고령자, 학생의 파트타임 근무, 재택근무 등 자발적인 임시직도 증가할 전망이다.
 - 이들 臨時職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별 계정에 의한 確定釀出方式 연금이 상대적으로 시행상 장점이 클 것임. 그 이유는,
 - 첫째, 임시직근로자의 직장간 이동이 빈번하더라도 개인별 연금계정의 관리에는 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음.
 - 둘째, 가입자는 노후 저축으로 인식하고, 사업주는 노무관리적 차원에서 퇴직금 대신 지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납부 저항 혹은 소득의 과소신고(under-reporting) 경향이 1, 2안에 비하여 완화될 것임.
 - 특히 2안의 경우 부과방식 기초연금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공히 실제 소득을 낮게 신고할 가능성이 큼.

2) 保險料 賦課

- 保險料率은 現行法에 의하여 매 5년 간격으로 3-6-9% 로 인상되는 계획을 유지함.

- 최종적으로 근로자 3%, 사용자 3%, 퇴직금전환 3%.
 -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세과세표준으로 통일함.
 - 현행 소득구간별 등급제를 폐지하고, 소득기준의 상하한을 설정함(예, 상한은 피용자 평균보수의 2배, 하한은 1/4배).
 - 상·하한을 조정하되, 등급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함.
- 被傭者는 소득비례의 定率 각출로 하되, 自營者는 定額 각출이 가능하도록 함.
- 자영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정액을 각출하되, 장기적으로 소득과악율이 제고됨에 따라 자영자도 소득비례 정을 각출로 이행함.
 - 고소득 자영자, 소득과악이 가능한 집단 (협회구성 업종 등)은 업소규모 등에 따른 표준소득을 제시하는 대안도 검토함.

3) 給與水準 및 給與構造

- 給與水準은 個人別 積立基金 규모에 비례하되 기금운용수익을 합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함.
- 수급 당시의 사망율, 장애발생율을 고려하여 연금재정 전체적으로 財政中立의인 年金給與額을 계산함.
- 노령연금 수급의 最小加入期間은 5년으로 하며, 수급개시연령은 개인의 선택에 의하되 保險數理的 中立性에 근거하여 연금급여수

준을 조정함.

- 遺族年金 및 障害年金의 수급요건과 급여율(노령연금 대비)은 현행법의 기준을 따름.

〈所得再分配 構造의 導入〉

- 代案 1: 현행 급여구조를 유지하면서 基金總收益(세대내 원리 합계)을 수급자간 所得水準에 따라 배분.

- 이는 기존 가입자의 분배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시킴.

$$\text{급여액} = k(\text{RoR}) \cdot 0.2 \cdot (A + 0.75B) \cdot 0.05n$$

k : 연금수준 결정변수로써 수익율(ROR)의 함수.

A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B : 수급자 근로생애 평균임금

n : 가입년수

RoR(Rate of Return): 기금수익율

k 는 다음을 만족시킴(30년 가입, 20년 수급시).

$$\sum_{t=1}^{30} \sum_{i=1}^{30} \text{CON}_{i,t} \prod_{l=1}^i (1+r_l) = k \sum_{t=31}^{50} \sum_{i=31}^{50} 0.2(A+0.75B) \times 0.05n / \prod_l (1+r_l)$$

- A는 당해연도 전체 퇴직자 연간 평균 각출액 혹은 최저생계비의 n배, B는 퇴직자 연간 평균각출액 등으로 A와 B를 다른 변수로 대체할 수도 있음.

- 代案 2: 退職時 收益率을 差等 適用하여, 적립원리금 합계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함.

- 적립금액의 크기에 따라 순수익율을 차등 적용함.

예) t 연도, i 개인에 대한 순수익율 = $r_{i,t}(1 - \alpha_i)$

i 개인이 고액적립자인 경우, $\alpha = 0.2$

i 개인이 저액적립자인 경우, $\alpha = 0.$

- 매년 발생하는 이식수입을 연금수급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함.

□ 代案 3: 國民年金의 二元 시스템(two-tier system)의 구축

- 보험원리에 의한 적립연금(확정각출방식)과 부조원리에 의한 보충연금으로 이원화함.

보험식 적립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취업자 ○ 재원: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소득비례 정율 - 자영자: 등급별 정액 ○ 급여: 확정각출방식에 의한 연금액 계산
보충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립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층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 재원: 사회복지세¹⁾ (부가가치세에 부가) ○ 급여: 최저생계비 수준 단, 적립연금의 최저수준 미만(* 공공부조와 연계)

註: 1) 대안으로써 보험식 적립연금의 수급시에 목적세(정율 혹은 누진율 적용)를 부과하여, 목적세수입으로 재원을 조달.

- 積立年金은 소득재분배 기능(세대간, 세대내)을 배제하는 대신, 보충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 補充年金은 적립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함.
- 보충年金은 소비세로써의 사회복지세 수입을 재원으로 자산/소득조사를 거쳐 지급하므로, 소득 및 자산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낭비를 줄임.

4) 財政運營

積立方式에 의하되, 정부관리의 確定釀出方式(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운용함.

-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전환분('98년 이후 3%)에 대하여 適用除外(contract-out)를 검토함. 다만, 대규모 사업장이 적용제외되고 중소기업장만 남게 되는 逆選擇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보완되어야 함.

확정각출방식 연금의 政府管理의 必要性은 다음과 같음.

- 민간보험회사 혹은 금융권에서 운영할 경우 취업자 개인에게 강제가입을 담보할 장치의 마련이 어려우며, 감시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연금기금을 전적으로 민간에서 운용할 경우의 연금지급보장상의 위험이 발생함(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소득보장의 최종적 보루로써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정부의 공공투자 재원의 확보수단으로써도 유용함.
 - ※ 칠레의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간기금에 의한 운용

에 따라 수익을 보장과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음.

基金運用은 현행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되, 공공부문에서의 기금 차입은 政府債券의 발행에 의하도록 함.

- 이와 함께 기금운용내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정부가 장기만기의 지수화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함.

5) 稅制 支援 및 國庫補助 等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금전환분은 損金算入, 가입자 부담분은 所得控除함.

- 단, 年金受給時 소득세로 課稅함.

- 적용제외에 의한 연금기금의 이식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검토함.

연금기금운용 및 適正給與에 대하여 감독함.

- 이를 위하여 정부공인 保險計理人(actuary)이 필요함.

- 기업/개인연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年金保證公社”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역할을 수행함.

저소득층, 농어민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낮거나 없는 계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 및 면제에 따른 채원부족분을 정부는 연금기관에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함.

- 이러한 지원 계층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선별함(예, 실업자, 군복무중 사병, 대학원과정 학생, 기타 특수직종 등)

6) 公的 職域年金과의 調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공적직역연금은 職域別로 分離 운영하되, 국민연금제도간 이동시 가입자 개인의 적립기금을 이전 하도록 함.
- 공적직역연금의 경우에도 確定釀出方式에 의한 積立方式으로 단계적 전환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부담(곧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財政中立的인 제도로 이행하도록 함.
 - 공적직역연금이 결여하고 있는 장애 및 유족연금제도를 도입함.
 - 공적직역연금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직역연금의 완전적립화를 위하여 가입자와 함께 정부는 공단에 대한 각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함.

7) 補充的 企業年金 導入을 위한 檢討 課題

- 현행 퇴직금제도의 企業年金化를 임의로 하느냐 의무적으로 하느냐의 선택
 - ※ 기업연금의 의무가입의 예: 프랑스, 핀란드, 칠레, 멕시코, 스위스, 스웨덴, 호주

□ 任意加入 형태를 채택할 경우, 退職金の 年金으로의 誘引政策

- 퇴직금을 존속하는 경우와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 혜택상 차이가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가 퇴직금 재원에서 충당되고 있으므로(1993~97년간 2%, 1998년 이후 3%), 나머지 퇴직금 재원(5.3%+)으로 기업연금화 하는 방안을 강구함.
- 퇴직금전환분 3%를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하여, 퇴직금재원 전체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
- 피용자와 자영자가 1.5%씩 추가 부담하고 퇴직금전환분을 포함한 퇴직금 전부를 기업연금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함.

□ 企業年金의 財政方式에 대한 선택

- 先進國들의 경우 확정급여방식 (독일, 일본, 화란), 확정각출방식 (호주, 칠레, 싱가포르), 양자 혼용 (미국, 캐나다)을 실시하고 있으나 확정각출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確定給與方式은 기업이 전액 사외적립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에 유리함. 따라서 기업연금의 정착을 위하여는 우선 확정급여방식을 채택하도록 함.

□ 企業年金의 稅制惠澤

- 사업주의 출연금은 일정 한도내에서 기업경비로 인정함.
- 출연금의 투자수익에 대해 급여로 지급될 때까지 소득세를 유

예하는 방안 검토.

年金支給 保證保險에 대한 의무적 가입 여부

- 정부가 요청하는 국가는 독일, 일본,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온타리오주), 미국 등이 있음.

企業年金 各출금의 負擔主體는 사업주 (미, 일), 근로자 (아르헨티나, 칠레), 양자 혼합 (영국, 캐나다) 등이 있음.

其他

- 기업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규제
- 기업연금의 설립 주체는 사업주, 대기업군, 업계, 단체 등이 될 수 있음.
- 기금 관리기구 형태는 별도 전담기구(칠레), 보험회사단 (프랑스), 사업주 자체관리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등이 있음.

8) 經過措置

既存 受給者(특례노령연금, 장애 및 유족연금)에 대한 既得權을 인정하여 기존의 연금급여를 국민연금기금에서 계속 지급함.

- 단, 수급자가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산함.
- 기 연금수급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우의 소요재원 추계는 다음과 같음.
 - 1998년 신제도 시행시 당해연도 소요재원은 1,262억원(보험

료수입 대비 1.42%)이지만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40년 이후에 거의 소멸할 것임.

- 소요재원은 당해연도 기금에서 충당하고, 연차적으로 세대간에 분담하여 상환하도록 함.

□ 既存 加入者

- 기 가입자의 보험료 각출금과 이식수입을 가입자의 개인별 연금계정에 이체하는 방안을 검토함.

※ 모든 가입자는 자신의 「국민연금통장」을 부여받음.

- 既 加入期間에 대하여는 現行法에 의한 연금액을 보장하고, 새로운 加入期間에 대해서는 新制度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기 가입기간에 대해 現行법에 의한 연금액을 보장하는 경우, 세대간 이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비교적 초기의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고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들 것임.

□ 公務員, 私立敎職員, 軍人 등 公的職域 年金加入者

- 기존 연금수급자(예, 1998년 이전)의 既得權을 인정하되, 연금급여액의 인상율을 소비자물가상승율에 연동하도록 함.(현재에는 임금상승율 연동)

• 단, 일시금으로의 청산 기회를 부여함.

- 신규 연금수급자의 경우 確定釀出方式에 의한 연금액을 산정하고, 기존 산식에 의한 연금액과의 차이를 연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감.

- 격차의 축소는 수급세대간 급여액 뿐아니라 수급자 개인의 연차적 급여액을 대상으로 함.

다. 期待效果

年金負債가 완전 적립되어 있으므로 財政健實性의 확보 가능함.

- 정부는 연금재정상황에 최대한 중립적이 됨.
-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개입으로 연금정책에 대한 대상집단이 명확해지고 정부 부담을 최소화함.

經濟的 效率性 提高

- 確定釀出方式에 의한 운영으로 특히 자본시장의 육성에 기여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개인/기업에 대한 노후대비 저축 유인을 제공함.
- 근로동기 저해를 최소화함.
- 무차별한 보편적인 연금급여에 의한 낭비가 제거될 수있음.

世代間 負擔 不均衡의 防止

- 현세대 노인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함.

□ 社會保障的 機能의 持續的 維持

- 노령연금의 종신 지급과 사망·장애발생에 따른 유족 및 장애 연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정부 보조로 최소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함.

□ 未來의 不確實性에 대비한 彈力的인 運營 가능.

- 제도간, 직역간 이동시 가입자 개인계정의 이전으로 쉽게 해결 가능("portability")함.

〈表 3-15〉 積立方式 所得比例年金 改編(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방식 소득비례형 연금제도 (확정각출방식 운영) ○ 보험원칙에 충실 (저축성+보장성:일부 소득재분배가능)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취업자: 개인별 연금계정으로 관리 <li style="padding-left: 20px;">※ 개인별 국민연금통장 부여 ○ 피용자와 자영자의 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역별/직종별 관리도 검토
보험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3-6-9%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 근로자 3%, 사용자 3%, 퇴직금전환 3% ○ 피용자: 소득비례 정율 각출 ○ 자영자: 소득비례 정율 혹은 정액 각출제 선택 가능 ○ 소득의 상하한 설정 (피용자 평균보수의 2배~1/4배)
급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수준 : 개인별 적립기금 규모에 비례 ○ 최소가입기간 : 5년 ○ 수급개시연령 : 개인의 선택에 의하되 보험수리적 중립성에 근거하여 연금액 계산 ○ 노령연금은 종신 지급하고, 가입자/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승계하고, 장애발생시 장애연금 지급
재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방식에 의하되, 확정각출방식으로 운영 ○ 기금운용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되, 공공부문 차입은 정부채권의 발행에 의하도록 함.
세제, 국고보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소득세 감면 ○ 연금기금 이식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검토 ○ 연금기금운용 및 적정급여에 대한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공인 보험계리인(actuary) 필요 - 기업/개인연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연금보증공사 설립. ○ 저소득층, 농어민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낮은 계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면제에 따른 재원 보조.
공적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역별 분리 운영
연금과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각출방식에 의한 적립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表 3-16〉 國民年金制度 改善模型의 比較

	제1안	제2안	제3안
기본구조	○ 현행제도 유지· 개선	○ 기초부분 + 소득비례 부분 이원화	○ 적립방식의 소득 비례연금 (개인별 연금계정)
보험료 부과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사 업장 근로자 및 자영자(1,950만명)	○ 기초부분: 18세이상 60세미만 모든 국민 (3,170만명) ○ 소득비례부분: 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자 (1,950만명)	○ 18세이상 60세미만사 업장 근로자 및 자영자(1,950만명) ○ 지역별 분리적용 - 근로자 연금 - 자영자 연금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방식	○ 3-6-9% ○ 근로자 및 자영자 소득비례 정율	○ 기초부분: 0.4~6% ○ 소득비례부분: 3-6-8% ○ 기초부분: 정액+정율 ○ 소득비례부분: 정율	○ 3-6-9% ○ 근로자: 소득비례 정율 ○ 자영자: 정액으로 부과하되 장기적으로 정율로 이행
소득대체율 ¹⁾ 및 수급연령	○ 40~53.3% (3가지 대안 제시)	○ 기초부분: 10% (부부합산 20%) ○ 소득비례부분: 30%	○ 보험료 및 적립기금 수익율에 따라 변동
	○ 2003년부터 5년간격으로 1세씩 상향 조정(65세까지)	○ 2006년부터 5년간격으로 1세씩 상향 조정(65세까지)	○ 퇴직시 수급(수급 개시연령 선택허용)
	○ 정부재원에 의한 공적부조로 무각출 연금 지급	○ 기초연금에서 무각출경로연금 지급 (재원일부 정부지원) ○ 1인1연금(기초부분)	○ 정부재원에 의한 공적부조로 무각출 연금 지급

주: 1)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생애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임.

〈表 3-16〉 繼續

	제1안	제2안	제3안
재정운영 방식	○ 수정적립방식	○ 기초부분: 9년균형 부과방식 ¹⁾ ○ 소득비례부분: 적립방식	○ 확정각출형 적립방식
재정안정 (당년도 재정수지 적자년도)	○ 2050년 적립기금 600~1,200조	○ 소득비례부분: 재정적자 없음 (2050년 적립기금 1,521조)	○ 재정적자 없음
소득 재분배	○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있으나 대안 별로 정도의 차이 있음	○ 기초부분: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있음 ○ 소득비례부분: 없음	○ 세대간·세대내 소득 재분배 효과 없음 (세대내 재분배기능 삽입 가능)
경과조치	○ 급여수준의 점진적 하향조정	○ 기연금수급자는 현행대로 지급 ○ 2008년 이후 20년에 걸쳐 급여수준 하향조정	○ 기연금수급자는 현행대로 지급

註: 1) 보험료산정 기준연도 전후 4년간의 급여지출을 감안하여 평균보험료를 산정.

第 4 章 國民年金制度的 改善方案

第 1 節 制度改善의 基本方向

1. 向後 與件展望

□ 急速한 高齡化로 扶養比의 上昇이 豫想됨.

-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6.3%이나, 1999년에는 7%를 넘어서 高齡化社會(Aging Society)에 진입하고, 2022년경에는 14%를 넘어서 高齡社會(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15~59세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7년 현재 14.6%, 2030년에 46.0%, 2050년에는 55.6%로 전망됨.

〈表 4-1〉 人口構造의 高齡化 比率

(단위: %)

	1997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65세이상인구/ 총인구	6.3	7.1	9.9	13.2	19.3	23.5	24.6
60세이상인구/ 총인구	9.9	11.0	14.2	20.1	26.5	30.2	30.2
노인부양비율 ¹⁾	14.6	16.4	21.6	32.1	46.0	55.8	55.6

註: 1) 노인부양비율 = (60세이상 인구/15~59세 인구) × 100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 우리나라의 老齡化率이 현재는 높지 않지만, 老齡化 速度에 있어서는 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즉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表 4-2〉 65歲以上 人口 增加速度 國際比較(7%→14%)

	일본	미국	프랑스	서독	스웨덴	한국
7%	1970	1945	1865	1930	1890	2000
14%	1996	2020	1980	1975	1975	2022
소요연수	26	75	115	45	85	22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 家族內 老人 扶養機能의 弱화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소가족화 혹은 핵가족화의 가속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가족내 노인부양기능을 약화시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社會的 需要가 증가될 것임.

□ 經濟成長의 둔화와 産業 및 雇傭構造의 변화가 예상됨.

-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도성장단계를 지나 低成長時代로 진입하고 있음.
 - 고성장 시대에 연금확대기를 맞은 先進國은 급증하는 연금 급여지출의 부담을 경제내로 흡수할 수 있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시대의 진입기에 年金擴大期를 맞게

되어 연금급여지출의 증가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의 「낮은 보험료 부담·높은 연금급여」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IMF 구제금융 실시에 따라 당분간 경제성장률의 저하, 실업률의 증가, 근로자의 노동 및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예상됨.

〈表 4-3〉 經濟成長率 展望

(단위: %)

연 도	1988~96	1997	1998	1999	2000~2010	2011~2020
성장률	7.7	6.2	3.0	4.0	5.0	4.0

資料: 한국개발연구원.

- 또한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利率率의 低下가 전망되고 있음.
 -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율의 하락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 연령에 따라 定型化되는 기존의 사회적 관념, 관행 및 세도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停年의 기준이 획일화되기 보다는 직종별 혹은 지역별로 伸縮的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2. 制度改善의 目的

國民年金의 長期的 財政安定化를 摸索함.

- 연금제도가 長期的으로 健實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現行 「낮은 보험료 부담 · 높은 연금급여」 체계를 조정함.
 - 現 경제여건 및 가입자 · 기업의 負擔水準을 감안하여 연금 보험료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내에서 給與水準을 조정함.
 - 年金受給年齡도 인구의 고령화, 정년연령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조정함.

國民年金基金 運用의 收益性 · 透明性 · 專門性을 確保함

- 國民연금적립기금의 運用收益率을 제고하며, 운용과정상의 透明性과 專門性을 확보함.

事業場 勤勞者와 自營者間 衡平性을 提高함

- 도시자영자의 실소득과약 곤란에 따른 所得再分配의 歪曲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새로운 老後所得保障 體系를 構築함

- 國民연금제도의 전국민 확대를 계기로 새로운 연금체계는 國民 연금의 長期的 財政安定 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적 기능과 경제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이에 따라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를 「國民年金

「企業年金-個人貯蓄」의 3층 구조로 구축함.

[圖 4-1] 所得保障의 政府-企業-個人間 役割 分擔

개인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기업	기업연금/퇴직금		직역별 연금
정부	소득비례 연금		직역별 연금
	기초연금		
	피용자	자영자	공공부문 피용자

3. 構造改善을 위한 基本模型의 設定

□ 給與算式을 均等部分과 所得比例部分으로 分離運營함.

－ 現行 國民연금 給與算式에서 均等部分과 所得비례부분을 분리하여 均等부분은 基礎年金으로, 所得비례부분은 所得比例年金으로 하며, 給與수준의 保障을 위하여 確定給與方式으로 함.

- 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촌·도시지역 자영자 모두에게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을 當然 適用함.
- 基礎年金은 세대간 및 세대내 所得再分配 機能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에 기여함.
- 所得比例年金은 寄與에 상응하는 給與수준을 보장함.

□ 基金運營方式은 積立形을 維持하도록 함.

－ 國民연금기금은 기초연금기금과 소득비례연금기금으로 分離하여 運營하며, 基金運營방식은 國民저축의 증대와 후세대 부담

과중의 방지를 위하여 積立方式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함.

- 소득비례연금기금은 수익성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초연금기금은 수익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운영함.

※ 소수의견

-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一元體系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1소득자 1연금, 확정급여방식, 도시자영자 당연적용을 할 경우 분리운영의 실익이 없으며, 기금의 분리운영에 따른 애로와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 초래 우려.
- 女性年金權의 확충을 위하여 2010년까지 전업주부를 기초연금에 當然加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소득비례연금에 都市自營者를 任意適用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연금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소득비례 연금을 確定釀出方式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第 2 節 年金給與體系改善 및 保險料의 適正水準 設定

1. 年金給與體系의 改善

□ 年金給與水準은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役割分擔, 장기적인 年金財政에의 영향, 世代間 소득재분배의 衡平性을 고려하여 결정함.

- 연금급여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하며 각각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둠.

□ 年金給與水準의 결정문제는 政策選擇의 문제로써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老齡年金 給與水準은 40년 가입시 연금가입기간중 평균소득 대비, 최하위 20% 계층의 경우 77%, 최상위 20% 계층의 경우 31%(평균소득자의 경우 40%)로 함.

- 납세자들의 조세부담과 기타 사회보험기여금부담(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과중한 年金保險料 負擔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 사업장 가입자와 도시지역 자영자간의 所得再分配 逆進性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의 비율을 현행 4 : 3에서 2 : 3으로 조정함.
-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시 소득과악이 어려운 도시지역 자영자와 사업장 가입자간의 所得再分配의 逆進問題를 감안하여 基礎年金 給與水準을 최소한으로 제한함(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경우 기초연금 16%+소득비례연금 24%).

〈제도개선에 따른 노령연금급여산식〉

$$\text{기초연금} = 0.16 \times A \times n/40$$

$$\text{소득비례연금} = 0.24 \times B \times n/40$$

A: 수급전년도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수급자의 전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n: 연금보험료 납입연수

－ 제도개선안에 따른 신규가입자의 所得階層別 給與率(40년 가입

기준)은 <表 4-4> 와 같음.

<表 4-4> 年金改善案에 따른 所得階層別 年金給與率
(1998년 이후 가입자 기준)

(단위: 40년 가입기준, %)

소득분위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합 계
I	53.0	24.0	76.9
II	24.7	24.0	48.7
III	17.0	24.0	41.0
IV	11.7	24.0	35.7
V	7.1	24.0	31.1

- 註: 1) 소득분위는 1997년 9월말 현재 표준소득등급별(45등급) 가입자 누적분포에 기초하였음.
 2) 급여율은 전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최초노령연금급여액의 비율이며, 분위별 급여율은 표준소득등급별 급여율을 가입자분포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음.
 3) I분위: 1~15등급(22~57만원), II분위: 15~20등급(57~85만원), III분위: 20~25등급(85~121만원), IV분위: 25~31등급(121~176만원), V분위: 31~45등급(176~360만원)

□ 평균급여수준의 40%로의 하향조정은 老後所得保障 및 制度의 受容性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급여수준을 50~60%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료 수준은 장기적으로 각각 15.9% 및 19.1%까지 인상되어야 재정건정성이 확보될 수 있음
- 1998년 현재 총사회보장부담율은 평균소득의 20%에 달하고 있으며, 年金給與水準을 50~60%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表 4-5〉 年金給與水準別 保險料 負擔 比較

급여수준	40%	50%	60%
보험료 부담	12.65%	15.90%	19.10%

註: 급여수준은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생애평균소득대비 연금급여 수준임

※ 소수의견

- 現 經濟與件에 비추어 보험료 9%-평균급여대체율 40% 수준을 당
분간 유지하되, 향후 국민소득수준의 증대에 따라 給與代替率을
50%로 상향조정(보험료 인상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公積연금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기능이 지나치게 축
소되지 않도록 均等 및 所得比例部分을 1 : 1로 조정하자는 의견
이 있었음.

障害年金 급여수준은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遺族年金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수준의 40~60%를 지급함.

完전노령연금의 受給開始 基準年齡은 60세로 하되 장기적으로 평
균수명 및 노동시장여건의 변화추이에 맞추어 연장하도록 함.

〈表 4-6〉 年金受給年齡 調整計劃

조정연도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
연금수급개시 기 준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수급개시자 생 년	1952년생	1956년생	1960년생	1964년생	1968년생

- 年金最小加入年數는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 연금급여를 소비자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전함.
- 전국민 연금시대에 맞추어 현행의 返還一時金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연금의 계속가입을 제도화함.

2. 保險料의 適正水準 設定

- 현 경제여건 및 국민부담 여력 등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는 현행 법에 명시된 9% 수준을 가능한 한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保險料 調整은 <表 4-7>과 같음.
 -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기초연금 3.6%, 소득비례연금 5.4%로 합계 9%를 적용함.
 - 지역가입자(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한 보험료율은 2000년 6월까지 3%, 2005년 6월까지 6%, 그 이후는 9%를 적용함.
 - 長期的인 財政安定을 위해서는 2010년 이후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조정이 필요함.

〈表 4-7〉 保險料 調整計劃

事業場 加入者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계
근로자	1.8%	1.2%	3.0%
사용자	1.8%	1.2%	3.0%
퇴직금	-	3.0%	3.0%
계	3.6%	5.4%	9.0%
地域加入者			
1998년~2000년	1.2%	1.8%	3.0%
2000년~2005년	2.4%	3.6%	6.0%
2005년~	3.6%	5.4%	9.0%

- 經濟社會的 與件變化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매 5년마다 財政再計算 (actuarial estimates)을 실시하는 것을 법제화함.

3. 經過措置

- 既存 加入者에 대한 既得權을 保護함
-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종전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의 既得權은 완전히 보장토록 함.
 - 制度改善 以前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現行給與算式에 의한 연금급여수준을 보장하고, 制度改善 以後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給與算式에 의하여 연금급여를 산정함.
 - 1988년 제도도입 당시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급여율 변화추이는

<表 4-8>과 같음.

<表 4-8> 加入期間에 따른 所得階層別 年金給與率의 比較
(1988년 가입자 기준)

(단위: %)

소득분위	가입연수							
	15년		20년		30년		40년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I	61.0	50.3	79.1	59.9	96.1	78.3	100.0	88.8
II	34.4	29.0	45.8	35.1	68.8	47.3	91.7	59.4
III	27.2	23.2	36.2	28.3	54.3	38.6	72.4	48.8
IV	22.0	19.3	29.6	23.7	44.4	32.6	59.2	41.6
V	17.9	15.8	23.9	19.7	35.8	27.5	47.8	35.3

註: <표 4-5> 의註 참조.

- 既積立된 國民年金基金은 現行 年金급여체계의 均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간의 급여비율에 따라 기초연금기금과 소득비례연금기금에 4 : 3 비율(백분율로 57% : 43%)로 分離 運營함.

第 3 節 年金基金 運用體系의 改善

1. 國民年金基金의 透明性 및 專門性 提高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에서 公共資金 預託規模를 決定함.

- 책임준비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제한없이 公
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예탁하게 되어있는 「公共資金管理基金
法」 제5조 제1항을 국민연금기금의 收益性과 安定性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개정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재정당국의 공공자금 차입 요청액을 감안하여 공공자금 예탁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財政融資特別會計內 國民年金計定을 新設함.

－ 재정융자특별회계내에 국민연금計定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함.

-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규모 및 내역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하며,
- 매년 국회의 재정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심의·의결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운용내역도 심의하게 함.

□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의 加入者代表 參與를 擴大함.

－ 도시자영자 확대에 따라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함.

- 동 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 사용자, 자영자 등 加入者 代表의 비율이 현행(가입자대표 7명, 정부 및 공익대표 8명)보다 높아지도록 개선함.

※ 소수의견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委員을 20인으로 擴大하여 가입자대표 2/3, 정부 1/3로 하며, 保健福祉部長官을 委員長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國民年金基金運用의 專門性 提高 및 事後評價制度를 導入함.

-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委員會」의 活性化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專門性을 제고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동 위원회를 국민연금 및 자금운용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토록 하고,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의 심의·의결시 실무위원회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결과에 대한 평가는 專門的이고 中立的인 評價團을 구성하여 이에 맡김으로써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평가결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건복지부, 재정경제원뿐만 아니라 國會에 보고토록 함.

2. 國民年金基金 運用 收益率의 提高

公共部門投資에 대한 預託利率을 上向調整

-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예탁이자율을 金融部門 投資收益率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에 따른 적립기금의 손실을 막도록 함.
 - 공공부문에 예탁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이자율은 정부발행 國公債 流通收益率중 최고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금융부문 운용수익과 비교하여 공공부문 예탁이자율이 이에 못미칠 경우 추가로 利差額을 보전하도록 함.

金融部門投資의 收益率 提高를 위한 投資委託機關의 設立

- 금융부문의 경우, 투자대상별 내재가치의 지속적 관찰 및 평가

와 장·단기 이자율 예측을 위하여 퀘벡연금기금의 CAISSE (퀘벡예탁 및 투자기금)와 같은 投資委託機關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함.

- 투자위탁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純粹民間經營方式을 도입하여 자산배분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해 정부의 개입없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단이 독자적 운영을 함.
- 별도의 투자위탁기관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환경의 발전을 고려한 전문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채권시장, 국내주식시장, 해외주식시장, 외환시장, 부동산 등 分野別 專門人力으로 구성되어야 함.

- 國民年金基金은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는 流動性 需要가 낮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株式投資는 장기수익율이 높기 때문에 금융부문기금이 전문 투자기관에 위탁되는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주식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
 - 債券投資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채권형 수익증권, 국공채, 그리고 회사채를 매입하여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하는 극히 消極的인 投資管理에서 벗어나 채권가격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매매차익의 실현이 가능한 積極的 管理方式으로 전환되어야 함.

□ 福祉部門 投資는 基金運用收益의 提高를 위해 점차 縮小토록 함.

- 부족한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福祉部門 貸出利子率이 공공부문 운용수익을 보다도 낮아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第 4 節 全國民年金擴大에 따른 制度改善

1. 自營者에 대한 所得把握과 保險料賦課方法

□ 도시 자영자에 대한 保險料賦課는 다양한 就業形態와 소득과약의 不透明性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 都市地域 소득과약 대상자로 협의의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5인 미만 사업장 고용주 및 상시근로자, 전체 사업장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등이 있음.
- 사업소득자(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은 세제 및 세무행정상(근거과세의 미정착 등) 문제점으로 인해 그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특히 과세특례자와 소액부징수자가 많고, 이들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지 못함.
- 임금근로자(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주가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형(근로자수와 소득규모)을 과소 신고할 가능성이 높음.

□ 自營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가입자의 所得申告金額을 근거로 하되, 推定所得·課稅對象所得·醫療保險料 賦課基準 등을 보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자영자의 추정소득은 가입자가 신고한 업종, 종사상지위, 성별, 지역, 영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추계함.
 - 가입자의 소득 신고시 추정소득에 기초한 申告勸獎所得을

제시함.

- 가입자의 소득신고금액이 과세대상소득이나 추정소득에 비추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하고, 직권 조정에 대한 異義節次를 마련함.

□ 5인 미만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勤勞所得 課稅對象所得에 기초하여 부과함.

- 課稅資料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5~9인사업장의 평균근로소득을 근거로 사업장규모, 업종(직업), 근속연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함.

- 특히 이들 계층(1996년말 현재 162만명)은 勤勞基準法의 적용 확대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추진함.

□ 臨時職勤勞者의 경우 僱傭契約에 근거하여 소득을 추정하며, 고용계약이 불명확한 경우 유사업종 상용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써 소득을 추정함.

- 日傭職의 경우 日傭職勤勞者 賃金調査資料(건설협회 조사)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함.

-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

2. 未適用階層의 所得保障

□ 現世代 老人階層에 대한 所得保障 方案을 마련함.

- 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확대과정에서 당시 미적용된 노인중 저

소득계층에게는 일반재정에 의한 公共扶助의 성격의 敬老年金을 지급함.

- 敬老年金의 수준은 연금가입자(특히 특례노령연금가입자)와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줄여나가도록 함.

任意加入制度를 活性化함.

— 女性年金權 확보를 위하여 전업주부 및 부부협업 자영자의 배우자에 대한 任意加入制度를 활성화함.

- 임의가입을 장려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함.
- 이 경우 基礎年金만 가입하거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과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選擇權을 부여함.
- 임의가입하는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는 配偶者 適用所得을 기준으로 함.

離婚女性을 위한 年金分割制度를 導入함.

— 離婚時 부부공동으로 획득한 연금 또는 수급권을 균분함으로써 결혼기간중 夫婦間 役割分擔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함.

- 婚姻狀態가 최소한의 기간(일례로 5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분할자격을 부여함.
-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결혼기간중 부부 각자의 가입경력을 年金算定公式에 따라 잠정적인 연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동등하게 분할함.

- 분할된 잠정적인 연금액은 각각의 연금구좌에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도 再評價率을 적용하여 實質價値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 연금은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혼인기간 이외의 가입경력과 잠정적인 연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育兒休職女性의 保險料 納入便宜를 增進함

- 育兒休職女性의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事前 또는 事後 納付를 허용함으로써 연금가입기간의 단절을 예방함.

遺族年金과 當事者 老齡年金의 併給을 許容함

- 所得比例年金의 경우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併給하도록 하되 그 병급 합산액이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超過分에 대하여는 遺族年金을 일정비율(일례로 50%)로 減額함.
 - 기초연금의 경우 유족연금과 본인의 기초노령연금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

3. 他公的年金制度와의 加入期間 連繫

타공적연금제도와와의 加入期間 連繫制度를 도입하여 직역간 이동시에도 연금수급권이 계속 확보되도록 함.

- 이 때 通算制度의 구축에 따른 財政效果가 中立的이 되도록 하고, 통산에 따른 별도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개별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따라 별도로 年金給與額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개별 연금제도에 일정기간(예: 3년)이상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수급자 개인별로 預金通帳을 만들고 각 개별연금제도에서 가입기간에 상응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함.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管理運營體系를 연계시켜 가입자 관리자료 등 電算情報 共有體制를 구축하고, 保險料告知 및 徵收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함.

第 5 節 制度改善에 따른 財政展望

국민연금 제도개선으로 年金財政 改善效果는 <表 4-9> 및 <表 4-10>과 같음.

- 기초연금의 경우 적립기금이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함(最大積立基金: 289조원). 그러나 당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2031년부터 발생되고 2050년에 積立基金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圖 4-2 참조).
-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적립기금이 2033까지 계속 증가함(最大積立基金: 553조원). 당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2034년부터 발생되고 2058년경에 積立基金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圖 4-3 참조).

현재의 인구통계변수 및 경제변수에 대한 가정(參考 3)하에서 기초연금 보험료 3.6%, 소득비례연금 보험료 5.4%로는 지속적 재정

안정화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인상조정이 필요할 것임.

□ 保険料率을 <表 4-11> 과 같이 장기적으로 조정하였을 경우 재정 전망은 <表 4-12> 및 <表 4-13> 와 같음.

- 2050년의 積立基金規模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각각 당해연도 급여지출의 8.3배 및 10.7배가 되며 이 적립율 수준은 2080년까지 유지됨으로써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이 확보됨.
- 장기적인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하여 財政健全性을 유지하면서 平均給與率을 50%와 60%를 보장할 경우의 보험료율 및 재정 전망은 [參考 6] 에 제시되어 있음.

<表 4-9> 基礎年金의 財政收支(보험료율 9% 제한)

(단위: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 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배)
1998	192,992	50,829	3,824	47,005	14,333	240	1.7	50.5
2000	307,870	69,157	7,764	61,393	14,786	441	3.0	39.7
2005	680,997	109,636	22,026	87,610	16,019	1,233	7.7	30.9
2010	1,180,106	153,382	45,599	107,783	16,873	2,257	13.4	25.9
2015	1,734,832	196,182	80,998	115,184	17,741	3,188	18.0	21.4
2020	2,294,976	248,431	141,333	107,098	18,353	4,368	23.8	16.2
2030	2,889,950	346,051	338,779	7,272	18,632	6,588	35.4	8.5
2031	2,887,964	354,542	356,527	-1,985	18,543	6,729	36.3	8.1
2040	2,067,217	414,859	568,628	-153,769	17,682	7,708	43.6	3.6
2050	-168,844	445,977	727,203	-281,227	16,768	7,396	44.1	-0.2
2060	-2,930,659	559,040	845,100	-286,060	15,808	6,442	40.8	-3.5
2070	-6,085,414	693,401	1,032,938	-339,536	14,496	5,980	41.3	-5.9
2080	-9,841,137	872,273	1,274,214	-401,941	13,522	5,563	41.1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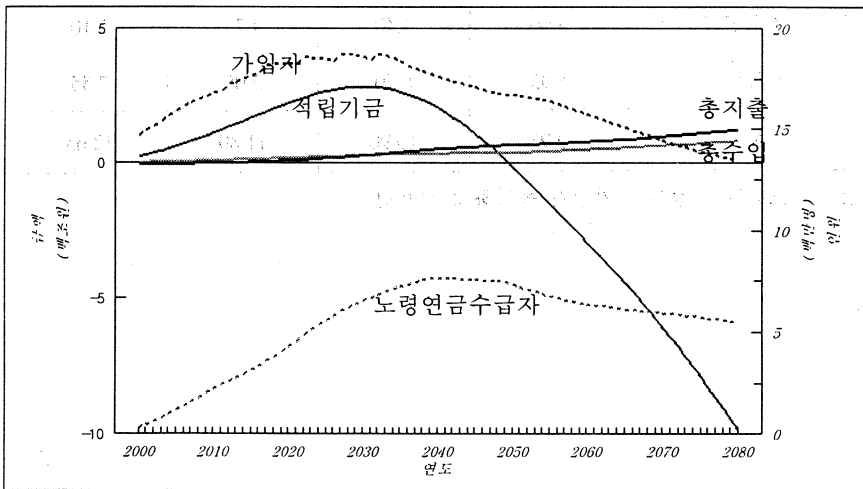
註: 부양율은 노령수급자수/가입자수, 적립율은 적립기금/총지출.

〈表 4-10〉 所得比例年金的 財政收支(보험료율 9% 제한)
(단위: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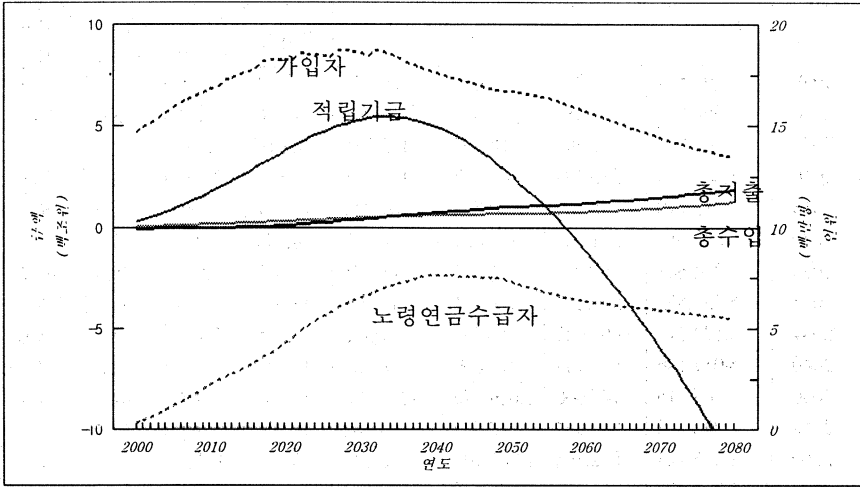
연 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배)
1998	193,534	68,943	2,658	66,285	14,333	240	1.7	72.8
2000	364,634	98,582	5,519	93,063	14,786	441	3.0	66.1
2005	961,074	162,283	18,897	143,386	16,019	1,233	7.7	50.9
2010	1,802,704	230,393	45,577	184,816	16,873	2,257	13.4	39.6
2015	2,785,810	298,262	90,518	207,744	17,741	3,188	18.0	30.8
2020	3,840,059	381,984	173,069	208,915	18,353	4,368	23.8	22.2
2030	5,374,648	544,948	456,473	88,475	18,632	6,588	35.4	11.8
2033	5,530,652	593,820	579,721	14,099	18,695	7,048	37.7	9.5
2034	5,522,772	606,022	613,902	-7,880	18,565	7,181	38.7	9.0
2040	5,017,146	671,744	810,609	-138,865	17,682	7,708	43.6	6.2
2050	2,605,516	747,600	1,069,676	-322,076	16,768	7,396	44.1	2.4
2058	-280,923	803,954	1,212,596	-408,642	16,078	6,578	40.9	-0.2
2060	-1,125,124	838,560	1,265,191	-426,631	15,808	6,442	40.8	-0.9
2070	-5,902,650	1,040,102	1,558,146	-518,045	14,496	5,980	41.3	-3.8
2080	-11,643,621	1,308,410	1,921,280	-612,870	13,522	5,563	41.1	-6.1

註: 〈表 4-9〉 주와 동일.

〔圖 4-2〕 基礎年金 財政展望(보험료율 9% 제한)



[圖 4-3] 所得比例年金 財政展望(보험료율 9% 제한)



<表 4-11> 保險料率 調整計劃

(단위: %)

조정연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기초연금	4.00	4.40	4.75	5.10
소득비례	5.95	6.50	7.05	7.55
합계	9.95	10.90	11.80	12.65

註: 1) 보험료 조정은 전가입자 동일하게 적용됨.

〈表 4-12〉 基礎年金의 財政收支(보험료율 단계적 조정)

(단위: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배)
1998	192,992	50,829	3,824	47,005	14,333	240	1.7	50.5
2000	307,870	69,157	7,764	61,393	14,786	441	3.0	39.7
2005	680,997	109,636	22,026	87,610	16,019	1,233	7.7	30.9
2010	1,193,526	166,804	45,600	121,203	16,873	2,257	13.4	26.2
2015	1,848,174	232,289	81,285	151,005	17,741	3,188	18.0	22.7
2020	2,645,013	316,764	142,018	174,746	18,353	4,368	23.8	18.6
2030	4,320,651	492,718	340,731	151,987	18,632	6,588	35.4	12.7
2040	5,394,961	646,882	571,328	75,554	17,682	7,708	43.6	9.4
2050	6,044,204	793,531	730,208	63,323	16,768	7,396	44.1	8.3
2060	7,112,502	980,848	849,250	131,598	15,808	6,442	40.8	8.4
2070	8,635,020	1,211,275	1,038,168	173,106	14,496	5,980	41.3	8.3
2080	10,671,671	1,518,083	1,280,641	237,442	13,522	5,563	41.1	8.3

註: 〈表 4-9〉 주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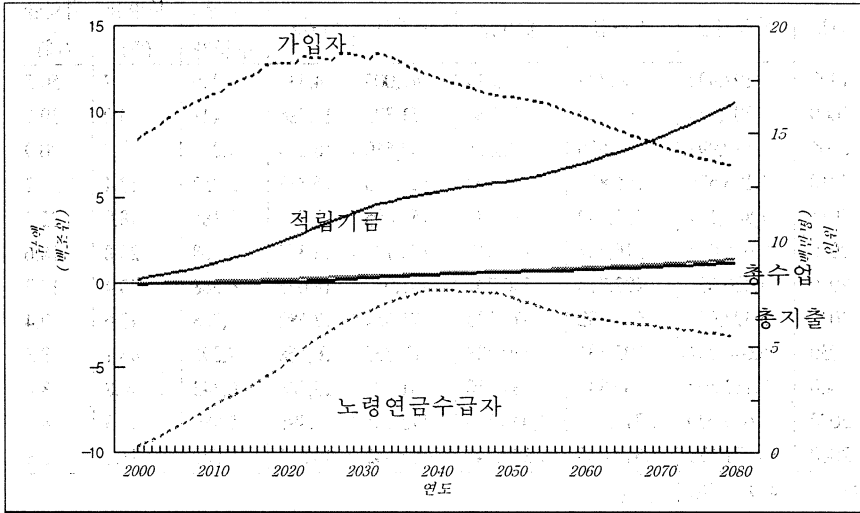
〈表 4-13〉 所得比例年金의 財政收支(보험료율 단계적 조정)

(단위: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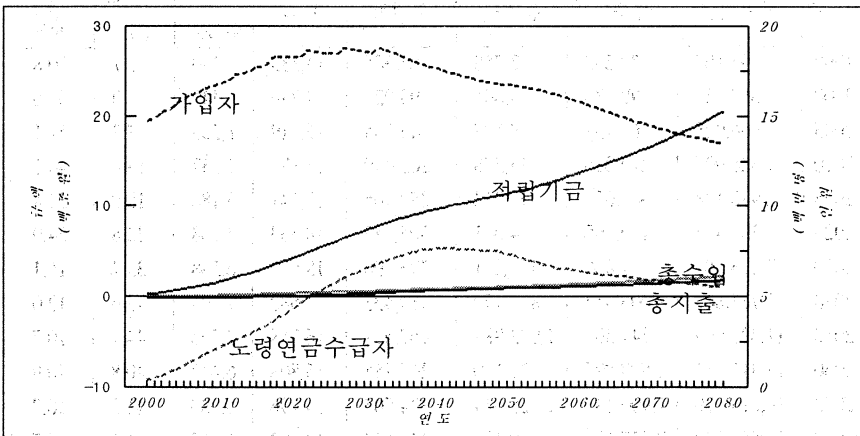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배)
1998	195,108	70,262	2,758	67,505	14,333	240	1.7	70.8
2000	369,227	98,834	5,805	93,029	14,786	441	3.0	63.6
2005	966,028	162,432	18,897	143,535	16,019	1,233	7.7	51.1
2010	1,826,907	249,018	45,578	203,440	16,873	2,257	13.4	40.1
2015	2,948,198	348,077	90,912	257,165	17,741	3,188	18.0	32.4
2020	4,332,453	479,768	174,011	305,757	18,353	4,368	23.8	24.9
2030	7,413,786	754,869	459,271	295,598	18,632	6,588	35.4	16.1
2040	9,771,844	1,003,914	814,479	189,435	17,682	7,708	43.6	12.0
2050	11,487,609	1,241,503	1,073,983	167,521	16,768	7,396	44.1	10.7
2060	13,811,652	1,538,895	1,271,139	267,755	15,808	6,442	40.8	10.9
2070	16,815,470	1,900,147	1,565,644	334,503	14,496	5,980	41.3	10.7
2080	20,689,840	2,377,135	1,930,491	446,644	13,522	5,563	41.1	10.7

註: 〈表 4-9〉 주와 동일.

[圖 4-4] 基礎年金 財政展望(보험료율 단계적 조정)



[圖 4-5] 所得比例年金 財政展望(보험료율 단계적 조정)



[參考 1] 外國의 基金運用事例

□ 日本의 경우 국민연금·후생연금의 적립금은 大將省의 자금운용부에 위탁하게 됨.

— 연금적립금은 年金資金과 還元融資資金으로 분류되어 여타의 정부자금과 구분하여 운영되고있음.

— 연금적립금(1993년 조성분)의 부문별 배분은 공공부문에 32.8%, 금융부문에 31.8%, 복지부문에 25.9%, 기타(기타 정부관계기관)에 9.5%로 구성되어 있음.

— 대장성의 위탁금리는 國債利率에 따라 정해지고 있음(과거에는 시장이자율 적용).

□ 美國의 경우 가입자로부터 징수된 기여금은 財務部의 OASDI 信託基金(Trust Fund)計定으로 이전됨.

— 당해연도의 급여지급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불준비금을 남겨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CI(Certificate of Indebtness)라는 재무부의 利子支給債務證書를 발행해 줌.

— 다음해에 재무부는 CI를 인수하고 그 금액에 대해 1년에서 15년의 상환기간을 갖는 特別公債(SI)를 발행해 줌.

— 이 국채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지만 연금급여 지급의 필요성 때문에 SI를 처분해야 할 경우 재무부가 額面價대로 SI를 인수하도록 되어있음.

— SI에 대한 이자율은 연방정부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공채의

市場平均利率을 적용 하도록 되어있음.

- 재무부에서 SI를 발행해 주고 인수한 OASDI 기금은 일반예산의 세입으로 분류되어 여타 세입원과 구별없이 일반예산의 세출계획에 따라 사용됨.

□ Canada의 경우 캐나다연금기금(CPP), 퀘벡연금기금(QPP)으로 분리되어 있음.

- 캐나다연금기금(CPP)은 기여금이 일단 중앙정부에 입금되며, 입금된 기여금은 각 주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대출해줌.
- 연방정부의 재무부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20년 만기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기금을 배분함. 각 주에 분배되고 남은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발행 20년 만기 채권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음.
- 기금을 차용할 때 지불하는 이자율은 연방정부가 공개시장에서 起債할때의 이자율과 같도록 되어있음.
- 퀘벡연금기금(QPP)의 경우 퀘벡연금위원회(QPB) 자체에서는 일체기금을 보유하지 않고 기여금 전액을 專門投資機關에 委託管理하고 있음. 전문투자기관은 기금운용에 있어 민간투자기관과 거의 같은 투자방법을 택하고 있음.
- 수익성 위주의 기금운용 결과 QPP는 CPP에 비해 매우 건전한 연금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급여면에 있어서도 CPP보다 다소 유리하게 되어있음.

- Sweden의 AP기금의 경우 기금이 利潤保障市場, 民間投資市場, 그리고 基金財產投資의 3개 투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음.
 - 실제로 누적적립기금은 거의 국가재정적자를 보완하는 측면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체 기금누적액의 약 90% 수준이고 투자내용은 국공채, 지방정부채 및 산업채임.
 - 기업대부 또는 주식투자에 운용되는 민간시장부문과 기금재산 투자는 전체 기금의 10%까지로 제한 되어 있음.
 - 기금투자의 대부분이 국·공채 등에 투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익률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1992년 공채수익율 14%).

[參考 2] 確定釀出方式과 確定給與方式의 比較

□ 確定釀出方式(Defined Contribution Plan)

- 概念: 보험료의 수준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이에 따른 기금의 실제 運用收益率(적립식의 경우)에 맞추어 각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방식
- 長點
 - 기금의 실제 운영결과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므로, 年金財政의 불균형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완전적립식 유지 가능).
 - 보험료율을 고정시킴으로써 각 가입자의 保險料 負擔을 일정하게 유지 가능.
- 短點
 -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이자율 변동에 따라 給與水準이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음(시장이자율이 높은 초기세대가 후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 각 가입자별 收支相等原則(민간보험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세대간 또는 계층간 所得移轉이 용이하지 않음.
 -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급여수준의 추가적 하락으로 加入者들이 被害를 입게 됨.

□ 確定給與方式(Defined Benefit Plan)

- 概念: 급여산식에 의해 수급요건별 연금급여수준을 정해 놓고, 이에 맞추어 必要保險料率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
- 長點
 - 연금급여를 사전에 확정시킴으로써 社會保障的 次元에서 일정한 급여수준을 가입자에게 보장해 줄 수 있음.
 - 장기적 시장이자율 변화에 따른 세대간 급여의 격차를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세대간 이전 도모).
- 短點
 - 보험료와 급여수준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財政不安定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장기적 재정재계산 필요).
 -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세대간 보험료 부담수준이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음.

[參考 3] 國民年金 財政推計 主要 適用變數

□ 人口展望

- 出生率 및 平均壽命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합계출산율(명)	1.74	1.71	1.71	1.74	1.80	1.80	1.80	1.80
평균수명(세) 계	73.52	74.85	76.10	76.99	77.48	78.08	78.54	78.95
남자	69.55	71.02	72.27	73.27	73.87	74.47	74.97	75.42
여자	77.42	78.64	79.74	80.69	81.19	81.68	82.09	82.45

- 年齡構造別 人口 및 扶養比

연도	인 구 (명)				구 성 비(%)			부 양 비(%)		
	합 계	0-14	15-64	65+	0-14	15-64	65+	유년	노년	계
1995	45,092,991	10,536,828	31,899,511	2,656,652	23.4	70.7	5.9	33.0	8.3	41.4
2000	47,274,543	10,232,813	33,671,162	3,370,568	21.6	71.2	7.1	30.4	10.0	40.4
2010	50,617,752	10,079,949	35,505,657	5,032,146	19.9	70.1	9.9	28.4	14.2	42.6
2020	52,358,327	9,012,864	36,446,194	6,899,269	17.2	69.6	13.2	24.7	18.9	43.7
2030	52,743,608	8,448,465	34,130,311	10,164,832	16.0	64.7	19.3	24.8	29.8	54.5
2040	51,411,522	8,122,585	31,181,812	12,107,125	15.8	60.7	23.5	26.0	38.8	64.9
2050	48,507,904	7,492,597	29,087,867	11,927,440	15.4	60.0	24.6	25.8	41.0	66.8
2060	45,322,564	7,037,715	27,523,271	10,761,578	15.5	60.7	23.7	25.6	39.1	64.7
2070	42,457,156	6,696,084	25,452,491	10,308,581	15.8	59.9	24.3	26.3	40.5	66.8
2080	39,700,765	6,215,597	23,888,501	9,596,667	15.7	60.2	24.2	26.0	40.2	66.2

□ 經濟變數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04	2005-10	2011-20	2021-30	2031-80
물가상승율	5.0	5.0	4.0	4.0	4.0	4.0	3.5	3.0	2.5
임금상승율	9.0	8.0	9.0	9.5	9.5	8.0	7.0	6.0	5.5
	(4.0)	(3.0)	(5.0)	(5.5)	(5.5)	(4.0)	(3.5)	(3.0)	(3.0)
이 자 율	12.0	14.0	12.0	10.0	9.0	7.5	6.5	6.0	5.5
	(7.0)	(9.0)	(8.0)	(6.0)	(5.0)	(3.5)	(3.0)	(3.0)	(3.0)

註: ()안은 실질

□ 所得關聯 變數

－ 地域加入者の 所得

- 사업장가입자: 임금상승율에 따라 증가
- 농어촌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42.25%
- 도시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80%

－ 年齡別 所得分布

-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소득분포
- 농어촌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분포
- 도시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자영자의 소득분포

基金投資

一 投資配分比率

구분	1997-1998	1999-2010	2011-2020	2020-2030	2030-2040	2040-2080
공공부문	55%	40%	30%	30%	30%	30%
금융부문	40%	55%	65%	65%	65%	65%
복지부문	5%	5%	5%	5%	5%	5%

一 投資收益率

- 공공부문 : 금융부문의 90%
- 복지부문 : 금융부문의 80%

徵收率

- 사업장 98%, 농어촌지역 70%, 도시지역 : 60%

保險料率

구분	보험료율		
	3%	6%	9%
사업장	1998 - 1992	1993 - 1997	1998 -
농어촌지역	1995 - 1999	2000 - 2004	2005 -
도시지역	1998 - 1999	2000 - 2004	2005 -

[參考 4] 國民年金 財政展望: 平均給與率 50~60%

I. 國民年金 財政展望(1): 平均給與率 50%

〈基礎年金〉

	기본구조		보험료조정(%)				
	급여산식	평균 급여율	기 준 보험료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기초연금	$0.20 \times A \times \eta / 40$	50%	3.6	4.30	5.00	5.70	6.40
소득비례	$0.30 \times B \times \eta / 40$		5.4	6.50	7.50	8.50	9.50
합계			9.0	10.80	12.50	14.20	15.90

註: 보험료 조정은 전가입자 동일하게 적용함.

(단위 :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1998	192,527	50,813	4,077	46,737	14,333	240	1.7	47.2
2000	306,340	69,108	8,329	60,779	14,786	441	3.0	36.8
2005	672,218	109,433	24,006	85,427	16,019	1,233	7.7	28.0
2010	1,173,304	176,128	50,919	125,210	16,873	2,257	13.4	23.0
2015	1,853,014	257,574	92,751	164,823	17,741	3,188	18.0	20.0
2020	2,729,734	368,461	164,643	203,818	18,353	4,368	23.8	16.6
2025	3,744,960	498,498	272,643	225,855	18,522	5,655	30.5	13.7
2030	4,792,103	601,302	404,750	196,552	18,632	6,588	35.4	11.8
2035	5,639,397	703,892	560,927	142,965	18,427	7,304	39.6	10.1
2040	6,227,418	796,871	692,781	104,090	17,682	7,708	43.6	9.0
2045	6,712,686	889,863	799,984	89,879	17,134	7,626	44.5	8.4
2050	7,110,823	982,876	898,844	84,032	16,768	7,396	44.1	7.9
2060	8,462,742	1,218,401	1,054,791	163,609	15,808	6,442	40.8	8.0
2070	10,330,219	1,506,514	1,295,341	211,173	14,496	5,980	41.3	8.0
2080	12,818,164	1,889,722	1,598,964	290,758	13,522	5,563	41.1	8.0

〈所得比例年金〉

	기본 구조		보험료 조정(%)				
	급여산식	평균 급여율	기 준 보험료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기초연금	$0.20 \times A \times n/40$	50%	3.6	4.30	5.00	5.70	6.40
소득비례	$0.30 \times B \times n/40$		5.4	6.50	7.50	8.50	9.50
합계			9.0	10.80	12.50	14.20	15.90

註: 보험료 조정은 전가입자 동일하게 적용함.

(단위 :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 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1998	194,999	70,259	2,820	67,439	14,333	240	1.7	69.2
2000	368,789	98,822	5,999	92,822	14,786	441	3.0	61.5
2005	960,962	162,328	20,493	141,835	16,019	1,233	7.7	46.9
2010	1,818,502	266,853	51,648	215,205	16,873	2,257	13.4	35.2
2015	3,010,772	391,539	106,364	285,175	17,741	3,188	18.0	28.3
2020	4,550,511	560,943	207,221	353,723	18,353	4,368	23.8	22.0
2025	6,347,136	759,535	363,797	395,737	18,522	5,655	30.5	17.4
2030	8,235,680	920,797	557,588	363,209	18,632	6,588	35.4	14.8
2035	9,866,104	1,083,280	793,902	289,378	18,427	7,304	39.6	12.4
2040	11,126,929	1,231,821	1,001,456	230,366	17,682	7,708	43.6	11.1
2045	12,218,118	1,379,929	1,172,669	207,260	17,134	7,626	44.5	10.4
2050	13,172,265	1,527,870	1,331,596	196,274	16,768	7,396	44.1	9.9
2060	15,901,813	1,897,034	1,583,574	313,460	15,808	6,442	40.8	10.0
2070	19,399,837	2,344,190	1,955,020	389,170	14,496	5,980	41.3	9.9
2080	23,921,217	2,934,987	2,411,453	523,533	13,522	5,563	41.1	9.9

II. 國民年金 財政展望(2): 平均給與率 60%, 統合運營

	기본 구조		보험료 조정(%)				
	급여산식	평균 급여율	기준 보험료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통합형	$0.3(A+B) \times n/40$	60%	9.0	11.55	14.10	16.60	19.10

註: 보험료 조정은 전가입자 동일하게 적용함.

(단위 :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1998	385,304	119,729	7,139	112,590	14,333	240	1.7	54.0
2000	668,237	167,604	14,918	152,686	14,786	441	3.0	44.8
2005	1,613,884	271,287	47,952	223,335	16,019	1,233	7.7	33.7
2010	2,956,249	466,655	113,091	353,564	16,873	2,257	13.4	26.1
2015	4,915,844	717,403	223,819	493,584	17,741	3,188	18.0	22.0
2020	7,585,405	1,062,215	422,733	639,482	18,353	4,368	23.8	17.9
2025	10,843,908	1,476,922	730,051	746,871	18,522	5,655	30.5	14.9
2030	14,399,657	1,794,745	1,113,453	681,292	18,632	6,588	35.4	12.9
2035	17,445,325	2,114,526	1,578,879	535,647	18,427	7,304	39.6	11.0
2040	19,742,147	2,406,753	1,990,447	416,306	17,682	7,708	43.6	9.9
2045	21,693,618	2,698,105	2,333,140	364,965	17,134	7,626	44.5	9.3
2050	23,329,942	2,988,095	2,652,091	336,004	16,768	7,396	44.1	8.8
2060	28,104,173	3,711,537	3,160,058	551,479	15,808	6,442	40.8	8.9
2070	34,192,228	4,585,760	3,911,001	674,760	14,496	5,980	41.3	8.7
2080	42,040,784	5,740,918	4,831,472	909,446	13,522	5,563	41.1	8.7

[參考 5] 利子率 變動에 따른 財政敏感度 分析

〈實質利子率 變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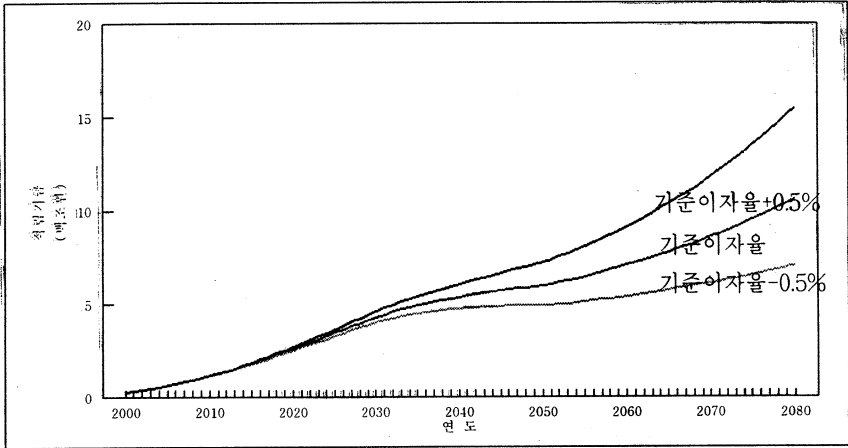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4	2005-10	2011-20	2021-30	2031-80
기준이자율 ¹⁾	7.0	9.0	8.0	6.0	5.0	3.5	3.0	3.0	3.0
-0.5% 변동 ²⁾	7.0	9.0	8.0	6.0	5.0	3.5	2.5	2.5	2.5
+0.5% 변동 ²⁾	7.0	9.0	8.0	6.0	5.0	3.5	3.5	3.5	3.5

註: 1) 기준이자율은 본 보고서 연금재정전망을 위한 주요경제변수 가정(p.36 참조)중 실질이자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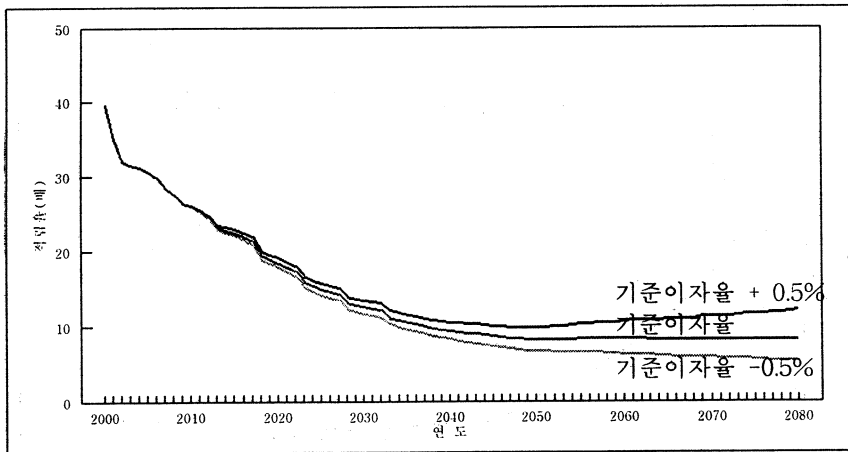
2) ±0.5% 이자율 변동은 2011년부터 적용.

□ 基礎年金

－ 積立基金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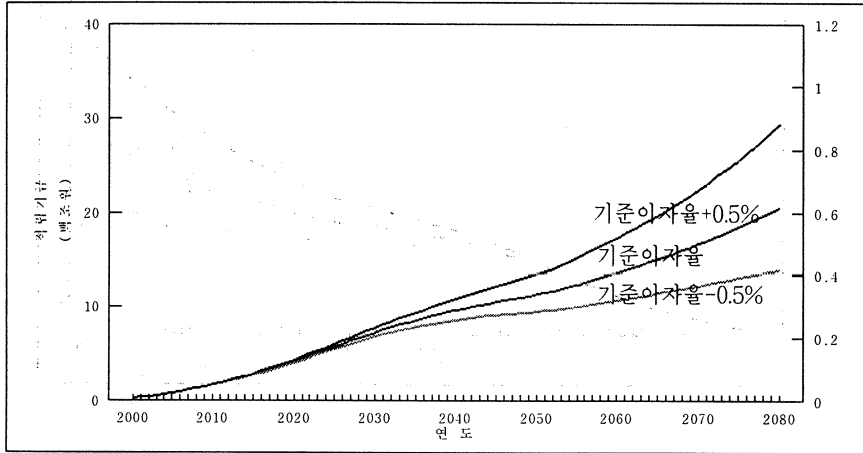


－ 積立倍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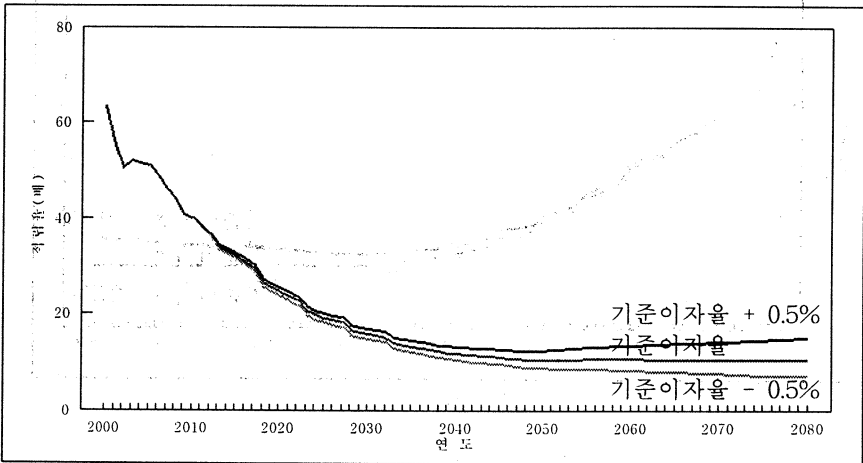


□ 所得比例年金

－ 積立基金 推移



－ 積立倍率 推移



I. 平均給與率 40%, 保險料率 段階的 調整時 利率 變動이 없을 경우

〈基礎年金〉

	기본 구조		적립 배율 추이			
	급여산식	이자율 변 동	2010년	2030년	2050년	2070년
기초연금	$0.16 \times A \times n/40$		26.2	12.7	8.3	8.3
소득비례	$0.24 \times B \times n/40$		40.1	16.1	10.7	10.7

(단위 :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 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1998	192,992	50,829	3,824	47,005	14,333	240	1.7	50.5
2000	307,870	69,157	7,764	61,393	14,786	441	3.0	39.7
2005	680,997	109,636	22,026	87,610	16,019	1,233	7.7	30.9
2010	1,193,526	166,804	45,600	121,203	16,873	2,257	13.4	26.2
2015	1,848,174	232,289	81,285	151,005	17,741	3,188	18.0	22.7
2020	2,645,013	316,764	142,018	174,746	18,353	4,368	23.8	18.6
2025	3,502,358	411,154	232,104	179,050	18,522	5,655	30.5	15.1
2030	4,320,651	492,718	340,731	151,987	18,632	6,588	35.4	12.7
2035	4,964,296	573,817	467,276	106,541	18,427	7,304	39.6	10.6
2040	5,394,961	646,882	571,328	75,554	17,682	7,708	43.6	9.4
2045	5,749,509	720,073	654,171	65,902	17,134	7,626	44.5	8.8
2050	6,044,204	793,531	730,208	63,323	16,768	7,396	44.1	8.3
2055	6,493,602	884,242	776,683	107,559	16,436	6,820	41.5	8.4
2060	7,112,502	980,848	849,250	131,598	15,808	6,442	40.8	8.4
2065	7,823,962	1,088,065	937,358	150,707	15,123	6,195	41.0	8.3
2070	8,635,020	1,211,275	1,038,168	173,106	14,496	5,980	41.3	8.3
2075	9,568,116	1,353,646	1,155,698	197,948	13,958	5,785	41.4	8.3
2080	10,671,671	1,518,083	1,280,641	237,442	13,522	5,563	41.1	8.3

〈所得比例年金〉

	기본 구조		적립 배율 추이			
	급여산식	이자율 변동	2010년	2030년	2050년	2070년
기초연금	$0.16 \times A \times n/40$		26.2	12.7	8.3	8.3
소득비례	$0.24 \times B \times n/40$		40.1	16.1	10.7	10.7

(단위 :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 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부양율	적립율
						수급자	(%)	
1998	195,108	70,262	2,758	67,505	14,333	240	1.7	70.8
2000	369,227	98,834	5,805	93,029	14,786	441	3.0	63.6
2005	966,028	162,432	18,897	143,535	16,019	1,233	7.7	51.1
2010	1,826,907	249,018	45,578	203,440	16,873	2,257	13.4	40.1
2015	2,948,198	348,077	90,912	257,165	17,741	3,188	18.0	32.4
2020	4,332,453	479,768	174,011	305,757	18,353	4,368	23.8	24.9
2025	5,874,279	625,649	302,098	323,551	18,522	5,655	30.5	19.4
2030	7,413,786	754,869	459,271	295,598	18,632	6,588	35.4	16.1
2035	8,740,411	885,092	649,525	235,567	18,427	7,304	39.6	13.5
2040	9,771,844	1,003,914	814,479	189,435	17,682	7,708	43.6	12.0
2045	10,677,670	1,122,605	949,183	173,422	17,134	7,626	44.5	11.2
2050	11,487,609	1,241,503	1,073,983	167,521	16,768	7,396	44.1	10.7
2055	12,525,351	1,385,809	1,151,009	234,800	16,436	6,820	41.5	10.9
2060	13,811,652	1,538,895	1,271,139	267,755	15,808	6,442	40.8	10.9
2065	15,234,342	1,707,562	1,409,886	297,675	15,123	6,195	41.0	10.8
2070	16,815,470	1,900,147	1,565,644	334,503	14,496	5,980	41.3	10.7
2075	18,606,756	2,121,852	1,745,027	376,825	13,958	5,785	41.4	10.7
2080	20,689,840	2,377,135	1,930,491	446,644	13,522	5,563	41.1	10.7

II. 平均給與率 40%, 保險料率 段階的 調整時 利子率 變動 -0.5%

〈基礎年金〉

	기본구조		적립배율 추이			
	급여산식	이자율 변동	2010년	2030년	2050년	2070년
기초연금	$0.16 \times A \times n/40$	- 0.5%	26.2	11.8	6.8	6.0
소득비례	$0.24 \times B \times n/40$		40.1	15.1	9.0	7.9

註: 이자율변동은 2011년부터 적용

(단위 :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1998	192,992	50,829	3,824	47,005	14,333	240	1.7	50.5
2000	307,870	69,157	7,764	61,393	14,786	441	3.0	39.7
2005	680,997	109,636	22,026	87,610	16,019	1,233	7.7	30.9
2010	1,193,526	166,804	45,600	121,203	16,873	2,257	13.4	26.2
2015	1,812,864	223,655	81,226	142,430	17,741	3,188	18.0	22.3
2020	2,552,823	303,322	141,899	161,423	18,353	4,368	23.8	18.0
2025	3,326,403	391,930	231,915	160,015	18,522	5,655	30.5	14.3
2030	4,030,422	467,109	340,478	126,631	18,632	6,588	35.4	11.8
2035	4,527,696	541,754	466,938	74,816	18,427	7,304	39.6	9.7
2040	4,781,787	608,829	570,977	37,852	17,682	7,708	43.6	8.4
2045	4,929,584	675,816	653,722	22,094	17,134	7,626	44.5	7.5
2050	4,985,454	742,684	729,816	12,868	16,768	7,396	44.1	6.8
2055	5,159,812	825,503	776,228	49,275	16,436	6,820	41.5	6.6
2060	5,459,073	912,366	848,705	63,662	15,808	6,442	40.8	6.4
2065	5,797,640	1,008,228	936,733	71,495	15,123	6,195	41.0	6.2
2070	6,174,158	1,118,290	1,037,482	80,808	14,496	5,980	41.3	6.0
2075	6,601,110	1,245,393	1,154,927	90,467	13,958	5,785	41.4	5.7
2080	7,115,170	1,392,019	1,279,796	112,223	13,522	5,563	41.1	5.6

〈所得比例年金〉

	기본구조		적립배율추이			
	급여산식	이자율 변동	2010년	2030년	2050년	2070년
기초연금	$0.16 \times A \times n/40$	- 0.5%	26.2	11.8	6.8	6.0
소득비례	$0.24 \times B \times n/40$		40.1	15.1	9.0	7.9

註: 이자율변동은 2011년부터 적용

(단위: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1998	195,108	70,262	2,758	67,505	14,333	240	1.7	70.8
2000	369,227	98,834	5,805	93,029	14,786	441	3.0	63.6
2005	966,028	162,432	18,897	143,535	16,019	1,233	7.7	51.1
2010	1,826,907	249,018	45,578	203,440	16,873	2,257	13.4	40.1
2015	2,893,060	334,403	90,824	243,579	17,741	3,188	18.0	31.9
2020	4,185,665	457,928	173,835	284,093	18,353	4,368	23.8	24.1
2025	5,589,420	593,731	301,818	291,914	18,522	5,655	30.5	18.5
2030	6,936,793	711,538	458,897	252,641	18,632	6,588	35.4	15.1
2035	8,012,408	829,747	649,025	180,722	18,427	7,304	39.6	12.3
2040	8,734,566	936,830	813,960	122,869	17,682	7,708	43.6	10.7
2045	9,271,235	1,043,185	948,518	94,667	17,134	7,626	44.5	9.8
2050	9,647,790	1,148,844	1,073,402	75,441	16,768	7,396	44.1	9.0
2055	10,180,027	1,277,603	1,150,336	127,267	16,436	6,820	41.5	8.8
2060	10,874,069	1,411,938	1,270,332	141,606	15,808	6,442	40.8	8.6
2065	11,602,651	1,558,988	1,408,962	150,026	15,123	6,195	41.0	8.2
2070	12,372,597	1,726,695	1,564,627	162,068	14,496	5,980	41.3	7.9
2075	13,217,387	1,919,617	1,743,886	175,731	13,958	5,785	41.4	7.6
2080	14,197,100	2,141,463	1,929,240	212,223	13,522	5,563	41.1	7.4

III. 平均給與率 40%, 保險料率 段階的 調整時 利率 變動 +0.5%

〈基礎年金〉

	기본 구조		적립 배율 추이			
	급여산식	이자율 변동	2010년	2030년	2050년	2070년
기초연금	$0.160 \times A \times n/40$	+ 0.5%	26.2	13.6	10.0	11.4
소득비례	$0.24 \times B \times n/40$		40.1	17.2	12.7	14.4

(단위 :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1998	192,992	50,829	3,824	47,005	14,333	240	1.7	50.5
2000	307,870	69,157	7,764	61,393	14,786	441	3.0	39.7
2005	680,997	109,636	22,026	87,610	16,019	1,233	7.7	30.9
2010	1,193,526	166,804	45,600	121,203	16,873	2,257	13.4	26.2
2015	1,884,105	241,190	81,344	159,845	17,741	3,188	18.0	23.2
2020	2,740,728	331,042	142,141	188,902	18,353	4,368	23.8	19.3
2025	3,688,606	432,140	232,299	199,841	18,522	5,655	30.5	15.9
2030	4,633,883	521,470	340,992	180,478	18,632	6,588	35.4	13.6
2035	5,445,176	610,971	467,626	143,346	18,427	7,304	39.6	11.6
2040	6,085,277	692,608	571,691	120,917	17,682	7,708	43.6	10.6
2045	6,694,513	775,325	654,637	120,688	17,134	7,626	44.5	10.2
2050	7,295,155	859,576	730,614	128,962	16,768	7,396	44.1	10.0
2055	8,110,840	963,446	777,154	186,292	16,436	6,820	41.5	10.4
2060	9,170,802	1,076,388	849,815	226,573	15,808	6,442	40.8	10.8
2065	10,414,308	1,203,190	938,005	265,185	15,123	6,195	41.0	11.1
2070	11,866,032	1,349,776	1,038,880	310,896	14,496	5,980	41.3	11.4
2075	13,569,638	1,520,078	1,156,497	363,581	13,958	5,785	41.4	11.7
2080	15,599,001	1,717,948	1,281,516	436,432	13,522	5,563	41.1	12.2

〈所得比例年金〉

	기본 구조		적립 배율 추이			
	급여산식	이자율 변동	2010년	2030년	2050년	2070년
기초연금	$0.16 \times A \times n/40$	+ 0.5%	26.2	13.6	10.0	11.4
소득비례	$0.24 \times B \times n/40$		40.1	17.2	12.7	14.4

(단위 : 억원, 천명, 1995년 불변가격)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 수급자	부양율 (%)	적립율
1998	195,108	70,262	2,758	67,505	14,333	240	1.7	70.8
2000	369,227	98,834	5,805	93,029	14,786	441	3.0	63.6
2005	966,028	162,432	18,897	143,535	16,019	1,233	7.7	51.1
2010	1,826,907	249,018	45,578	203,440	16,873	2,257	13.4	40.1
2015	3,004,298	362,166	91,001	271,165	17,741	3,188	18.0	33.0
2020	4,484,778	502,932	174,192	328,740	18,353	4,368	23.8	25.7
2025	6,175,514	660,401	302,387	358,014	18,522	5,655	30.5	20.4
2030	7,927,810	803,330	459,658	343,672	18,632	6,588	35.4	17.2
2035	9,540,470	948,853	650,043	298,810	18,427	7,304	39.6	14.7
2040	10,935,943	1,083,840	815,017	268,822	17,682	7,708	43.6	13.4
2045	12,291,758	1,220,638	949,872	270,766	17,134	7,626	44.5	12.9
2050	13,649,495	1,360,165	1,074,584	285,581	16,768	7,396	44.1	12.7
2055	15,349,812	1,529,363	1,151,707	377,656	16,436	6,820	41.5	13.3
2060	17,439,210	1,712,972	1,271,975	440,996	15,808	6,442	40.8	13.7
2065	19,834,426	1,918,022	1,410,845	507,177	15,123	6,195	41.0	14.1
2070	22,589,624	2,153,899	1,566,698	587,201	14,496	5,980	41.3	14.4
2075	25,795,336	2,427,250	1,746,210	681,039	13,958	5,785	41.4	14.8
2080	29,579,814	2,744,238	1,931,787	812,451	13,522	5,563	41.1	15.3

附 錄

1.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運營規程
2.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運營細則
3.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構成
4.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活動日誌

1.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運營規程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기획단은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연구 및 검토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민연금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민연금제도에 관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제3조 (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에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 기획단장을 포함한 위원은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국민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기획단장 등의 직무) ① 기획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기획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기획단장의 위임을 받아 기획단이 주관하는 각종 조사·연구활동을 총괄한다.

제5조 (회의) ① 기획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기획단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6조 (의결) 기획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기획단은 국민연금제도 개선과제의 발굴 및 조사 연구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2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직원중에서 기획단장이 위촉한다.

제8조 (실무지원반) ①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반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획단의 실무지원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둔다.

③ 실무지원반의 조직·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기획단장이 정한다.

제9조 (직원의 업무지원등) 기획단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의 업무지원 또는 관계 출연연구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기획단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기획단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

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의 청취등) 기획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각종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기획단의 기획단장, 위원 및 전문위원, 기타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기획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기획단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運營細則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획단장 등의 직무) ① 기획단장은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획단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등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각 전문위원에게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조사·연구업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위원이 행하는 조사·연구업무를 총괄에 관한 사항
2. 실무지원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단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3조 (전문위원의 업무) 규정 제7조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에 관한 조사·연구등 실무작업을 수행한다.

1. 국민연금제도개선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의 수행 및 보고서의 작성
2. 기획단 요청시 회의참석,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진술 및 보고 등

제4조 (전문위원회 회의) 상임위원은 조사연구 활동 및 제도개선방안의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간사전문위원) 상임위원을 보좌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밑에 간사전문위원 1인을 두되 전문위원중에서 기획단장이 임명한다.

1. 전문위원의 조사·연구활동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2. 기획단 회의에 상정할 의안 및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조정
업무
3. 기타 기획단의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이 부여
하는 사항

제6조 (실무지원반의 구성) ① 규정 제8조에 의한 실무지원반은 반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반의 반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반원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구원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실무지원반의 업무) 실무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일반 서무 및 회계 등 기획단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추계 등 기획단의 조사·연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리와 관련된 사항
4.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위임전결) ①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 사항을 전결한다.

1.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각종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3. 실무지원반 직원 및 임시직 조사연구요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추정가격이 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일상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실무지원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한다.

1. 추정가격이 백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사업실행 계획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제9조 (준용) 기획단 운영에 관한 인가, 문서, 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하여는 연구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단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199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構成

企劃團長	朴宗淇	인하대학교 교수
常任委員	延河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委 員	高學用	조선일보 논설위원
	金尙均	서울대학교 교수
	金仲秀	한국조세연구원장
	金鍾昶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閔載成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문위원
	朴元出	국무총리실 사회복지심의관
	朴炬求	한국노동연구원장
	申守植	고려대학교 교수
	嚴永振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尹建永	연세대학교 교수
	李啓植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李奎植	연세대학교 교수
	李南淳	한국노동자총연맹 사무총장
	李元熙	아주대학교 교수
	李惠旻	연세대학교 교수
	鄭敬培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소장
	鄭金子	한국여성개발원장
	鄭相龍	변호사협회 사무차장
	鄭書九	KBS 해설위원
	趙南弘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韓成熙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부회장

幹事專門委員	尹炳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專門委員	姜元淳	재정경제원 생활복지과장
	高英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權汶一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책임연구원
	金龍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金元植	건국대학교 교수
	金正泰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2부장
	金泰洪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盧吉相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장
	文振榮	성공회대학교 교수
	文亨杓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房河男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裴竣皓	한신대학교 교수
	安鍾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吳根植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원지부장
	吳昌洙	한양대학교 교수
	王鎮鎬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元鍾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李堯植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李正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全瑛俊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鄭明采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鄭吉五	한국노동자총연맹 선임연구원
	崔秉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4.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活動日誌

일시	회의구분	안 건
6. 16(월)	제1차 기획단 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위촉장 수여 ○ 국민연금제도개선 기획단 설치경과 보고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운영세칙(안) 심의
6. 20(금)	제1차 전문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 ○ 국민연금제도개선 기획단 설치경과 보고 ○ 6개 주요과제 및 전문위원회 운영방식
6. 27(금)	제1차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문일 전문위원 ○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용하 전문위원
7. 4 (금)	제2차 전문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재정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센터 책임연구원
7. 8 (화)	제3차 전문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제도의 역할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원식 전문위원
7. 11(금)	제2차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제도 역할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원식 전문위원
7. 15(화)	제4차 전문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연금급여·보험료·수급연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용하 전문위원 ○ 적정연금급여·보험료·수급연령(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창수 전문위원 ○ 연금재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영선·안종범·원종욱 전문위원 ○ 미적용대상자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태홍·이정우 전문위원

〈繼續〉

일시	회의구분	안 건
7. 18(금)	제2차 기획단 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연금급여·보험료·수급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용하 전문위원 ○ 연금재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영선·안중범·원종욱 전문위원 ○ 미적용대상자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태홍·이정우 전문위원
8. 5 (화)	제5차 전문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안: 현행제도 유지 개선안 오근식 전문위원 - 제2안: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이원화 안중범·김용하 전문위원 - 제3안: 적립방식 소득비례연금 김원식 전문위원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센터 책임연구원
8. 8 (금)	제3차 기획단 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안: 현행제도 유지 개선안 오근식 전문위원 - 제2안: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이원화 안중범·김용하 전문위원 - 제3안: 적립방식 소득비례연금 김원식 전문위원
8. 14(목)	제3차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안: 현행제도 유지 개선안 오근식 전문위원 - 제2안: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이원화 안중범·김용하 전문위원 - 제3안: 적립방식 소득비례연금 김원식 전문위원

〈繼續〉

일시	회의구분	안 건
8. 22(금)	제4차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종욱 전문위원 ○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진영 전문위원 ○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영준 전문위원
8. 29(금)	제5차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공적연금제도와의 가입기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준호 전문위원 ○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근식 전문위원
9. 2 (화)	제6차 전문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자영자 국민연금 적용확대 실무준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문일 전문위원
9. 5 (금)	제4차 기획단 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자영자 국민연금 적용확대 실무준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문일 전문위원
10. 2(목)	제6차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안: 현행제도 유지 개선안 오근식 전문위원 - 제2안: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이원화 안종범·김용하 전문위원 - 제3안: 절충안 최병호 전문위원
10. 10(금)	제7차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안: 현행제도 유지 개선안 오근식 전문위원 - 제2안: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이원화 안종범·김용하 전문위원 - 제3안: 절충안 최병호 전문위원

〈繼續〉

일시	회의구분	안 건
10. 20(월)	제8차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안) - 윤병식 간사전문위원
10. 23(목)	제7차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안) - 윤병식 간사전문위원
11. 5(수)	제8차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안) - 윤병식 간사전문위원
12. 1(월)	제9차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안) - 윤병식 간사전문위원
12. 9(화)	제9차 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안) - 윤병식 간사전문위원
12. 11(목)	제1차 축조심의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조심의 - 윤병식 간사전문위원, 권문일, 노길상, 문형표, 전영준 전문위원
12. 12(금)	제2차 축조심의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조심의 - 윤병식 간사전문위원, 권문일, 노길상, 문형표, 전영준 전문위원
12. 16(화)	제3차 축조심의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조심의 - 윤병식 간사전문위원, 권문일, 노길상, 문형표, 전영준 전문위원
12. 27(토)	국무총리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보고

全國民年金 擴大適用에 對備한
國民年金制度 改善
全國民年金時代를 열기 위한 準備

1997年 12月 日 印刷

1997年 12月 日 發行

發行人 朴宗淇

發行處 國民年金制度改善企劃團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 42-14

代表電話：02) 355-8003

印刷 大明文化社

中國人民解放軍
總司令部
總政治部

第一〇〇號
關於
軍事委員會
總司令部
總政治部

中華民國三十三年